ind.mofa.go.kr

인도네시아 투자법인 운영사례집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Korea Accountancy &
Finance Association

KAFA

발 간 사

존경하는 한인 기업 여러분, 그리고 한인 동포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으로 아세안의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입니다. 특히, 우리기업의 첫 해외투자, 첫 해외생산플랜트 설립, 첫 해외유전개발이 이루어진 각별한 인연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은1968년 대한민국 해외투자기업 1호인 한국남방개발이 진출한 이래로 약 5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산림, 석유 등 자원개발 산업과 신발, 봉제, 가발, 건설 등 노동집약적 산업 위주로 진출하였으나, 최근에는 철강, 전자, 타이어 등의 자본집약적 산업분야에서의 대기업 진출은 물론 금융, 유통, 문화, 컨텐츠, 법률 등 서비스업 분야에 이르기 까지 우리기업의 진출이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

이제 우리기업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당당하게 인도네시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법과 제도, 문화와 언어가 우리와 달라 여전히 많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투자하고 사업을 경영하는데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사관은 우리 투자 기업들의 재무 담당 모임인KAFA에서 지난 3년간 발표한 세미나 자료를 취합하여 투자 법인 운영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부딪혔던 다양한 문제와 해결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또한 앞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

조 태 영

머 리 말

인도네시아 투자법인 운영사례집 발간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며,

2004년 7월 경에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인 기업의 재무 담당자와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인도네시아 재무담당자 모임(이하 '인재모')를 만든 이후 인재모는 매월 정기적인 세미나를 통하여 관련 기업들에 필요한 재무회계 및 세무와 관련된 정보를 회원사 상호 간에 교환하며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2010년 4월에 1차 인재모 운영 사례집을 발간한데 이어 이번에 두번째 운영 사례집을 발간하게 된 것이 참 귀하다 생각됩니다. 1차 운영 사례집 작성 이후 매년 진행된 7~8차례의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모아서 2차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차 사례집에 이어 금번 발간하는 2차 사례집이 많은 한인 기업들에게 회계와 세무 분야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좋은 참고서가 되며, 이미 경험한 타사의 경험 사례를 통한 시원한 항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사례집은 회원사 각각의 노하우가 녹아 있는 귀한 자료이기도 하며, 각각의 운영사례는 인도네시아 세법, 회계 및 법규 규정에 맞도록 작성 및 편집되었습니다. 다만, 수시로 변경되는 인도네시아의 규제 환경과 각각 기업의 상황이나 배경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동 책자는 일반적인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고 전문적인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실무에 적용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 책의 발간에 즈음하여 많은 분들이 애써 주셨습니다. 우선 사례발표에 참여해주신 회원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사례집이 체계를 갖추어 좋은 책자가 되도록 애써 주신 인재모 2차 사례집 편찬위원(PWC 정태훈 회계사, 박승찬 회계사, KPMG 오동규 회계사)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한인기업의 세무적인 문제해결에 항상 앞서 주심은 물론 본 사례집이 제 모습을 갖추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대사관의 최종환 국세관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4월 20일
인도네시아 재무담당 모임(인재모, KAFA)
회장 목의수
간사 정태훈

Contents

1 인도네시아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2. 경제현황 3
   1) 인도네시아 연간 주요경제지표 3
   2) 주요 교역 상대국 4
   3) 최근 경제 동향 4
   4) 분야별 세부동향 및 전망 5
   5) 2017년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6
3. 투자 현황 21
   1) 수출입 22
   2) 바이오에너지 개발 23
   3)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23
   4) 산림 자원 24
   5) ICT 산업 25
   6) 인프라 25
   7) 인도네시아 손해보험 시장의 이해 27
   8) 인도네시아 통신 시장의 이해 29
4. 사회/문화/교육 33
   1) 국민성 33
   2) 문화 및 관습 33
   3) 언론 34
   4) 교육 35

2 운영사례

1. 주식회사 운영 사례 및 법인설립 38
2. 고정사업장 과세 위험 44
3. TRANSFER PRICING (이전가격) 세무조사 사례 46
4. 이전가격 - 인도네시아 BEPS도입 관련 신규 규정 (PMK-213) 49
5. 고정자산 재평가 사례 53
6. 부채 자본 비율 (DEBT TO EQUITY RATIO, DER) 규정 및 사례 55
7. 미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59

8. 배당 관련 규정 63
9. 해외 특수관계 지급보증수수료 이중과세 위험 64
10. 비거주자의 비상장 주식 매각 시 주식발행회사의 과세 위험 65
11. 인도네시아 법인의 외부감사 여부 66
12. 기능통화 변경사례 66
13. 외환평가손익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 이의신청 사례 68
14. 판매제품(수출)에 대한 CLAIM 처리사항 70
15. CLAIM 관련 회계처리 및 세무상 이슈 71
16. 법인세 환급 세무조사시 주의사항(손금불산입) 73
17. 복리후생비(BENEFITS-IN-KIND:BIK) 관련 세무상 처리 74
18. EMPLOYEE BENEFIT 관련 회계 기준의 변경 75
19. 기계제작이나 건축공사 외주제작 및 공사 - PPH23 대상 76
20. 일반 용역비에 부가되는 PPH23 77
21. 국외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 배당소득 지급관련 원천징수 78
22. 월 선납 법인세 계산 및 사례 79
23. 부가세 신고 및 환급 세무조사 절차 82
24. 부가세 환급 및 이의신청기간의 지연이자 환급 84
25. 부가세 영세율 적용 대상 수출용역 거래 85
26. 한-인니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련 상호주의 (수출용역) 86
27. 보세구역(KAWASAN BERIKAT) 승인 절차 및 효과 87
28. 수입부가세 관련 88
29.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간접수출 조건에 대한 해석 89
30. 운송 주선업 부가세 과세표준에 대한 규정 변경 90
31. 생산 전 부가세 매입세액의 공제/환급 여부 91
32. 부가세 및 선납 법인세의 면제 신청 93
33. 자기주식 매각에 대한 사례 96
34. 수입자 인증번호(API) 개정사항 98
35. 발전사업 주요 회계/세무 이슈 101
36. 건설지사 과세 사례 103
37. 인도네시아 외환시장 안내 106
38. 인니중앙은행 외화정책 및 규정 108
39. BI(중앙은행) 루피아 의무사용 규정 113
40.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매입 116
41. HGB 연장에 대한 사례 120
42.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의 변경 122
43. 다자간금융정보교환(MCAA) 123

3 부 록

1. 한-인니 조세협약 130
2. NEGATIVE LIST 142
3. DGT 1 FORM 152
4. 법인세 신고 서식 156
5. 인재모 회원명부 164

1

인도네시아 일반현황

1 일반현황

구 분	내 용
국명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
수도	Jakarta (인구 약 1,015만명, 면적 662km2)
면적	190만㎢ (한반도의 9배)
기후	열대성 몬순기후, 고온다습 - 연평균기온: 25~28℃(자카르타: 32~33℃) - 습도: 73~87% - 우기(11월-2월), 건기(3월-10월) ※ 2010년부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건기가 줄어들고 우기와 건기의 구분이 일정치 않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인구	약 2억 5,518만 명(2015년, 인도네시아 통계청)
종교	이슬람(87%), 기독교(7%), 카톨릭(3%), 힌두교(1%), 불교(1%), 공자교(1%)
언어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 ※ 자바어 등 지방어 포함 모두 600여종
국가표어	다양성 속의 통일(Bhinneka Tunggal Ika)

※ 자료원 : 인도네시아 통계청

2 경제현황

1) 인도네시아 연간 주요경제지표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고	한국 (2015 년)
GDP	명목(억불)	9,125	8,886	8,726	한국 11위에 이은 세계 16위(IMF, 2015 년)	13,929(IMF)
	1인당(불)	3,667	3,524	3,415		27,512(IMF)
경제성장률(%)		5.58	5.02	4.8	2016년 5%대 예상	2.6%(BOK)
실업률(%)		6.25	6.1	5.8		3.6%(BOK)
물가상승률(%)		7.0	6.4	6.4	6% 물가상승률 유지	0.7%(BOK)
중앙은행 기준금리(%)		7.50	7.75	7.50	2016년 6월말 6.50%	1.50(BOK)
외환보유고(억불)		994	1,119	1,059	1천억불 유지 목표	3,679(BOK)
달러당 환율		12,189	12,440	13,864		1,172(BOK)
교역	수출(억불)	1,826	1,760	1,503	국제 원자재 가격 감소로 수출입이 지속 감소	5,268(무협)
	수입(억불)	1,886	1,782	1,427		4,365(무협)
	무역수지(억불)	Δ40	Δ22	76		903(무협)
GDP 대비 재정적자(%)		2.0	2.1	2.3	재정 건전한 편	0.5%(IMF)

※ 출처 : 인도네시아 재무부, 통계청, 투자청, 중앙은행, IMF, 무역협회(한국통계) 등 종합

2) 주요 교역 상대국

순위	국가	총교역액	수출	수입
1	중국	482	176	306
2	싱가포르	420	168	252
3	일본	402	232	170
4	미국	248	166	82
5	한국	237	123	114
6	말레이시아	207	98	109
7	인도	161	122	39
8	태국	156	58	98

※ 자료출처 : 인도네시아 통계청(2014년) 및 무역협회(한국통계)

3) 최근 경제 동향

- 인도네시아 경제는 중산층 증가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와 활발한 해외 투자 유입,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붐에 힘입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6%대의 고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이후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상황
-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 5%대에 머물렀으며, 2015년에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4%대에 그친 4.8% 성장률 기록
-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경기침체와 신흥국의 경기부진,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이 감소세를 기록한 것에 기인
- 2016년에는 정부의 경제개혁 노력과 재정지출 조기집행, 인프라 개발 및 외국인 투자유치 등 정책에 집중하면서 5%대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나, 대외 리스크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여전한 상황

(미국 기준금리 인상) 미 연준은 2016년에 점차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로 인해 루피아 환율인상, 외국자본 유출 등 우려

(세계적 저성장 장기화) 유로지역 및 일본의 경기 둔화 및 디플레이션 지속

(중국 경제 경착륙) 중국 경제 대한 경착륙 우려의 확대 및 원자재 가격의 하락

4) 분야별 세부동향 및 전망

(1)경제성장 : 2013년부터 다소 성장세 둔화

인도네시아 경제는 인구에 기반한 거대 내수시장, 중국경제의 성장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6%대의 성장률을 지속하다가 2013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2015년 기준 GDP 세계 16위(8,726억 불, IMF추정) 기록

중국의 경기둔화,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수출과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루피아 가치 하락 등 환율 불안도 겹치며 2015년은 4.8% 성장률 기록. 다만,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내수와 외국인 투자가 성장을 뒷받침

<인도네시아 GDP 성장률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명목 GDP(억불)	8,925	9,190	9,125	8,886	8,726
1인당 GDP(불)	3,688	3,744	3,667	3,524	3,415
경젱성장률(%)	6.17	6.03	5.58	5.02	4.8

※ 자료 : IMF, 경제성장률은 루피아화(national currency) 기준
※ GDP 공헌도 : 내수 50% 이상, 투자 25% 내외, 수출 25% 내외

(2)금융시장 동향 : 환율불안이 여전하며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추진

[환율]

루피아화는 2013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금융시장의 루피아 자산 매각 등에 의해 환율 상승

2015년의 경우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본이탈 우려가 확산되면서 2015년 말 기준으로 달러당 13,800루피아를 상회하는 등 환율약세 지속. 미 연준은 2016년부터 금리의 지속적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연초 향후 루피아 환율은 달러당 14,000~14,500루피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2016년 1분기 환율은 13,000 초반대로 안정세

[기준금리]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013년 하반기 인플레이션 억제 및 외국 자본 이탈 억제(환율방어)를 위해 1년 넘게 유지해오던 기준금리(5.75%)를 7.50%로 인상시킨 후 2014년 11월 다시 7.75%로 인상하였으나, 경기부양을 위해 점차 인하 추세. 2015년 2월 중앙은행은 중국경기 둔화, 유로존 물가 하락 및 유가 하락 등으로 올해 인플레이션율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해, 경제성장 지원 차원에서 금리를 7.75%에서 7.50%로 인하. 2015년 2월~12월까지 7.50%를 유지하였으며, 2016년 1월에 들어서면서 추가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7.25%로 인하하고, 2월에는 7.00%로 추가 인하. 2016년 12월말 현재 인도네시아 기준금리는 5.00%임.

아세안 주변 경쟁 국가인 필리핀(4%대), 말레이시아(3%대), 태국(1%대)와 비교했을 때 인도네시아 기준금리는 높은 편이어서, 추가 인하 여지 존재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2013년 급등 이후 중앙은행의 긴축 통화정책으로 2014년 8월 4.0%까지 안정되었으나 2015년 들어 쌀, 소고기 등 식품가격 상승이 지속되어 2015년 평균 인플레이션율은 6.4%를 기록, 중앙은행 관리목표인 4±1%보다 높은 수준

<인도네시아 주요 금융 지표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루피아/달러	연말	9,068	9,670	12,189	12,440	13,864
주가지수	연말	3,822	4,317	4,274	5,227	4,593
인플레이션(%)	평균	5.4	4.3	7.0	6.4	6.4
외환보유고(억불)	연말	1,101	1,129	994	1,119	1,059
기준금리(%)	연말	6.00	5.75	7.50	7.75	7.50

※ 자료출처 : 인도네시아중앙은행(BI), 루피아/달러환율은 매년 12월 중간값

5) 2017년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Executive Summary

Together, a better tomorrow SHINHAN BANK

2016년
- 시장친화적 경제 정책 및 빠른 금리 인하를 통해 상반기 양호한 성장률
- 세수 부족으로 예산 삭감하면서 3분기 성장 둔화
- 세수 기반 확대 위한 조세 사면(Tax Amnesty)을 통해 4분기 예산집행 확대하여 성장률 회복
-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완화와 상장 업체 이익 개선 등으로 주가 상승

2017년
- 견조한 민간 소비를 바탕으로 인프라 투자에 기반한 성장 기대
-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정 효율화 및 FDI 유인을 위한 규제 완화 지속
- 물가 및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 한차례 금리 인상 전망
-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대외 요인에 의한 경제/금융 지표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 존재

[인도네시아 주요 경제지표]

'16년 12월 기준

주요 지표	2013	2014	2015	2016(F)	2017(F)
실질GDP(YoY%)	5.6	5.0	4.8	4.9	5.3
CPI(YoY%)	6.4	6.4	6.4	3.6	4.5
기준금리	7.50	7.75	7.50	4.75	5.25
경상수지(GDP대비)	-3.1	-3.1	-2.1	-2.1	-2
주1)달러-루피아 환율	12,171	12,388	13,788	13,473	13,646?

주1: 연말 시장환율 기준(Dec.)

자료 : Bloomberg, 16(F),17년(F) → 당행 전망치

1. 글로벌 경제 개괄

글로벌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3.4%로 지난해보다는 소폭 상승할 전망(IMF 전망)

- 선진국은 미국의 성장률 상승 전망으로 올해보다 소폭 높아질 전망('16년 1.6% → '17년 1.8%)
- 신흥국의 경우 중국의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브라질 및 러시아 등 자원수출국이 원자재 가격 회복으로 성장세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16년 4.2% → '17년 4.6%)

그러나 올해 글로벌 경제는 超 불확실성의 시대에 진입하여 많은 경제적 및 정치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글로벌 경제의 성장률에 하방 리스크가 큰 편이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

선진국 vs. 신흥국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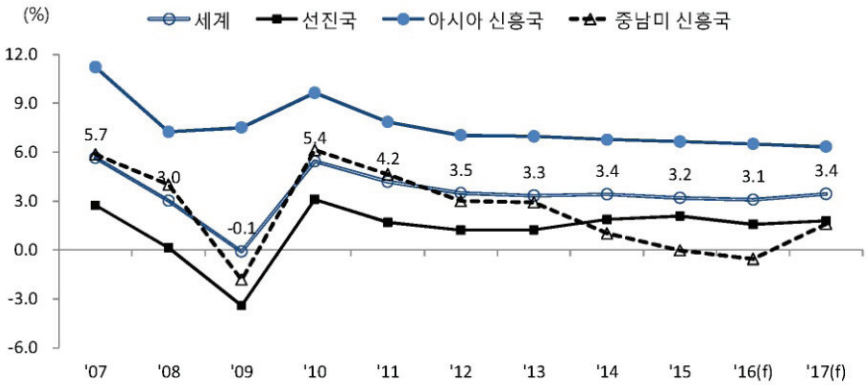

자료: IMF

2. 미국 경제

미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 1.6%보다는 높은 2%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트럼프 당선 이후 美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 등으로 주요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이 상향되고 있으나,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재정확대 및 감세 정책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는 높은 편임
- 한편 지난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 25bp 인상 이후 연준 위원들은 기준금리의 중앙값을 '17년말 1.4%, '18년말 2.1%, '19년말 2.9%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매년 3회 수준의 금리인상을 시사 (1회 25bp 인상 전제)

미국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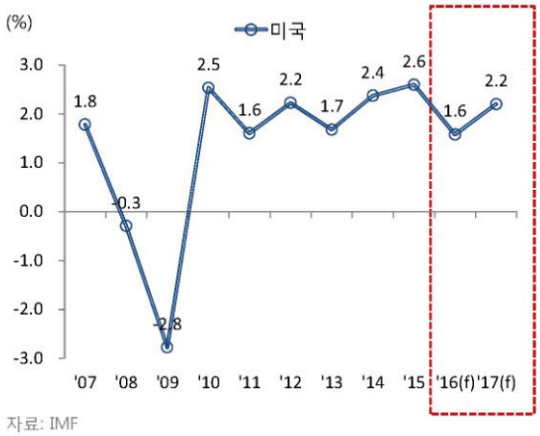

자료: IMF

미국 연준위원 및 선물시장의 기준금리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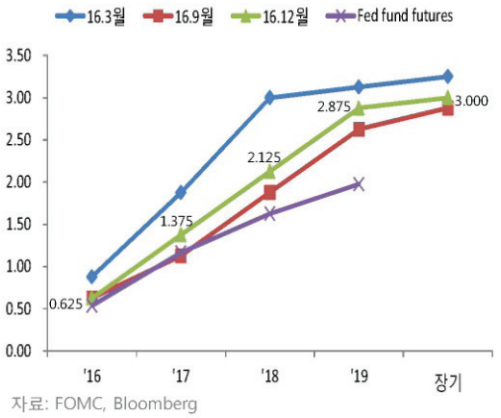

자료: FOMC, Bloomberg

[참고1] 美 트럼프 新정부의 재정 및 통화 정책 방향

재정정책 방향: 소득세 및 법인세 감세 정책,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 감세 및 인프라 투자는 경기부양효과가 있으나, 실행 및 효과 발생에 시간이 소요되고 2017년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0.2%p ~ 0.5%p ↑). 현재 미국 경제가 완전고용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면서 시장금리는 상승할 전망**
- 한편 **재정적자 확대도 시장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향후 경제에 크게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 다만, 공화당의 전통적인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와 어떻게 조정될 지는 불확실한 상황임

통화정책 방향 : 연준의 투명성 강화 및 매파 성향 강화

- 저금리 통화정책의 한계와 부작용 지적, 비둘기파 옐런 연준 의장 교체(2018년 2월 임기 만료) 및 2017년 매파 성향 연준이사 2명 임명('17년 1월 예상)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전망보다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다소 빨라질 가능성**
- 2016년 12월 25bp 인상 이후, 2017년 전망은 기존 1~2회 정도 인상에서 3회 정도 인상으로 상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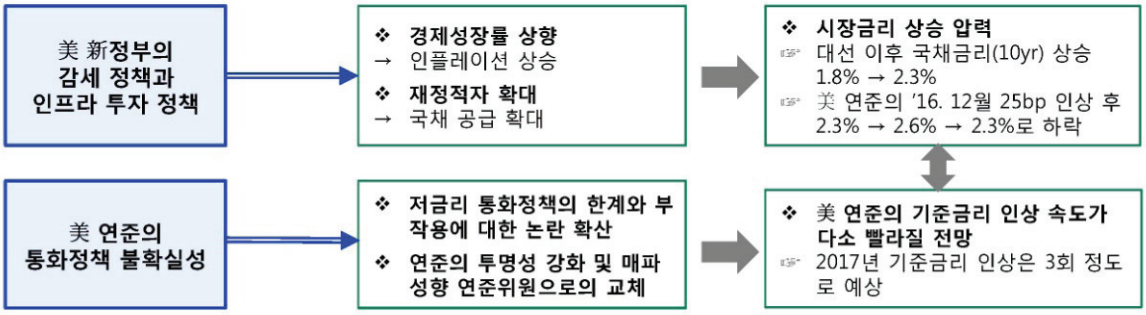

[참고2] 美 트럼프 新정부의 무역정책 및 파급 영향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 및 보호무역조치 강화

- 중국/멕시코 관세 인상 및 비관세 장벽 강화. 기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재검토, 환율조작국 지정 위협 등을 공약
- 보호무역정책 강화 방향은 명확해 보이나, 향후 실행 수준 및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공약의 실행 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현재보다는 글로벌 무역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보호무역조치 강화의 미국에 대한 영향(긍정적 vs. 부정적 영향)은 의견이 엇갈리지만 신흥국에게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 이에 글로벌 무역 증가율의 하락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신흥국 통화 약세 압력이 높아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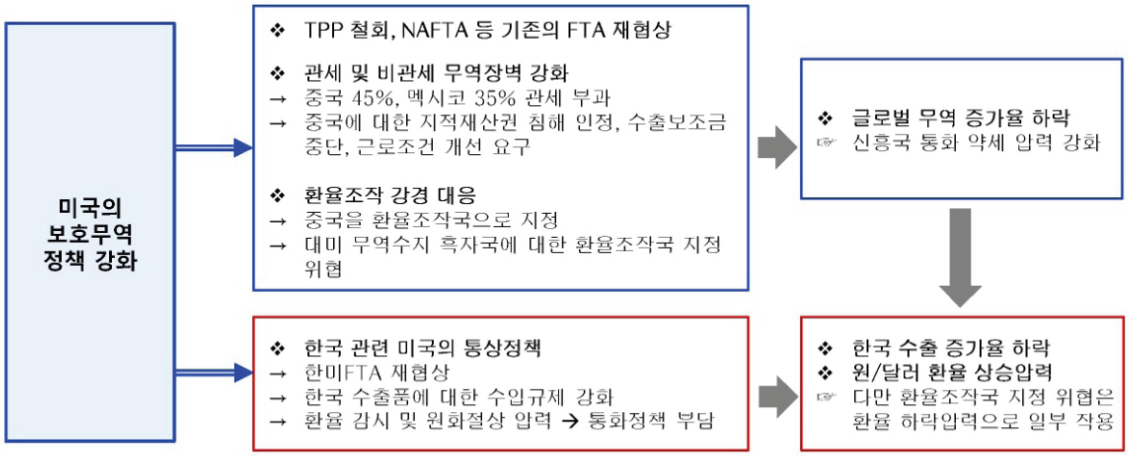

3. 중국 경제

중국 경제의 성장세 하락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6%대 초반으로 전망되나 지난해 초에 발생했던 금융불안이 다시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높은 편임

- 미국과의 무역마찰 등 미·중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출부진에 따른 경기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자본유출에 따른 위안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음
- 중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는 기업부채 문제와 구조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은행-지방정부간 연결고리인 부동산시장 악화 → 향후 주가 하락 및 위안화 약세, 자본유출 등의 금융불안 재부각 가능성 상존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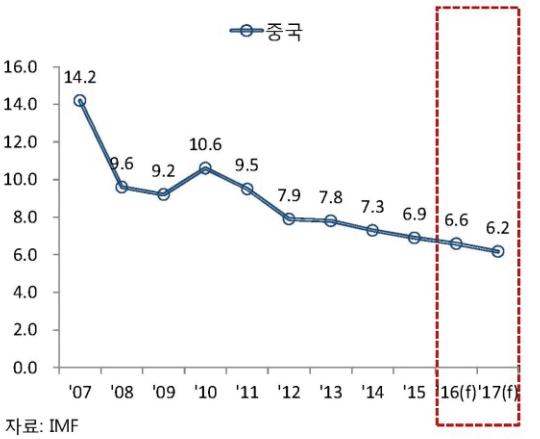

자료: IMF

중국 위안화 환율 및 외환보유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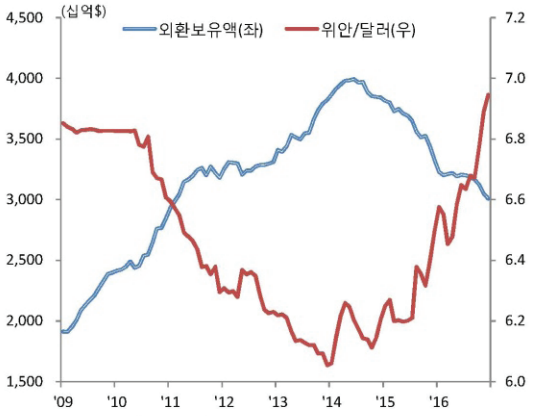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4. 일본 경제

일본 경제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0.6%로 예상되어 0%대의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회복세가 제한

- 지난해 말 이후 엔화약세가 다시 진행되면서 아베노믹스 효과가 다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BOJ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등의 통화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높은 상황임
- 유가 회복 등으로 소비자물가가 올해 0.6%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BOJ의 물가목표인 2%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일본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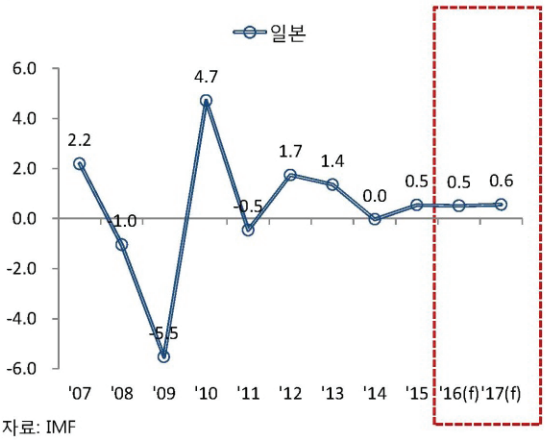

자료: IMF

엔/달러 환율 및 일본 국채금리 변동 추이

자료: Bloomberg

5. 유로존 경제

유로존 경제는 1%대 중반의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브렉시트 전개방향이 매우 큰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유로존 경제는 국가별로 매우 상이한 경제상황에 처해있음. 최근 브렉시트 관련 리스크로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부동산 버블 붕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탈리아의 은행권 위기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올해 예정된 유럽 각국의 정치적 이벤트에서 포퓰리즘 정당 및 극우 성향의 정치인 집권 등에 따른 EU이탈 우려가 확산될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

유로존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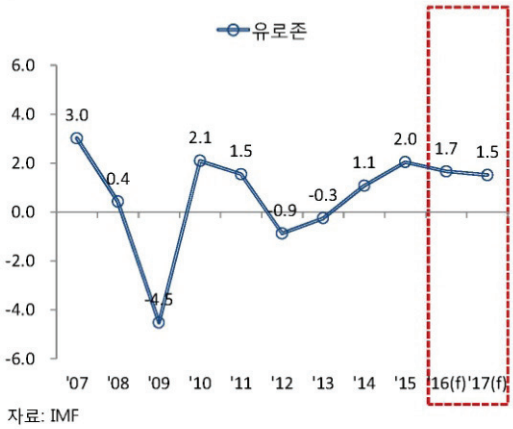

자료: IMF

향후 유럽지역 주요 정치 일정

일자	해당국가	이벤트	주요 관심사항
17.03 中	영국	브렉시트 협의	하드 브렉시트 여부
17.03.15	네덜란드	총선	EU탈퇴를 주장하는 자유당 집권 여부
17.04~05	프랑스	대선	EU탈퇴 국민투표를 공약한 르펜 당선
17.08~10	독일	연방의회 선거	메르켈 총리 4선 여부

자료: 미래전략연구소

6. 기타 주요 신흥국

- **브라질과 러시아는 정치적 안정 및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개선과 소리심리 회복 등으로 작년 마이너스 경제성장에서 탈피하여 플러스 성장 전환이 예상**
- **인도는 7%대 중반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인도네시아(5% 내외), 베트남(6%대 초반), 캄보디아 (7% 내외), 필리핀(6%대 초반) 등 동남아시아 신흥국은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
- **카자흐스탄은 경기침체에서 회복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멕시코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 우려 등으로 2%대의 저성장세가 이어질 전망**

[주요 신흥국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지역/국가	2014	2015	2016(f)	2017(f)	2018(f)
브라질	0.1	-3.8	-3.8	0.0	1.1
러시아	0.7	-3.7	-1.8	0.8	1.0
인도	7.2	7.3	7.5	7.5	7.6
인도네시아	5.0	4.8	4.9	5.3	5.5
베트남	6.0	6.7	6.3	6.2	6.2
카자흐스탄	4.3	1.2	0.1	1.1	1.8
캄보디아	7.1	6.9	7.0	7.0	7.0
필리핀	6.1	5.8	6.0	6.2	6.3
멕시코	2.3	2.5	2.4	2.6	2.8

자료: IMF

[참고3] 2017년 상반기 주요 관심 사항

주요 이벤트	'16.12월	'17.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7.3분기
미국 *press conference	· FOMC* · 차기 대통령 인수위 구성 및 장관 선임	· 차기 대통령, 연방 의원 임기 시작 · 4Q GDP 발표	· FOMC(연준위원교체) · FY18 예산안 제출	· FOMC* · NTE 보고서 발표	· IMF, 세계경제전망 · 1Q GDP 발표 · 환율보고서 발표	· FOMC	· FOMC* · 하원 예산안 통과	· FOMC(7, 9*월)(하반기 금리인상여부)
	정권 교체(민주→공화)에 따른 정책 지속성 약화 소지			연준, 금리인상 속도 및 정책기조 수정 여부		통화정책 신뢰성 저하 우려		
	트럼프 정책방향 가시화 및 금융시장 반응			美중국 무역 마찰 및 NAFTA 재검토(보호무역 확산) 가능성				
유로존	· ECB 통화정책회의(QE 연장여부) · 이탈리아 국민투표 · EU 정상회의	· ECB 통화정책회의	· BOE 통화정책회의	· 브렉시트 협상 착수 · EU 정상회의(개혁안 발표) · ECB QE 종료(예정) · 네덜란드 총선	· 프랑스 대선 · ECB 통화정책회의	· BOE 통화정책회의	· EU 정상회의 · 프랑스 총선 · ECB 통화정책회의 · NATO 정상회의(상반기)	· G20 정상회의(독일)
	ECB QE 연장을 비롯한 주요국 통화정책기조 변화 가능성			영국-EU 브렉시트 협상에 따른 유로존 정치, 경제 불확실성 증대 우려				
	도이치뱅크-미 법무부 벌금협상 진행, 유로존 은행권 수익성 악화 경계감			프랑스 대선, 총선 및 독일 총선(10월)을 앞두고 민족주의 포퓰리즘 확산 가능성				
중국	· 중앙경제공작회의	· 4Q GDP 발표		· 양회(정협, 전인대)(부동산 세제개편논의) · 홍콩 행정장관 선거	· '16년 및 '17년 1Q GDP 발표		· A주 MSCI 신흥지수 편입 검토 · 美中 경제전략대화 · AIIB 연차총회	
	부동산 과열에 이은 가격조정 우려		기업 및 지방정부 부채, 은행권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정책 효과 주목			제19차 당대회(11월)에 앞선 차기 지도부 경쟁 및 인사개편		
	성장세 둔화	위안화 절하 기조下 자본유출 증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구조개혁 과정에서 고용시장 수급불균형 심화 우려			
일본	· BoJ 통화정책 회의	· BoJ 통화정책 회의 · FY17년 예산안 심의 · 정기국회(헌법개정 논의)		· 춘계 노사임금 협상 · BoJ 통화정책 회의	· BoJ 통화정책 회의 · FY17년 회계연도 시작		· BoJ 통화정책 회의	
	FY16 추경집행, BoJ 완화적 통화정책 실효성 판단			소비세 인상 연기(~19.10월) 등에 따른 재정 건전화 후속조치 발표 여부				
	TPP무산(보호무역 확산), 브렉시트 진행 등에 따른 위험기피심리 고조, 엔화 강세 우려			노동개혁을 통한 경제활동참가 증대, 잠재성장률 회복 가능성				
신흥국	· RCEP* 공식협상(*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UN,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검토	· EU, 러시아 경제제재 연장 여부 판단		· 아세안 정상회의 · UN, 핵금지조약 협상	· 터키 국민투표(대통령제 개헌)		· OPEC 회의 ·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수칙 초안 제정 · 이란 대선	· 쿠웨이트 총선(7월) · 싱가포르 대선(8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투자심리 악화시 신흥국 통화절하, 자본유출 재현 우려				신흥국 부채부담 가중에 따른 신용리스크 확대 가능성			
	OPEC 감산 합의 및 글로벌 원유 수급불균형 완화 여부				신흥국 정국 불안정 소지			

자료: 국제금융센터

7. 한국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2017년은 美 신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영국의 Brexit 협상 본격화 등으로 상반기 중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 당분간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의 주요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불안요인 현실화 시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성장률 및 주요 금융변수 전망]

	2015년	2016년(f)	2017년(f)
실질GDP성장률	2.6%	2.6%	2.0% 내외
국고채(3년) 금리	1.79%	1.44%	기준금리 동결(1.25%) 1.6% (다만, 상반기 경기악화가 심화되면 하반기 중 기준금리 25bp 인하 가능성 상존)
원 / 달러 환율	1,132원	1,161원	1,170원 (상반기 변동성 확대 → 하반기 완만한 하락세 전환 전망)

Ⅱ -1. 인도네시아 경제전망 : 2016년

SHINHAN BANK

2016년 인도네시아 경제는 2015년 대비 반등하여 5%대 성장률 회복

- **인도네시아 경제는 민간소비, 기업투자, 정부지출 順으로 GDP 비중 구성**
  - 주변 ASEAN국가 대비 수출 비중이 낮은 내수 소비/투자 중심의 경제 구조
- **민간 소비는 '16년 중 5%의 견조한 성장을 보인 가운데, 3분기 정부지출 감소 및 기업투자 감소하여 성장률 둔화**
  - 상반기 정부수입 규모가 목표 하회하여 감축 예산안('16.6)을 발표
- **조세 사면(Tax Amnesty)에 기반한 추가 수입으로 4분기 예산 정상 집행하여 성장률 5% 달성 예상**
  - 조세 사면을 통해 확보된 세수는 인프라 투자에 집중 편성됨

GDP 구성비중(2016.3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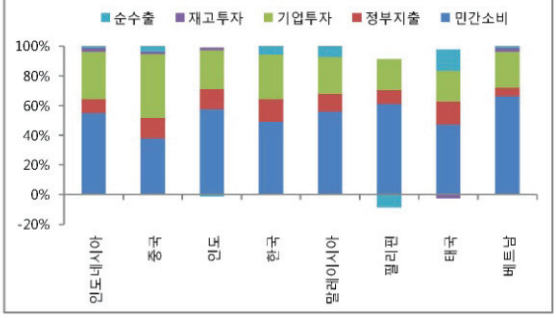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GDP 구성요소별 증감

(YoY,%)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2015				2016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GDP성장률	4.7	4.7	4.7	5.0	4.9	5.2	5.0
민간 소비	5.0	5.0	5.0	4.9	5.0	5.1	5.0
정부 지출	2.9	2.6	7.1	7.3	3.5	6.2	-3.0
기업투자	4.6	3.9	4.8	6.9	5.6	5.1	4.1
수출	-0.6	0.0	-0.6	-6.4	-3.5	-2.4	-6.0
수입	-2.2	-7.0	-5.9	-8.1	-5.0	-2.9	-3.9

자료 : BPS

Ⅱ -2. 인도네시아 경제전망 : 민간 소비

SHINHAN BANK

민간소비는 2017년에도 견조하게 성장하여 5%대 GDP 성장률 지지할 전망

- **지속적 임금 상승과 소비 고도화 추세 지속**
  - **최저 임금 상승**을 바탕으로 평균 임금 상승
    * 인도네시아 정부령으로 최저임금 인상율을 [인플레이션율+GDP성장률] 수준으로 공표
  - 임금 상승을 바탕으로 **중산층 규모가 확대**
  - 소득수준의 지속적인 개선을 바탕으로 **필수재 중심 소비에서 내구재, 서비스로 확대** 추세 지속 전망
    * 주거, 헬스케어, 금융서비스 등으로 확대 예상

1인당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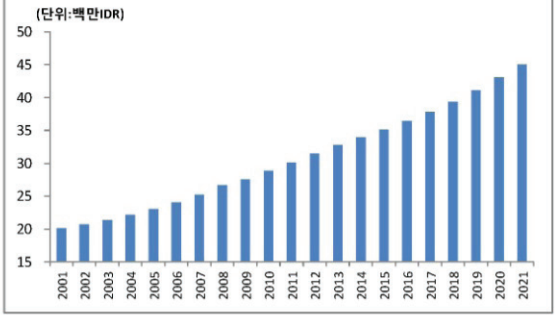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16~'21 IMF 예상치

소비 품목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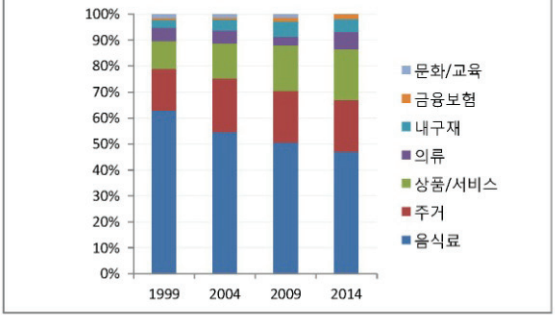

자료 : BPS

II -3. 인도네시아 경제전망 : 인프라 투자

2017년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은 인프라 투자 집행 수준에 따라 좌우될 전망

➢ **미흡한 인프라 수준으로 인해 높은 인프라 투자 수요 지속 예상**

- 동남아 주요국가 대비 **도로, 철도, 전기공급** 등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부족

➢ **2017년에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 집행 예정**

- 조코위 정부는 집권 초 **국가 중기 개발 계획(RPJMN, 2015-2019)**를 발표

  * **해양, 교통/도로 개발, 인프라 개발** 등이 포함

- '16년 2월에는 총 사업규모 74조원 규모의 **30대 우선개발 인프라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 中

인프라 부문 경쟁력 열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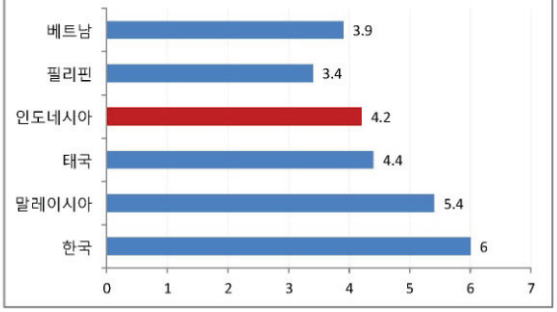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2016-2017), 7점 만점 기준

국가 중기 개발 계획

구분	목표	프로젝트 주요 내용
해양	항구 및 해양고속도로 건설로 지역간 연결성 확보 및 균형 개발	- 24개 항구개발, 83개 상업용 항구 및 1,481개 비상업용 항구 확장 - 항해선 7,500척 및 12개 조선소 활성화
교통/도로 개발	제품원가 內 물류비용 감축 ('14년 27% → '19년 19.2%)	- '19년까지 신규도로 2,650km, 유료도로 1,000km 증설 - '19년까지 15개 신공항 증설 - '19년까지 3,258km 철도망 증설
인프라 개발	식량/에너지 자주권 확보	- 경작지 확대, 49개 저수지 개발 - 전력 생산 및 보급시설 증설 - 석유정제시설, 건설, 도시가스 보급, 가스배관시설 건설, 수력/지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

자료 : KOTRA 재인용

II -3. 인도네시아 경제전망 : 정부 지출 (1)

2017년 정부 지출 완만한 증가 속에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

➢ **재정 적자로 인해 정부 지출의 대규모 확대는 제약**

- **낮은 세수**로 인해 주요 신흥국 대비 정부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

  * 약 2.6억명의 인구 中 27백만명만 세금 납부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90만명만 실제로 세금 납부(2014, OECD)

- '16년 7월 취임한 재무장관 Sri Mulyani는 '신뢰회복'을 기치로 재정적자 목표 수준을 GDP의 2.5%으로 설정

  * 재정수지 적자는 3%에 가까워진 상태로 現 재정 상태에서 정부 추가 지출은 제약

GDP 대비 정부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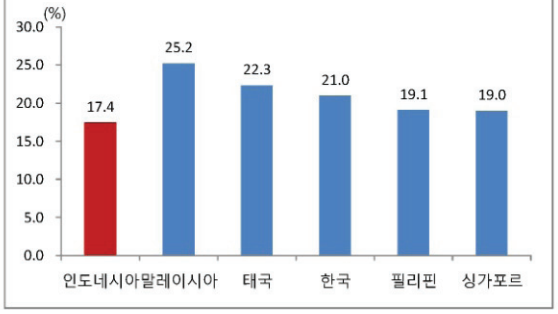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재정 적자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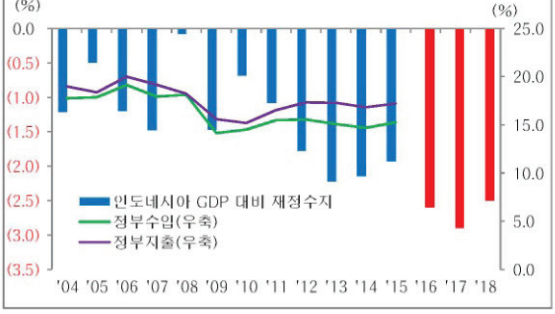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16~'18년은 예상치

II -3. 인도네시아 경제전망 : 정부 지출 (2)

Together, a better tomorrow SHINHAN BANK

➢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한 조세 사면법(Tax Amnesty) 시행**

- **해외 도피자금 및 국내 은폐자금 환류 유도** 위해 자진 신고 時 최소한의 세금만 부과하고 법적 책임 면제
- 12월까지 신고는 목표 수준인 4,000조 루피아를 초과 달성, 국내 환류는 아직 미진한 상태
- 조세 사면법을 통해 추징한 세금은 95.7조 루피아(목표 165조 루피아 대비 약 60% 수준)로 대부분 인프라 투자 집행

➢ **디지털化, 핀테크 활성화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세원 확보 추진**

- E-billing 시스템('16.1월부터 온라인 세금 납부 의무화) 등 **전자정부 사업을 통한 행정 투명성** 강화
- 전자상거래와 스타트업을 장려하여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세원 확보

신고 및 환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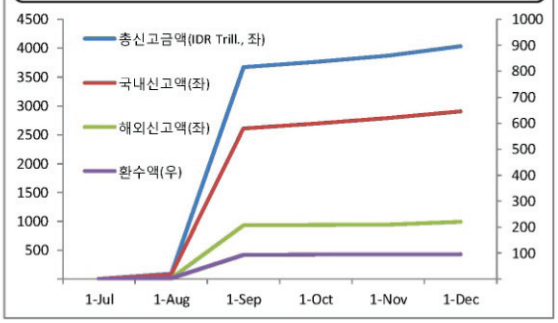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인도네시아 국세청

전자세금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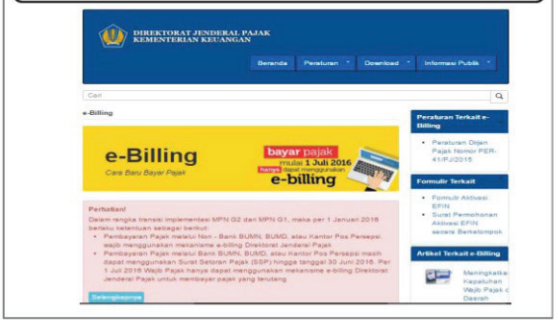

자료 : 인도네시아 국세청

II -3. 인도네시아 경제전망 : 정부 지출 (3)

Together, a better tomorrow SHINHAN BANK

➢ **제한된 정부 예산 內 지출 구조 개선**

- 저유가 환경 속에 **연료보조금 비중을 축소하고 인프라, 교육 예산 규모를 증대**
- 인프라 투자를 위한 공기업에 자본 투여 실시

➢ **국내 금융시장 활성화를 통한 부채 구조 개선**

-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30% 미만**으로 주요 신흥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음
- 외환보유액대비 **대외부채 비중이 높아('16.3Q 기준 281.2%) 국내 조달 활성화** 추진

  * 루피아 통화 수크리(Sukuri) 채권 등 이슬람 금융 활성화 및 조세 사면 신고 금액의 국내채권 투자 時 환류 인정

정부 지출 구조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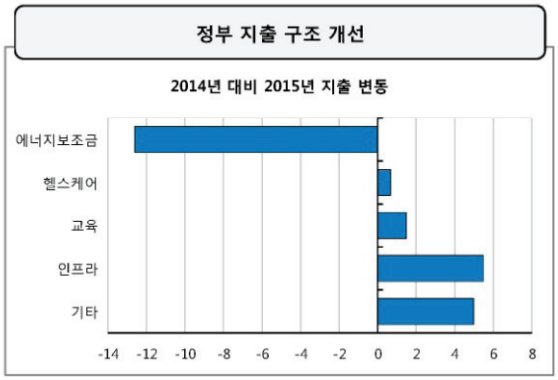

자료 : OECD Economic Surveys(2016) 재인용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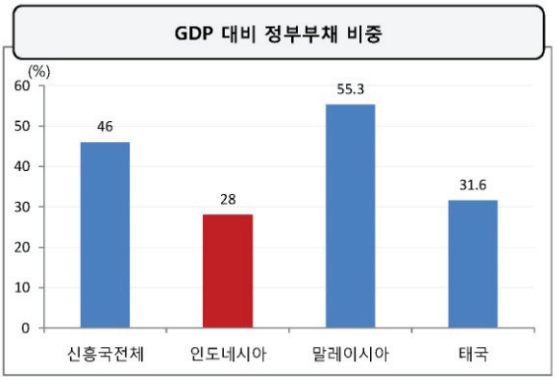

자료 : BIS

II -3. 인도네시아 경제전망 : 정부 지출 (4)

Together, a better tomorrow SHINHAN BANK

➢ **정권 안정에 기반하여 경제 개혁 지속적 추진**

- 여소야대 및 연립여당 내부 갈등을 극복하고 국회 內 **연립여당 지위 공고화**
- '16년 7월 개각에서 개혁파 재무장관을 기용하는 등 일관된 **개혁 드라이브**(비효율적 관료주의 청산) 추진 中

➢ **'17년 2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 추진 속도에 일부 영향이 예상됨**

- 기독교도 자카르타 주지사의 발언으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는 재판 결과를 대기하고 있음
  * '17년 2월 자카르타를 포함한 8개 주지사 선거에도 영향
- 선거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이 변동될 경우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개발 사업 진행 지연 가능성

연립여당 의석수

'14년 대통령 당선 당시
연립 여당 의석수 비중 44.1%에 불과

→ 제 1야당(16.2%)이었던 Golkar 당이 16년 1월 지지 선언하면서 과반 초과 의석 달성

자료 : 언론기사 종합

'2017 지방선거 대상 지역

자료 : 언론기사 종합

II -4. 인도네시아 경제전망 : 기업 투자 (1)

Together, a better tomorrow SHINHAN BANK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해 내/외국인 투자 증가 전망

➢ **'15년 소폭 감소하였던 상장기업의 CAPEX 투자는 '16년 이후의 증가세 유지 전망**

- '15년 석탄, 니켈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광업부문의 투자 감소하였으나 원자재 가격 반등을 바탕으로 호전될 전망
- 조세 사면법(Tax Amnesty)를 통해 은닉 자금의 환류 시 국내 투자 유도하고 있음

➢ **경제 정책 패키지의 지속적 추진으로 기업 투자 환경 개선**

- 산업단지 조성, 인허가 절차 간소화, 최저임금 정책, 경제 특구 활성화 등 정책 발표로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 확인
  * '16년 11월까지 제 14차 경제정책 패키지 발표되었으며, 제 15차 경제정책 패키지 준비 중

CAPEX 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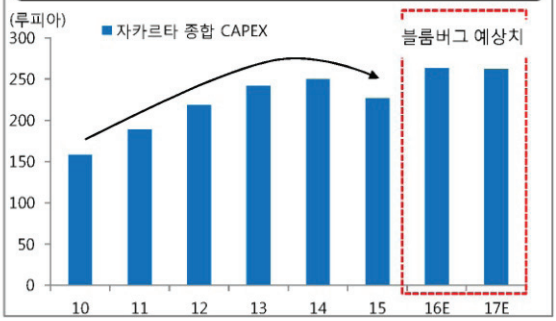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경제정책 패키지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발표 회차
규제 완화	허가, 절차, 법 집행 등에 대한 규제 완화 산업단지 투자 신속 허가 이슬람금융 규제 완화 저소득층 부동산 프로젝트 규제완화 35개 사업 외국인 지분 한도 철폐	1차, 2차, 5차, 10차, 12차, 13차
세제 혜택	수출기업 세율 인하 특별 경제 구역 투자 세제 혜택 노동집약 사업에 대한 관세, 노동자소득세감면 항공기 부품 소득세 폐지 부동산투자신탁 부동산 세율 인하	2차, 3차, 5차, 6차, 7차, 8차, 11차
산업 지원	수출기업 금리 인하 최저 임금 인상 기준 공식 마련 중소/수출/노동집약 산업 소액 융자 민간 석유 정제 개발 혜택 부여 민간-국영 우편서비스 가격차 제거 수출지향 중소기업 정부 보조 대출 의약 사업/전자상거래에 대한 로드맵	2차, 4차, 8차, 9차, 11차, 14차

자료 : Jakarta Post, 투자자산전략부 재정리

Ⅱ -4. 인도네시아 경제전망 : 기업 투자 (2)

➢ **외국인 투자 유인 정책 지속적인 확대** 中

- '16년 2월 55개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 완화**(35개 분야에 대해서는 100%까지 투자 가능)
- 외국인 부동산 권리 보유 기간 연장 등을 통한 **부동산 투자 개방 추진** 中

➢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 증가 추세 지속**

- 홍콩, 중국 등 **화교계 자금의 FDI 유입**이 증가
  * 광물, 제련 등 자원 관련 분야 및 대형 인프라 투자에 중국계 자금 유입
- AIIB의 인도네시아 빈민가 개발 사업 공동 융자가 승인되는 등 **건설 인프라 관련 투자 규모 확대**될 것

외국인 투자 지분 완화(100% 보유)

분류	업종
공공사업	유료도로, 비 유해 폐기물 처리
상업	직접판매, 냉동창고, 선물 브로커
정보통신	통신장치 판매, 통신장치 테스트, 전자상거래
관광/창조경제	레스토랑,Bar,커피숍,스포츠센터, 영화포스터사진관/제작,영화제작실, 영화음향삽입,영화인쇄,영화편집 영화각본제작제공,영화제작, 영화상영, 녹음실, 영화배포
보건/복지	의약용원자재, 병원경영상담서비스, 의료시설임대, 의료실험실, 연금, 의료건강검진 클리닉, 공공의료, 전문의료, 구강보건, 전통의료, 조무사에 의한 의료서비스
일반산업	폐타이어 재활용

자료 : 언론보도자료, 투자자산전략부 재정리

FDI 유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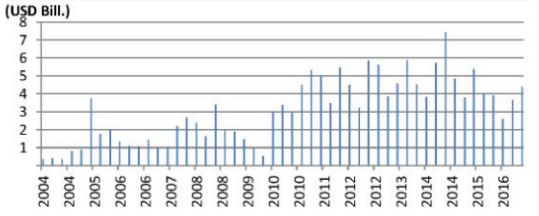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1Q
FDI실행액(억$)	194.7	245.6	286.2	285.3	292.7	69.2
증가율	13.2%	26.1%	16.5%	-0.3%	2.6%	17.6%(yoy)
건수	4,342	4,579	912	8,885	17,738	3,888

자료 : Bloomberg, BKPM(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Ⅱ -4. 인도네시아 경제전망 : 수출입 (1)

원자재 가격 회복 바탕으로 순수출은 소폭 개선될 전망

➢ **비석유 원자재 가격의 반등을 바탕으로 수출 개선 기대**

- 주요 수출품인 **석탄, 팜오일 가격 반등**으로 '16년의 비석유 및 가스 수출 개선 이어질 것
  * 석탄, 팜오일/부산물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0% 수준을 차지

➢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 무역 기조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인도네시아는 주변 동남아 국가 대비 **수출 의존도가 낮음**
- 트럼프의 보호 무역은 대부분 해외 제조업 생산품을 대상으로 함

아시아 신흥국 수출 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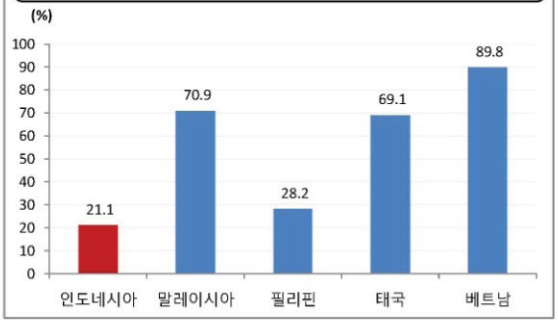

자료 : OECD

원자재 수출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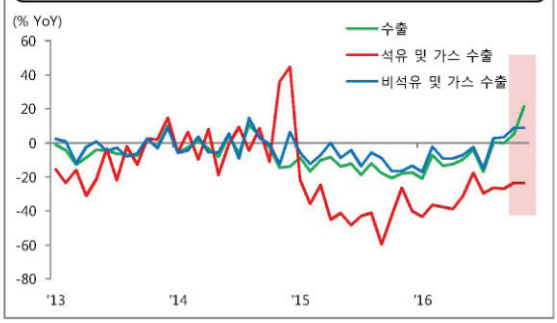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II -4. 인도네시아 경제전망 : 수출입 (2)

➢ **산업용 금속 수요 증가에도 금속 광물 수출은 제한적 증가 예상**

- **ASEAN 국가의 전반적인 인프라 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산업용 금속 수요 증가 예상됨
- **'17년 광업법 완화 추진 경과**에 따라 금속 광물 수출 증감 규모가 달라질 것
  : '14년 시행된 新 광업법으로 미제련 광물 수출 제한되어 있으며 니켈/구리에 대한 일부 완화가 '17년 종료 예정

➢ **산유국이지만 유가 반등에 의한 순수출 증가 기대하기 어려움**

- 유가 하락에 따른 신규 투자 부족으로 원유 생산량 감소한 반면 국내 수요 증가로 **'04년 이후 석유 순수입국**
- 정유 시설 부족으로 석유 제품 수입 규모가 수입의 10% 이상을 차지 : 정유 인프라 확충 통한 수입대체 추진 中

이머징 성장 – 산업용 금속가격

자료 : Bloomberg

석유 생산 소비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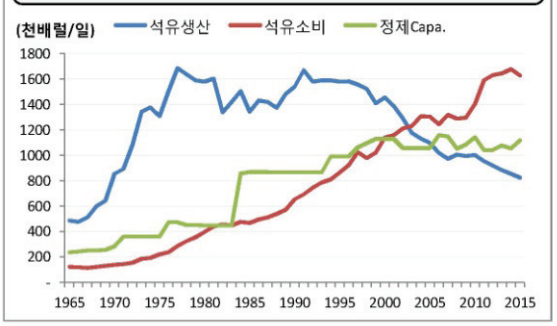

자료 : BP Stastical review(2016)

II -4. 인도네시아 경제전망 : 수출입 (3)

➢ **경쟁국대비 열위한 제조업 생산/수출 여건으로 원자재 外 수출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움**

- **비싼 임금과 높은 해고 비용**으로 인해 생산 경쟁력 낮음(WEF 경쟁력(2016) 기준 노동시장 효율성 138개국 중 108위)
- AEC 발효되었으나 **열악한 물류 사정으로 수입물품에 소비 시장 잠식** 우려
  : 물류비용으로 인해 수입품보다 내수물품의 가격이 높은 현상 발생
- **다자간 통상 협력 추진 미흡**
  : 주요 수출 품목(섬유/봉제) 경쟁 관계인 **베트남은 적극적으로 통상 협력을 추진**하는 것과 대비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TPP 폐기 발언으로 지연되어 왔던 RCEP 타결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긍정적

경직된 노동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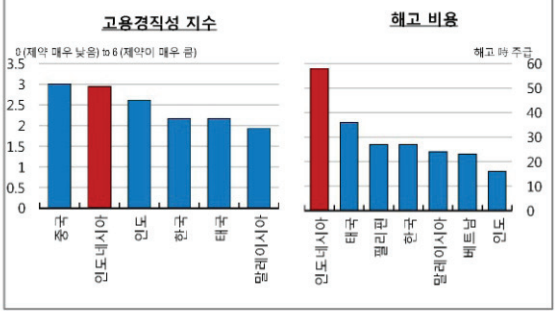

자료 : OECD Economic Surveys(2016) 재인용

인도네시아 / 베트남 통상 협력 추진 비교

구분	인도네시아	베트남
공통	(발효)ASEAN-한국 FTA/ ASEAN-중국 FTA/ ASEAN-인도 FTA / ASEAN -호주,뉴질랜드 FTA / ASEAN-일본 EPA / **AEC** (협상중) **RCEP**	
개별	(발효)인도네시아-일본 EPA (협상중)인도네시아-EFTA CEPA/ 인도네시아-호주 CEPA/ 인도네시아-EU FTA/ 인도네시아-인도CECA/ 인도네시아-한국 CEPA	(발효)베트남-미국 BTA/ 베트남-일본 EPA/ 베트남-칠레 FTA/ 베트남-한국 FTA/ (타결)베트남-EMEU FTA / **TPP** (협상중)베트남-EFTA FTA/ 베트남-EU FTA

* EFTA : EU 미참여 4개국 자유무역협정(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 EAEU : 유라시아경제연합(러시아,벨라루스,아르메니아,카자흐스탄,키르키즈스탄)

자료 : 관세청, 투자자산전략부 재정리

Ⅲ-1. 인도네시아 금리 전망 : 2016년 빠른 금리 인하

➢ **물가 및 환율 안정을 바탕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16년 中 빠르게 금리 인하를 실시**

- **물가상승률(CPI)이 목표 범위(4%±1%p)** 內로 관리됨
  : '13~'14년 연료보조금 폐지 및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높았던 물가가 유가하락을 바탕으로 빠르게 안정화
- **환율이 13,000 루피아 초반에서 안정화**된 것도 금리 인하를 지지
- '15년 **성장률이 '09년 이후 최저인 5% 미만으로 하락**함에 따라 상반기 3차례 금리 인하,
  정부의 **6월 예산 감축에 따른 내수 침체 우려**로 하반기 3차례 금리 인하 등 **빠른 금리 인하를 실시**
  : '16년 8월 CPI가 목표 범위 하회하여 7일물 역Repo 금리를 기준금리로 변경하는 등 공격적으로 완화에 나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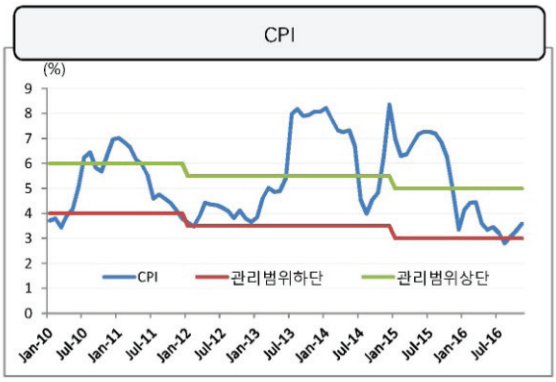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Ⅲ-2. 인도네시아 금리 전망 : 2017년 추가 인하는 제한적

➢ **물가 상승 요인으로 금리 추가 인하는 제한적 예상**

- **'17년 유가의 소폭 상승** 전망되나, 정부의 연료 보조금 축소로 소비자 물가에 직접 반영
  * OPEC 및 非 OPEC 회원국의 감산 합의를 바탕으로 재고수준을 소진하면서 유가 상승 예상됨($50~65/bbl)
- 저소득층인 사용량 900VA 이하 구간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 예정('17년 1월)**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은 0.8~1.1% 수준의 물가 상승 기여하겠으나, Inflation Target 범위 內 관리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 美 **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 상승 예상**도 수입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듯

자료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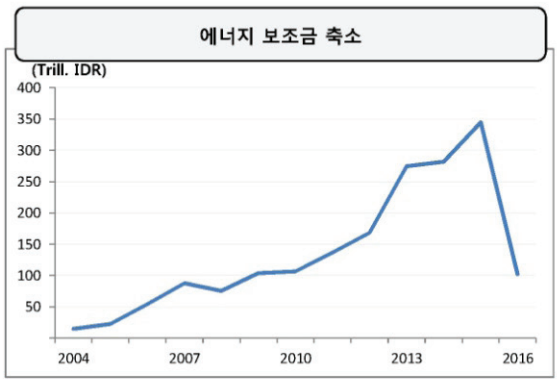

자료 : CEIC

Ⅲ-3. 인도네시아 금리 전망 : 2017년 한 차례 금리 인상 예상

➢ 美 **금리 인상 추이에 따라 통화가치 하락 방어를 위해 한 차례 기준 금리 인상 예상**

- '13년 Taper Tantrum 대비 **외환보유고와 대외부채 규모 모두 증가**
  * 미국의 금리 인상속도가 예상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경우 **자본유출 방지를 위한 금리 인상 필요**할 것
- 다만, **급격한 금리 인상은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어 소폭 인상 예상**
  *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요인을 관리하는 수준
  * '17~'18년에 걸쳐 만기 돌아오는 국채의 차환 발행 금리 부담 완화 위해 제한적 인상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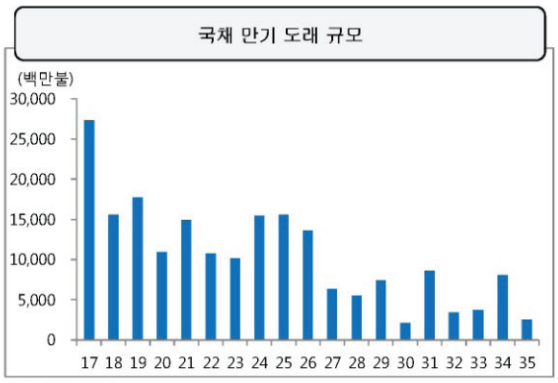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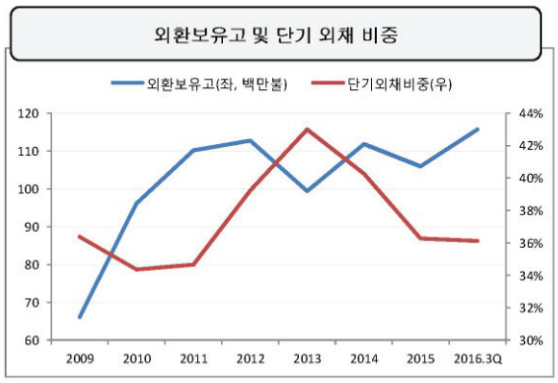

자료 : 인도네시아 재무부

Ⅳ-2. 인도네시아 환율 전망 : 2017년 IDR 가치 하락 제한적

➢ **'17년 IDR 가치는 '13년 대비 개선된 경제 체력을 바탕으로 통화가치 급격한 하락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2015년 이후 안정적** 수준을 유지
- **GDP 대비 정부부채와 단기 대외부채 비율은 낮게** 유지되고 있음
- 국제 신용평가사 등급은 **투자등급** 수준 [Moody's Baa3(S), S&P BB+(P), Fitch BBB-(P)]
- **조세 사면(Tax Amnesty)**을 통한 해외 은닉 자산 환원을 바탕으로 외화 유입 기대
- 경제 부양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통화 가치의 소폭 하락을 용인**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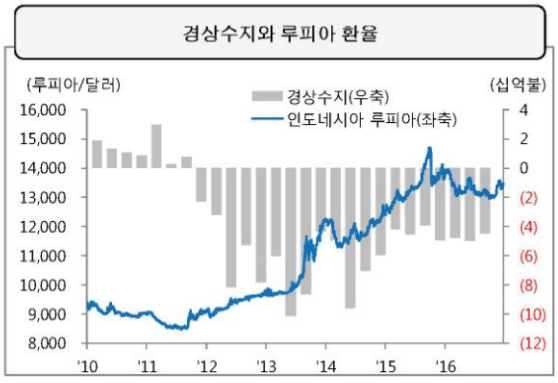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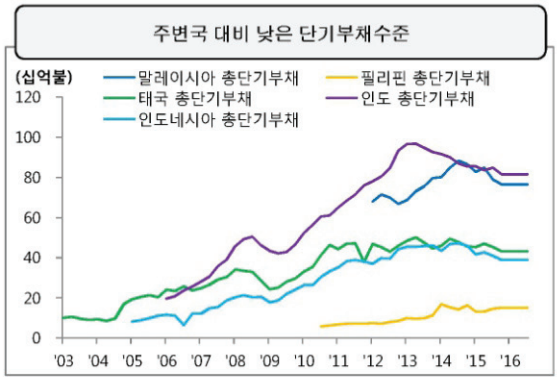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Ⅳ-1. 인도네시아 환율 전망 : 대외 변동성에 취약

➢ **미국의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과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달러 강세 시현**

- **이머징 투자자금 이탈**로 IDR 가치는 하락
- 안정세를 보이던 인도네시아 CDS 프리미엄도 트럼프 당선 이후 소폭 상승

➢ **Morgan Stanley는 '16.12 FOMC 금리 인상 직후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New Fragile 5를 선정**

- **Fragile 5 : 美 금리 인상에 따라 외화자금 이탈 우려가 큰 상위 5개 국가**
- '16.12 선정 時 인도/브라질 대신 멕시코/콜롬비아를 선정하고 **인도네시아는 유지**함
- '13.08 Fragile 5 최초 선정 이후 IDR 가치는 큰 폭 하락하였으며, '16년에 들어서 다소 안정화되고 있었음

이머징 자금 유출입과 IDR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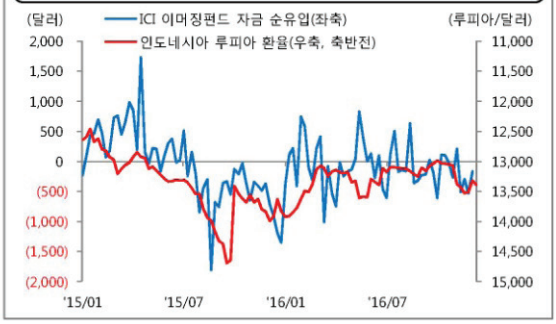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New Fragile 5 선정

	남아공	콜롬비아	터키	멕시코	인도네시아	브라질	인도
경상수지	4	4	3	3	3	2	2
외환보유고대비 대외부채 비중	4	4	4	3	4	2	3
정부채 외국인보유비중	4	3	1	3	1	2	1
달러표시 회사채	2	2	3	1	1	3	1
인플레이션	2	2	4	3	3	2	0
실질금리차	2	1	1	1	2	0	2
종합점수	3.3	3	2.8	2.5	2.5	1.9	1.6

자료 : Morgan Stanley

[참고자료] 주요 해외금융 기관별 루피아 환율전망

Contributor	Poll Date	One Month 2017-Jan-31	Three Months 2017-Mar-31	Six Months 2017-Jun-30	Twelve Months 2017-Dec-29
ANZ BANK	2017-Jan-06	13,567	13,700	13,800	14,000
BMO	2017-Jan-06	13,440	13,555	13,665	14,000
BofAML	2017-Jan-06	13,556	13,900	14,200	14,600
CreditSuisse	2017-Jan-06	13,423	13,500	13,633	13,900
DBS	2017-Jan-06	13,339	13,339	13,518	13,876
HSBC	2017-Jan-06	--	13,800	14,000	13,600
ING	2017-Jan-06	13,400	13,600	13,400	13,200
JULIUS BAER	2017-Jan-06	13,760	14,000	14,140	14,800
MACQUARIE GR	2017-Jan-06	13,700	13,800	14,000	14,300
Natixis	2017-Jan-06	--	13,600	13,700	13,800
Nomura	2017-Jan-06	13,733	13,900	13,900	14,150
OCBC	2017-Jan-06	13,475	13,540	13,638	13,835
RBS	2017-Jan-06	--	13,500	13,400	13,100
SAMUEL SEKUR	2017-Jan-06	13,400	13,300	13,000	12,800
SCOTIABANK	2017-Jan-06	13,475	13,500	13,600	13,700
SEB	2017-Jan-06	13,500	13,200	13,500	14,000
Soc Gen	2017-Jan-06	--	14,000	13,700	13,500
WELLS FARGO	2017-Jan-06	13,400	13,300	13,400	13,600
WESTPAC	2017-Jan-06	--	13,303	13,396	13,675
최소 전망환율	--	13,339	13,200	13,000	12,800
최대 전망환율	--	13,760	14,000	14,200	14,800
평균 전망환율	--	13,512	13,597	13,663	13,812

자료 출처: Reuters Polls For FX

3 투자 현황

2015년 전체 투자액은 전년대비 17.8% 증가한 545.4조 루피아로 정부의 목표치인 519.5조 루피아를 상회. 이 가운데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365.9조 루피아로 전년 307조 루피아 대비 19.2% 증가하였고, 내국인 직접투자(DDI)는 179.5조 루피아로 전년 156.1조 루피아 대비 15% 증가. 투자 성격별로는 신규투자가 399.1조 루피아로 전년 신규투자인 323.1조 루피아에 비해 23.5% 증가했고, 확장투자는 146.4조 루피아로 전년 139.9조 대비 4.9% 증가해, 신규투자가 전체 투자 확대를 주도하는 경향

<최근 5년간 인도네시아 전체 투자 추이>

(단위 : 조 루피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내국인 직접 투자	신규	34.3	46.0	74.8	110.1	114.7
	확장	41.7	46.2	53.4	46.0	64.8
	합계	76.0	92.2	128.2	156.1	179.5
외국인 직접 투자	신규	78.3	115.7	176.0	213.1	284.4
	확장	97.0	105.3	94.4	93.9	81.5
	합계	175.3	221.0	270.4	307.0	365.9
총투자		251.3	313.2	398.6	463.1	545.4
증가율(%)		-	24.6	27.3	16.2	17.8

※ 자료출처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달러화 기준 2015년 FDI 금액은 292.7억 불로 전년대비 2.6% 증가했고, 프로젝트도 2014년 8,885건에서 2015년 17,738건으로 대폭 증가

루피아화 기준으로는 19.2% 증가한 반면 달러화 기준으로 2.6% 증가에 그친 것은 루피아화 가치가 하락한 것에 기인

※ 투자 통계 작성 기관인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은 FDI 통계 환산시 매년 정부예산 기준환율을 사용하며, 2015년도는 달러당 12,500루피아를 적용

<최근 5년간 인도네시아 해외직접투자 추이(US달러 기준)>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FDI(억불)	194.7	245.6	286.2	285.3	292.7
증가율(%)	-	26.1	16.5	Δ0.3	2.6
프로젝트(건수)	4,342	4,579	9,612	8,885	17.738

※ 자료출처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투자국별로는 한국은 2014년 11.2억 불 대비 7% 증가한 12.1억 불로 5위 기록, 싱가포르가 59억 불로 가장 많았고, 말레이시아 30.7억 불, 일본 28.7억 불, 네덜란드 13억 불 순

< 인도네시아 해외직접투자 국가별 순위>

(단위: 백만불)

순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	싱가포르	4,856.4	일본	4,712.9	싱가포르	5,832.1	싱가포르	5,901.1
2	일본	2,456.9	싱가포르	4,670.8	일본	2,705.1	말레이시아	3,076.9
3	한국	1,949.7	미국	2,435.8	말레이시아	1,776.3	일본	2,876.9
4	미국	1,238.3	한국	2,205.5	네덜란드	1,726.3	네덜란드	1,307.7
5	모리셔스	1,058.8	영국	1,075.8	영국	1,588.0	한국	1,213.4
6	네덜란드	966.5	네덜란드	927.8	미국	1,299.5	홍콩	937.2
7	영국	934.4	버진아일랜드	785.7	한국	1,126.6	미국	893.1
8	버진아일랜드	855.9	모리셔스	780	중국	800	버진아일랜드	730.5
9	호주	743.6	말레이시아	711.3	홍콩	657.3	중국	628.3
10	태국	646.9	태국	402.6	호주	47.3	영국	503.2

※ 자료출처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1) 수출입

2015년 총 교역액은 2,930억 불로 전년대비 17% 하락하며 크게 감소한 상황, 수출은 1,503억 불(전년대비 14.6% 감소), 수입은 1,427억 불(전년대비 19.9%감소)로 수출은 4년 연속, 수입은 3년 연속 감소

<인도네시아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불)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교역액	3,817	3,728	3,542	2,930
수출(증가율)	1,900(-6.6%)	1,826(-3.9%)	1,760(-3.6%)	1,503(-14.6%)
수입(증가율)	1,917(8.1%)	1,866(-2.7%)	1.782(-4.5%)	1,427(-19.9%)
무역수지	-17	-40	-22	76

※ 자료출처 : 인도네시아 통계청

이는 세계경기 침체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에너지자원(석유가스, 광물)의 수출입이 급격히 감소한 것에 기인, 2016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도네시아 국가개발 계획부는 루피아화 약세로 인해 원자재 이외의 수출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

2) 바이오에너지 개발

- 바이오 에너지 종류
  - 바이오 에탄올(가솔린 대체에너지) : 타피오카, 사탕수수, 사탕무, 고구마, 옥수수
  - 바이오 디젤(디젤유 대체에너지) : 팜오일, 유채, 피마자
  - 바이오 가스(천연가스 대체에너지)
- 인도네시아 팜오일 산업 동향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팜오일 생산국으로 2014년 3천 1백만톤을 생산하였으며, 2020년까지 4천만톤 생산 계획
  - 팜오일 생산량 증가율 : (2012년) 8.78% → (2013년) 8.77% → (2014년) 8.06%
  - 인도네시아의 3대 수출 품목 및 비중(2014년) : 석탄 12%, 석유•가스 9.3%, 팜오일 8.3%

  인도네시아 농업부에 따르면, 팜오일 대상 가능 면적이 15백만 ha(칼리만탄, 수마트라, 파푸아, 자바섬 등지)로서 세계 최대의 잠재력 보유
  - 팜오일 재배 가능지는 적도를 중심으로 위도 10도 내외지역
  - 단위면적 당 생산성(톤/ha/년) : 팜오일(3.4-5톤), 대두유(0.3-0.5톤), 유채유(0.5 - 1.4톤)

  원자재 생산기지인 팜오일 농장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對인도네시아 관심과 투자 급증
- 인도네시아는 2016년 바이오 디젤 혼합비율을 20%까지 높이겠다는 B 20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B 20 정책은 팜오일 등 바이오 연료를 디젤에 혼합하는 것으로 2013년 10%, 2015년 15%, 2016년 20%로 상향 추친
-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동향

  코린도 그룹은 지난 1998년 팜오일 농장에 투자, 2004년부터 CPO 가공공장에서 팜오일을 생산•판매 중이며, 향후 20만 ha(4억 불 규모)의 장기투자계획 추진 중. 삼성물산, 삼탄, 대상, LG, 포스코대우 등이 진출하여 총 15만 ha 운영 및 개발 중
- 현재 인도네시아 바이오에너지 산업은 식용유로서의 팜오일 수요증대 등으로 활성화 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팜오일 공급량 증대로 인해 바이오에너지 산업 활성화 전망

3)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1)석유 산업 현황

- 인도네시아는 37억 배럴의 석유매장량을 보유하여 세계 27위, 전 세계 매장량 1조 3천억 배럴의 0.2% 차지
- 석유생산량은 80만 배럴/일로 전 세계 생산량의 1.1%로 세계 20위
  - 1위: 사우디(13.3%), 2위: 러시아(12.8%), 3위: 미국(9.6%)
- 전체 생산의 89.1%가 인도네시아 석유공사(Pertamina)와 외국 회사간 생산량 분할 계약에 의해 생산되며, 10.9%는 Pertamina가 독자 생산
- 2004년부터 석유 순수입국이 되었으며 2008년 OPEC을 탈퇴하였다가 2015년 OPEC 재가입, 2014년 기준 생산 80만 배럴, 소비 130만 배럴
- 석유생산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감소 및 석유탐사, 광구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1993년 이후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하락

(2)천연가스 산업 현황

- 가스매장량은 103조 CF(Cubic Feet)로 세계 10위, 전세계 매장량 6,534조 CF의 1.6% 차지
- 가스생산량은 72억 CF/일로 세계 10위
  - 1위:미국(593억 CF/일), 2위:러시아(528억 CF/일), 3위:캐나다(161억 CF/일)
- 신규 가스전 발견 등으로 매장량이 증대되고 있고, 생산은 석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량 지속 유지(매년 0.1% 감소, 향후 57년 이상 생산)

(3)광물자원 현황

- 인도네시아는 주요 광물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된 나라
  - 생산량 기준으로 석탄(5위), 주석(2위), 니켈(2위), 동(11위), 금(8위)
  - 수출량 기준으로 석탄(1위), 주석(1위), 니켈(3위), 동(6위)
- 2009년 신광업법이 제정되어 2014년부터는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원광석을 정제한 이후 수출하게 하는 원광석 수출 금지 제도를 운영

4) 산림 자원

(1)현황

- 국토의 65%가 산림(124만㎢)인 세계 2위 열대산림자원 보유국

  ※ 산림총축적 : 139억㎥(직경 53cm이상 상업목적 : 32억㎥)
- 일부 종족림을 제외한 전 산림이 국유림으로, 국영산림공사가 관리, 칼리만탄, 수마트라, 자바섬의 산림은 많이 벌채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고, 파푸아주의 산림의 대부분이 미개발 상태
- 동남아 최대 목재산업국으로 고용인력 400만 명, 전체 수출액의 15% 점유
  - 연간 임목생장량

  ※ 수종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ha당 10㎥-20㎥으로서 경쟁력이 매우 높음

  ※ 임목생장량(Tree Increment): 수목이 일정기간 동안 생장하는 양

(2)산림분야 기후변화 대응 정책 현황

- 인도네시아는 2030년까지 BAU 기준 29% 온실가스 배출 감축하고, 국제사회의 도움이 있을 경우 41%까지 감축하겠다는 INDC를 2015년 발표
  - 주요 감축 분야 : ① Energy(including Transport), ② Industrial Processes and Product use, ③ Waste, ④ Land-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⑤ Agriculture
- 2011년 5월, 천연림과 이탄지의 신규 개발을 2년 중지하는 '산림 개발 모라토리엄'을 공포하였으며, 최근 2차례 연장하여 2016년 5월까지 천연림과 이탄지에 대한 개발을 제한하고 있음
- 2015년 극심한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 수마트라, 칼리만탄 지역 이탄지 등에서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
  - 산불로 훼손된 이탄지 면적 : 300만 ha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1월 훼손된 이탄지 중 5년내 약 200만 ha의 이탄지를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이탄지 복원청(Peat Land Restoration Agency)을 설치

5) ICT 산업

(1)현황

- ICT 산업은 2014년 기준 GDP의 3.5% 수준으로 약 300억 불 규모이며, 매년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통신 분야가 전체의 65% 정도를 차지하며 이어서 하드웨어(휴대폰, PC 등), 소프트웨어(IT 서비스 포함) 순임

  ※ ICT산업 성장률 : (2011년) 10.02% → (2012년) 12.28% → (2013년) 10.39% → (2014년) 10.02%

- 분야별 현황

  (통신)

  - 주요 3개 통신사(Telkomsel, Indosat, XL Axiata)가 90% 이상 점유, 3G 서비스 위주이나 2014년 하반기부터 4G LTE 서비스 개시
  - 유선 가입자는 인구 100명당 11.7명 수준이나 무선 가입자는 126.2명에 이르며(ITU, 2015년), 스마트폰 사용자는 인구의 24% 수준임
  - 인터넷 가입자는 인구의 17.1%수준이고, 유선 광대역 가입자는 인구 100명당 1.2명, 무선 광대역 가입자는 34.7명 수준임 (ITU, 2015년)

  (HW)

  - 정부의 광대역통신망 구축, 통신업체의 서비스 확대, 인터넷 보급률 증가 등으로 유•무선 송수신 장비 등 관련 분야 수요 지속 증가

  (SW 및 IT서비스)

  - 외국계 SW업체가 다수를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 통신, 금융, 공공, 미디어 쪽에서 IT 서비스 및 SW 수요가 증가 추세
  - Facebook 및 Twitter 이용자는 세계 3~5위권 정도로 많으며 꾸준히 증가

(2)전망

- 인도네시아 ICT산업은 정부의 인프라 구축 및 민간의 통신서비스 개발 등으로 지속 확대
- 정부는 광대역통신망 구축을 위해 2007년 Palapa Ring Project, 2014년 브로드밴드 계획(IBP 2014년-2019년)을 발표하고 중점 추진
- 관련 장비 산업 및 개선된 통신망에 기반하여 e-commerce(상거래), e-learning(교육), e-health(보건) e-government(전자정부) 등 분야 수요 증가 예상
- 젊은 중산층 중심의 ICT 기기 활용 확산, 소득 증대에 따른 ICT기기 구매 증가, 통신망 개선 등으로 민간의 새로운 통신서비스 개발이 지속될 전망

6) 인프라

(1)현황

-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경쟁력은 조사대상 144개 국가 중 56위로 아시아 주요 경쟁국가인 말레이시아(25위), 중국(46위), 태국(48위)보다 낮음. 기타 라오스(94위), 베트남(81위), 미얀마(137위)

  ※ 2014년 기준, WEF 2014-2015 국제경쟁력 보고서

- 열악한 인프라 사정으로 인도네시아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어, 산업구조 고도화의 성패는 인프라 확충 여부에 달렸다는 평가

※ 인도네시아기업은 제품 가격의 27%를 물류비용으로 지불(선진국 7~10%)하고 있어 인프라는 기업 활동의 최대 장애로 평가(동부 자바 화물운송협의회 회장 Windana)

- 2014년 10월 조코위 신정부 출범 이후 해양중심국가 건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정책기조로 하면서 인프라 확충 정책 추진 중, 신정부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5.5천조 루피아 규모의 2015년~2019년 '중기 국가개발계획'을 발표하고 부처별로 도로, 철도, 항만 등 세부계획 수립

  ※ 주요사업 : 5,519.4조 루피아(약 4,100억 불) 소요

- 대통령 임기 내에 2,000km의 도로 건설, 4,000km의 지역도로를 국도로 전환 (2020년까지 국도 총연장을 6,000km까지 확대), 2019년까지 5년간 자바섬 외 지역 철도개발에 총 111.1조 루피아를 투자(조코위 대통령은 2,168km의 '트랜스 수마트라 철도(51.7억 불 규모)'를 철도 개발의 첫 번째 사업으로 지목하고 지방정부에 토지수용 시간 단축을 요구), 물류비 절감을 위한 24개 국가 항만개발 계획 및 4개 항만에 대한 2015년 착수,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양 강국 건설을 위해 5년 동안 574억 불(699조 루피아)를 투자해 군도를 바닷길로 연결하는 해양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추진

(2)우리기업 진출현황

- 한국 건설기업은 1970년 1월 삼환기업의 최초 진출 이후, 2015년 말까지 123개사가 482건 155억 불의 공사를 수주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옴

  ※ 인도네시아 수주 누계: 123개사, 482건, 155억 불(우리나라 13위 시장, 아시아 6위)

  ※ 공종별 : 플랜트(84건, 85억 불), 토목(108건, 34억 불), 건축(93건, 29억 불), 용역(184건, 6.5억 불), 전기통신(13건, 1.8억 불)

<對인도네시아 한국기업 수주 규모 및 추이>

구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건수	262	13	10	13	20	26	37	34	35	32	482
금액(백만불)	6,811	782	185	230	320	2,249	1,710	759	999	1,504	15,512

※ 2015년12월30일 기준

1990년대 초반까지는 단순 도급공사에 치중하여 수주 실적이 미비하였으나, 1995년부터 발전, 시멘트, 석유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플랜트 및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및 개발형 공사에 주력하여 수주 실적 증가

1997년 IMF 여파로 건설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었으나 2000년 중반 부터 가스설비, 발전소 등의 플랜트 및 토건 프로젝트 수주가 재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건설 발주 감소이후 2011년~2012년 민자 투자 정부 보증과 포스코의 제철소 진출 등 특수로 20억 불 수준 수주 시현

포스코 특수를 제외시 대규모 수주사업은 없으나, 2010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최근 3년간 30-50%성장세 시현)로 아시아권 6위 시장을 형성

특히 2015년도는 총 32건/1,504백만 불을 수주했으며, 2014년 35건/999백만 불 대비 50.6% 증가로 아시아권 수주 강세를 견인

2015년 전세계 수주는 46,144백만 불로 2014년 66,010백만 불 대비 30.1% 감소한 반면, 아시아는 2015년 19,720백만 불로 2014년 15,915백만 불 대비 23.9% 증가

현재 42개사 78건 총 49억 불 규모의 공사(잔액 약 33억 불)가 진행 중

7) 인도네시아 손해보험 시장의 이해

- 인도네시아 주요 경제 지표

  2015년 기준 한국의GDP는 13,930억 달러이며, 인도네시아의 GDP는 8,729억 달러로 각각 세계 11위, 16위를 기록하고 있음. 이에 반해 한국의 인당 GDP는 27,513달러로 세계 29위, 인도네시아의 GDP는 3,347달러로 세계 119위를 기록하여 인도네시아의 경우 G20의 경제대국이나 인당 GDP는 현격히 낮은 수준임. 한편,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의 인당 GDP는 14,127달러로 세계 52위 수준이며 인도네시아의 모든 경제활동이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Unit: USD)	2015	2014
GDP per capita Indonesia	3,347	3,361
GDP per capita Jakarta	14,127	14,044

- 인도네시아 차량별 등록 대수

  인도네시아의 차량은 연간 7% 내외로 증가하고 있으며, 오토바이의 경우 10% 내외로 증가함. 아직까지 자동차 1대당 인구수가 12명 이상으로 한국 2.7명에 비교하였을 때 차량 등록 대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임.

Year	Passenger Cars	Bus	Truck	Total Car	% YoY	Motocycles	% YoY
2010	8,891,041	2,250,109	4,687,789	15,828,939		61,078,188	
2011	9,548,866	2,254,406	4,958,738	16,762,010	5.9%	68,839,341	12.7%
2012	10,432,259	2,273,821	5,286,061	17,992,141	7.3%	76,381,183	11.0%
2013	11,484,514	2,286,309	5,615,494	19,386,317	7.7%	84,732,652	10.9%
2014	12,599,138	2,398,846	6,235,136	21,233,120	9.5%	92,976,240	9.7%

순위	10	11	12	13	14	15	16
국가	멕시코	스페인	캐나다	인도	폴란드	인도네시아	한국
자동차 등록대수 (백만대)	30	28	21	21	20	19	18
인구수 (백만명)	110	45	34	1198	38	230	49
자동차 1대당 인구수	3.6	1.6	1.6	57.7	1.9	12.2	2.7

- 인도네시아 보험 시장 규모

  인도네시아는 1인당 보험금액은 56달러 수준이며, 1.7%의 낮은 보험 침투도로 향후 경제 성장에 따라 보험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수입보험료		보험밀도	2014
생명보험	손해보험	1 인당	
98 억 달러	44 억 달러	56 달러	1.7%

2015 Insurance Market Worldwide

순위	국가	수입보험료 (백만$)	시장점유율	보험침투도[1]	보험밀도($)[2]
1	미국	1,316,271	28.9%	7.3%	4,095.8
2	일본	449,707	9.9%	10.8%	3,553.8
3	영국	386,500	8.5%	3.6%	280.7
4	중국	320,176	7.0%	10.0%	4,358.5
5	프랑스	230,545	5.1%	9.3%	3,392.0
6	독일	213,263	4.7%	6.2%	2,562.5
7	이탈리아	165,037	3.6%	8.7%	2,580.5
8	한국	153,620	3.4%	11.4%	3,034.2
9	캐나다	114,968	2.5%	7.4%	3,209.1
10	네덜란드	95,979	2.1%	19.0%	4,094.1

출처 : Swiss Re, Sigma No 3/2016
1. GDP대비 수입보험료 비율
2. 국민 1인당 보험료

- 인도네시아 보험회사 구조

2015년 기준 인도네시아 보험회사 수는 총 141개로 재보험사를 포함한 숫자임.

구분	국영	민영	합계
생명보험사	1	54	55
손해보험사	3	83	86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위 5개사	38.2%	36.7%	35.1%	34.5%	34.2%
상위 10개사	55.2%	52.9%	52.8%	52.6%	52.0%

(출처 : OJK)

인도네시아의 보험시장은 한국의 10% 규모이나 보험회사 수는 한국의 5배 이상임. 이는 무선별, 선인수 영업을 초래하여 보험회사가 적정한 위험 분산을 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보험회사의 건전성 악화를 낳게됨..

한국은 상위 10개의 손해보험회사가 시장의 74%를 장악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손해보험 시장은 상위 10개사가 52%를 점유하고 있어 중소 보험사가 난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대폭의 구조조정이 예상됨.

8) 인도네시아 통신 시장의 이해

Ⅰ. 가입자가 느끼는 인도네시아 통신 환경

1 통신 절단율이 너무 높음

- 협대역 주파수 할당 **(3G:5M, 4G:5M 씩)**
- 기지국을 **Capacity** 보다는 **Coverage** 위주로 설치
- 통신사들의 중계기 설치 없음
- 체감 절단율 **20%(한국 SKT 0.5%)**

2 높은 건물에서 통화 품질 저하

- **Tower**회사의 광분산장치 및 실내 안테나의 설치
- 건물주의 횡포로 서비스 포기 사례 많음
- **Tenant**의 불만 제로

3 고객불만이 없음

- 고객불만 전화 시 비용 **Charge**
- **Multi SIM** 문화로 인해 **No Service** 에 관대
- **No Service**에 대한 고객 보상체계 없음

4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림

- 사유지에 공공재 진입 금지 **(사실상 독점)**
- **Backbone** 및 **Last mile**의 부족 **(위성, M/W)**
- **international G/W Traffic**이 **70%** 이상

5 Local Contents의 부족

- **international G/W Traffic**이 **70%** 이상
- 음악, 뉴스를 제외하고는 **FB,** 유튜브, 등 외국계
- 여전히 강한 지상파 방송 **(Pay TV**시장 규모 작음**)**

6 경쟁이 없는 시장

- 정부정책이 사업자 유효경쟁보다는 **License** 남발로 당장의 수익에 치중
- 소비자 편익의 측면에서 품질경쟁에 대한 **Needs** 없음
- 국영기업이 독점하는 시장에서 외국인 사업자의 소극적인 투자로 경쟁 **Zero** 인 시장
- 대부분 중국 **Vendor**에 기지국 운용기술을 맡김

II. 인도네시아 ICT 현황

1. Mobile Operator

Company		1H2014 Revenue (Rp billion)	1H2014 Net Profit/Loss (Rp billion)	1H2014 Subscribers (in million)	ARPU (In Rp)	1H2014 Number of BTS		Market Share
						2G	3G/ EVDO	
GSM/ UMTS/ 3G	Telkomsel	31,331	8,812	137.4	37,000	45,349	34,211	42.6%
	Indosat	11,613	226	54.9	26,200	20,585	6,363	17%
	XL Axiata	11,595	(483)	62.9	24,000	32,635	15,179	19.5%
	Hutchison 3 Indonesia	-	-	38	-	18,707	14,512	11.8%
CDMA/ EVDO	Telkom Flexi	-	-	4.1	17,000	4,592	1,123	1.3%
	Bakrie Telecom	928	(317)	12.5	13,000	3,010	2,105	3.8%
	Smartfren Telecom	1,432	(652)	12	19,800	-	6,000	3.7%
	Sampoerna Telekom	-	-	-	-	-	-	-
Satellite	Pasifik Satelit Nusantara	-	-	-	-	-	-	-

II. 인도네시아 ICT 현황

2. Fixed Broadband

Top 5 Players	Number of subscribers (in thousand)	Market Share
Telkom Speedy	3,216	85.3%
First Media	350	9.3%
CBN	75	2%
Biznet	65	1.7%
Innovate	20	0.5%

II. 인도네시아 ICT 현황

3. Pay TV Player

Top 5 Players	Number of subscribers (in thousand)	Market Share
MNC Sky Vision (Indovision)	2,500	62.8%
TransVision (previously TelkomVision)	600	15%
First Media	350	8.8%
Orange TV	300	7.5%
Aora TV	230	5.8%

II. 인도네시아 ICT 현황

4. Tower company

Company	1H2014 Revenue (Rp billion)	1H2014 Net Profit/Loss (Rp billion)	Number of sites
Sarana Menara Nusantara (Protelindo)	1,910	581.7	10,799
Tower Bersama Infrastructure Group	1,581	697	10,159
Solusi Tunas Pratama (STP Tower)	245	42.8	2,798
Inti Bangun Sejahtera (IBS Tower)	234.5	126.1	2,104

5. Handset distributor

Company	Brand name	1H2014 Net Sales (Rp billion)	1H2014 Net Profit/Loss (Rp billion)	Number of stores/ outlets nationwide
Trikomsel Oke	Oke Shop & Global Teleshop	5,789	216	1,200
Erajaya Swasembada	Erafone	6,734	113.6	469
Tiphone Mobile Indonesia	Telesindo Shop	6,313	153	600

4 사회/문화/교육

1) 국민성

(1)공통 특성

- 열대성 기후와 풍요로운 식생활 자원, 광활한 영토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온순하고 여유로운 성격
- 대체적으로 인도네시아인은 대국 기질을 갖고 있으며 가부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말하여 결과가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
- 일반적인 이슬람 사회의 경우 여성의 사회 참여가 극히 제한되어 있으나, 인도네시아는 비교적 개방된 이슬람 사회로서 여성의 사회 참여가 보장되어 있고 경제발전에 따라 사회진출이 더욱 활발
- 고성으로 질책 당함을 싫어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을 이상스럽게 생각

(2)지역별 특성

- 대통령을 비롯하여 사회 지도층 인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자바인은 전체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를 존중하면서 감정 없는 표현과 사려 깊은 판단을 하는 것이 특징, 자바인은 서로 다투는 일이 드물며, 모든 문제를 서로 협의하고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
- 수마트라인은 다소 직선적이고 거칠어 보이나 사귈수록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특징. 군부, 법조계, 종교계, 학계에 주로 진출한 인사가 많으며, 한국인과 비슷하게 매운 음식을 선호
- 파푸아인은 사회지도층이 적으며 경제적 기반도 취약하나 최근 강인한 체력을 인정받아 체육선수로 선발

2) 문화 및 관습

(1)문화

- 인도네시아는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4위(2억5,518만)의 인구 대국이며, 350여 종족이 사용하는 언어도 600여 종에 이르고 종족별로 상이한 문화와 전통 유지

  이와 같은 여건에서 인도네시아 표준어인 바하사 인도네시아(Bahasa Indonesia)는 인도네시아 국민의 사회통합 유지에 크게 기여, 바하사 인도네시아는 2~13세기경에 이르기까지 남부 수마트라 지역의 팔렘방을 중심으로 번성한 스리위자야 왕국의 상인들 간에 사용되었던 말레이어의 원조격인 믈라유어(Melayu)가 유래
- 인도네시아 국민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는 이슬람교가 사회 생활문화의 저변을 이루고 있는데, 최근 무슬림과 기독교 간의 종교적 충돌 사례가 늘고 있어 사회적 우려 유발
- 인도네시아 회화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어, 약 5천 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간과 동물의 형상을 그린 동굴벽화가 남부 술라웨시, 파푸아 등에서 발견되었으며, AD 100년경의 천연색 그림이 남부 수마트라 등의 대규모 고분의 내벽에서 발견

  이 밖에 밀랍을 이용한 염색인 '바틱(Batik)'은 일종의 회화로서 현재는 중부 자바의 족자 지역과 발리 지역이 유명

  또한, 발리풍 회화는 꽉 찬 공간을 활용하여 힌두 설화 및 전설 등을 소재로 시•공•구도를 초월한 기법으로 그려 그 독자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1930년대부터는 서구의 양화기법의 영향으로 색•구도 개념을 도입
- 와양(Wayang)'이라는 꼭두각시 인형극은 힌두 신화 및 설화 등 전래 민속 내용을 소재로 하여 '달랑(Dalang)'이라는 변사가 가죽, 나무, 바틱(Batik)으로 만든 꼭두각시 인형을 무대 뒤에

서 조종하며 표현하는 전통 연극으로, 주로 자바에서 인기가 높으며 근대 이후로 부터는 현 사회의 상황을 은유적으로 풍자하는 인형극을 공연

(2)사회 관습
- 악수나 물건을 주고받을 때 오른손 또는 두 손을 사용하며, 왼손은 불경한 것으로 여김
- 지방의 경우 노인 및 어린이들은 통상 낮(오후 2시-4시)에 휴식을 취함
- 땀을 흘리는 일이 많으므로 기상시와 취침 전에 반드시 목욕을 함
- 머리는 영혼을 담은 곳이라고 생각하여 어린아이라도 머리를 만지지 않음
- 술에 취한 사람을 매우 싫어함

(3)근무시간
- 관 공 서 : 08:00 ~ 16:00 (월-금)
- 민간기업 : 08:00 ~ 17:00 (월-금)

3) 언론

(1)언론 정책
- 1998년 5월 수하르토 대통령의 하야 이후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급격히 신장되었고 와히드 대통령 재직 시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공보부가 폐지
- 인도네시아 언론위원회와 인도네시아 기자협회가 자율적으로 언론제도를 관장, 방송•통신의 설립 허가 등은 정보통신부에서, 소관외신의 경우 외교부 내 공보국에서 상주 및 취재 허가 업무 담당
- 광활한 영토와 방송•통신 인프라 부족으로 전국지나 전국방송이 제한

<주요 중앙일간지>

일간지명	발행부수	비고
꼼빠스 (Kompas)	53만	조간
꼬란 신도 (Koran Sindo)	33만	조간
메디아 인도네시아 (Media Indonesia)	27만	조간
수아라 머르데까 (Suara Merdeka)	20만	조간
레뿌블리까 (Republika)	15만	조간
수아라 뻠바루안 (Suara Pembaruan)	15만	석간
꼬란 뗌뽀 (Koran Tempo)	15만	조간
브리따 부아누 (Berita Buanu)	15만	조간
삐끼란 라얏 (Pikiran Rakyat)	15만	조간
비스니스 인도네시아 (Bisnis Indonesia)	8만	조간, 경제지
꼰딴 (Kontan)	7.5만	조간(Kompas 자매지)
더 자까르따 포스트 (The Jakarta Post)	5만	조간, 영자지

(2)언론 현황

- 일간지 : 전국적으로 중앙일간지 약 70여종, 지방일간지 약 280종 등 총 350여 종의 일간지가 발행 중
- 주간•격주간, 월간지 : 전국적으로 총 약 570종 발간
  - 뗌뽀(TEMPO): 인도네시아어판 18만부, 영어판 5만부 발행
  - 가뜨라(GATRA): 인도네시아어판 10만 5천부 발행
- 텔레비전(PAL 방식): 1공영 다민영 TV방송 체제
  - 공영방송 TVRI: 1962년 설립된 유일한 공영방송으로 인도네시아 내 가장 많은 지역에서 시청이 가능
  - 민영방송 (11개의 민영 채널과 54개의 지역방송 채널)
- RCTI: 최대 민영방송 • SCTV: 종합편성 채널
- MNCTV: 교육 프로그램 위주의 편성에서 리얼리티
- ANTV: 음악 및 쇼 프로그램 채널 • Indosiar: 연예 및 쇼 프로그램 채널
- MetroTV: 뉴스 전문채널 • TransTV:종합편성 채널
- TVone: 종합편성 채널 • Trans7:종합편성 채널
- GlobalTV: 종합편성 채널 및 음악방송(M-TV) 특화
- O Channel: 연예 및 쇼프로그램, SCTV 계열사

  ※ 기타 JakTV(자카르타 일원 시청), Bali TV(발리 일원 시청), Pacific TV(마나도 일원 시청) 등 다수의 지역 채널 존재
- 라디오
  - 4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국영 RRI 방송국 외에 지자체 운영 또는 민영 방송국이 약 3,000여 개 존재하나 전국 방송 라디오 채널은 소수, 다수의 인터넷 라디오 채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 주요 전국 방송 라디오 채널
- RRI Pro I: 91.2 MHz • RRI Pro II: 105.0 MHz
- RRI Pro III: 88.8 MHz • RRI Pro IV: 92.8 MHz
- Radio Elshinta: 90.0 MHz

- 통신사

  국영 Antara 통신: AFP, 로이터, UPI 등 세계 각국 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한국의 연합뉴스 및 북한의 중앙통신과 동시에 뉴스공급 계약 체결
- 기 타 Detik.com, vivanews 등 인터넷 포털과 주요 언론의 인터넷판 증가추세

4) 교육

(1)개요

- 인도네시아는 6-3-3-4년제의 학제 실시
- 1994년부터 9학년(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제 채택,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학비면에서 크게 차이가 있음

(2)교육제도

학교	기간	졸업제도	학점	비고
초등학교(SD)	6년	-	-	일반, 종교학교
중등학교(SMP)	3년	-	-	일반, 종교학교
고등학교(SMA)	3년	-	-	일반, 종교학교, 실업고교
전문대/대학 (Institut/ Universitas)	전문대(Diploma)	학점/졸업시험	114-120	1년, 2년 또는 3년 과정 별도 운영
	대학학부과정 8~10학기(S1)	논문/졸업시험	144-160	학사
	대학석사과정 4 학기(S2)	논문	46	석사
	대학박사과정(S3)	논문	-	박사

(3)고등교육 현황

- 2015년 기준 고등교육부 소관 고등교육기관은 3,216개, 4년제 대학(university)은 530개
- 2014년 하반기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생은 563만 명
- 2013년 기준 중등교육기관에서 대학•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50%이며, 2015년 83개 공립대학 입학시험에 85만 2천 명이 응시

2

운영사례

이 내용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투자기업 관리책임자들의 실무상 운영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 및 관련 규정은
기업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해석될 수 있는 바
공식적인 자료가 아닌 하나의 참고자료로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주식회사 운영 사례 및 법인설립

(1) 회사의 기관 구성 및 권한

인도네시아 회사의 주요 기관으로는 이사회, 이사, 감사위원회 및 주주총회가 있음. 인도네시아 회사법은 소규모 폐쇄회사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정관상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주주총회를 통해 이루어짐.

A. 이사회(Board of Directors)의 권한 및 의무

(a) 이사의 자격요건 및 이사회의 구성

이사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연인으로서 임명시점으로부터 과거 5년간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① 파산선고를 받지 않았을 것

② 회사를 파산선고에 이르게 한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과실이 없었을 것

③ 국가의 또는 경제 관련 범죄 선고를 받지 않았을 것

이사의 국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인도네시아 국민 또는 외국인 모두 이사가 될 수 있음.

이사회는 1인 또는 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됨.

이사회 구성원은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각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으므로 이사회가 2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경우 각 이사회 구성원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결정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함. 주주총회에서 이에 대하여 결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할 수 있음.

(b)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법령에 따라 회사를 경영할 총체적인 권한이 있다. 또한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회사를 위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 모든 행위에 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음.

다만, 인도네시아 회사법은 이사회에 회사 경영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① 중간배당에 관한 결정은 이사회 결의 전에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② 1회 또는 연속적인 거래로 회사 순자산의 50% 이상의 자산을 양도 또는 타인에게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 이외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③ 회사의 정관으로 보다 다양한 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할 수 있음.

(c) 이사회의 의무 및 책임

회사법에 명시된 이사회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① 주주총회에서 감자의 결의가 있는 경우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결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지할 의무(제44조 제2항)

② 주주명부 기록 및 관리 의무(제50조 제1항)

③ 이사, 감사위원 또는 그 가족들이 보유한 회사의(또는 다른 회사의) 주식 보유상황에 대한 특별주주명부 기록 및 관리 의무(제50조 제2항)

④ 주식 양도에 관한 사항 기록 및 관리 의무(제56조 제3항)

⑤ 연간 예산안을 포함한 work plan(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의무(제63조, 제64조)

⑥ 정기주주총회에 annual reports (연간정기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제66조 제1항)

⑦ 정기주주총회 및 특별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소집의무(제79조 제1항)

⑧ 주주명부,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연간정기보고서를 기록 및 관리하고 주주가 서면으로 열람을 요청한 경우 열람을 허용할 의무(제100조 제3항)
⑨ 합병이 있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이사가 합병계획서를 작성할 의무(제123조)
⑩ 기타 등등

B. 대표이사(Representative Director 또는 President Director)의 권한

인도네시아 회사법에서는 대표이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아울러 회사법,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2명 이상의 이사가 선임될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이사 각자가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음. 다만 회사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지정할 수 있는 바, 통상적으로 정관에서 대표이사를 둘 것과 그 대표이사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 정하고 있음. 이 경우 대표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장을 겸할 수 있음.

C. 감사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

(a)자격요건

감사위원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연인으로서 임명시점으로부터 과거 5년간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① 파산선고를 받지 않았을 것
② 회사를 파산선고에 이르게 한 이사 또는 감사로서 과실이 없었을 것
③ 국가의 또는 경제 관련 범죄 선고를 받지 않았을 것

감사위원에 대한 국적 제한은 없으므로 인도네시아 국민 또는 외국인 모두 감사위원이 될 수 있다(회사법 제110조).

감사위원회는 1인 또는 그 이상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감사위원의 선임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회사 최초 설립 시에 선임된 감사위원은 회사 설립 증서에 기재되어야 함.
② 감사위원의 선임, 교체,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며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의결권 있는 주식 수의 1/2 이상 및 출석 주주의 1/2 이상의 동의로 결정할 수 있음.
③ 감사위원의 임기는 법률에 정함이 없으므로 정관에서 이를 정할 수 있으며 연임도 가능함(참고로, 통상 3~5년 정도로 임기를 설정하고 있음).
④ 정관에서 감사위원의 선임, 교체, 해임에 관한 절차를 정해야 하며 정관에 기재된 절차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절차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주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주주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

감사위원회를 2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은 이사와 달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회사법 제108조 제4항). 복수의 감사위원이 있을 경우 정관 또는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대표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나(회사법 제120조), 대표 감사위원도 단독으로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음.

또한 정관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바, 외부감사인의 자격은 주주, 이사회, 감사위원회와 관련이 없는 자이어야 하며, 주주총회 결의로 임명할 수 있음.

(b)감사위원회의 권한

인도네시아 회사법상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독하고 자문할 수 있음. 또한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를 일정 기간 중단시킬 수 있는 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감사위원회는 서면으로 중단 사유를 해당 이사에게 통지하고 최대 30일 동안 해당 이사의 권한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음.

② 권한행사가 정지된 기간 동안 해당 이사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및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회사를 대표할 모든 권한이 정지됨.

③ 회사는 직무 정지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해당 이사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함.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해당 이사에 대한 직무 정지 결의에 대해 승인할 경우, 즉 주주총회에서 해당 이사에 대한 해임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이사는 해임됨.

④ 반대로 기일 내에 주주총회가 소집되지 않거나 해임결의가 부결된 경우 직무 정지는 무효가 되며, 해당 이사의 권한은 회복됨.

위 규정은 특히 회사에 선임된 이사가 1인인 경우에 의미가 있음.

아울러,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재무 기타 경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음.

① 이사회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승인할 권한이 있음(회사법 제64조 제2항).

② 이사회 가 작성한 연간정기보고서를 검토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회사법 제66조).

③ 이사회의 중간배당 배분 결의에 대하여 승인할 권한이 있음.

④ 정관에 기재된 경우 이사회의 특정 결의사항에 대하여 승인할 권한이 부여됨 (회사법 제117조). 예를 들어, 표준정관에서는 회사의 자금 차입이나 대출 실행, 신규 사업의 진출 등에 관하여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c) 감사위원회의 의무

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음.

① 감사위원회 의사록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② 감사위원 또는 그 가족이 보유한 회사(또는 다른 회사) 지분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함

③ 회계연도에 실행한 감독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함.

④ 회사에 대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면책사유 해당하는 경우 예외).

⑤ 감사위원회의 이사회에 대한 감독의무의 부주의 또는 태만으로 회사가 파산한 경우 파산재단으로 변제가 불충분하다면 그 차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감사위원회가 감독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한 경우 예외).

⑥ 중간배당을 실시하였으나,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하였고, 주주들이 중간배당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와 별도로 감사위원회에도 책임이 있음(회사법 제72조 제6항).

D. 주주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법률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의 권한 사항으로 정한 경우 외에는 모든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있음.

1. 회사의 기관의 의사 절차 및 결의요건

A.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요건

회사법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안건 별 정족수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정족수	설 명
의결권 있는 주주의 1/2 이상 출석, 출석주주의 1/2 이상 동의로 결의	1. 이사의 임명, 변경, 해임 2. 감사 임명, 변경, 해임 (외부감사인 포함) 3. 일반 주주의 변경(주식 양도 포함) 4. 연간 사업보고서 및 재무제표 승인 5. 회사의 이익금 사용 결정 6. 수권자본 범위 내에서 납입자본금 증자 결의 7. 이사의 보수 결정 8. 법률 또는 정관 등으로 특별정족수를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일반 보통 결의사항
의결권 있는 주주의 2/3 이상 출석, 출석 주주의 2/3 이상 동의로 결의	1.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의 변경 (1) 상호, 소재지 (2) 회사의 사업목적 (3) 회사의 존속기간 (4) 수권자본금의 액수
	(5) 총 발행주식 수, 주식의 종류, 각 종류 주식의 수, 각 주식이 표창하는 권리, 주식의 액면가액 (6) 주주총회 개최 장소 및 개최 절차에 관한 변경 (7) 이사 또는 감사 직위의 명칭 또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원 숫자 (8) 이사 또는 감사의 임명 교체, 해임 절차 (9) 주주총회 소집의 장소 및 절차에 관한 결정 (10) 이익금 사용 및 배당에 관한 절차 (11) 이외 기타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 2. 출자전환 의결 3.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의결권 있는 주주의 3/4 이상 출석, 출석주주의 3/4이상 동의로 결의	1. 회사의 합병 2. 회사의 인수 3. 회사의 결합 4. 회사의 분할 5. 파산 신청 6. 회사의 해산 및 청산 7. 회사의 존속기간 연장 8. 총 순자산의 50%를 초과하는 자산 양도 내지 담보설정

의결권 있는 주주 전원출석, 전원동의로 결의	1. 설립 후 최초 주총에서 발기인의 설립 전 회사를 위한 행위에 대한 승인 2. 주총 안건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 주주총회에서 새 안건을 추가하고 추가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할 경우 3. 회사의 본점 소재지 또는 주 사업장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의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4. 서면결의

B.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인도네시아는 비교적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법률에 정한 사항 이외에는 광범위하게 정관에 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바, 예컨대 가부동수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이사 또는 대표감사에게 casting vote를 행사할 권한을 부여하거나 안건에 따라 가중 의결 정족수를 정할 수 있음.

2. 회사 설립 및 운영

(1)외국인 투자법인(PT PMA) 설립 관련 주요 이슈

a. 투자제한리스트 극복방안

b. 로컬주주

(2)절차

1) 회사 상호조회 및 등록

2) BKPM에 투자허가 신청(Izin Prinsip; 규정상 3 영업일 소요)

BKPM에 소정의 투자허가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등록・신청하여야 하며, 이 때 신청인 및 투자자가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함.

주요 제출서류	▶ 한국투자자 준비서류(영문번역문, 이에 대한 공증 및 인증 완료) • 정관 및 정관 개정본 • 법인등기부등본 ▶ 인도네시아 합작 파트너 준비서류(공동투자형태인 경우) • 합작파트너의 정관 및 개정본 • 세무등록번호(NPWP)

통상적으로 투자허가(Izin Prinsip)에는 계획한 사업의 투자와 사업개시를 완료하여야 하는 시한(일반적으로 3년 정도)이 명시되므로,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한까지 투자를 완료하여야 하며, 만일 위 시한까지 투자실적이 없을 경우 투자조정청장은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징계조치를 취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허가(Izin Prinsip)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음.

3) 회사설립정관(Execution of Deed of Establishment) 작성

- 주주 구성
- 주식 종류

4) 소재지 증명(letter of Domicile; 3~5 영업일 정도 소요)
5) 세무등록번호 발급(NPWP; 1주일 정도 소요)
6) 부가세 과세업자 등록(5~10일)
7) 자본금납입 증명서
   관행적으로 법무인권부는 설립정관에 대한 승인 전에 자본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각 주주로부터 자본금을 납입하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설립승인서를 발급해주기도 함. 하지만, 이러한 관행이 지속적으로 유지될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자금계획을 세우고 미리 자금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음.
8) 법무인권부의 회사설립 승인
   규정상 1개월 소요되나, 실무상 2~3일에 발급될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 위 4~6번에 우선하여 법무인권부의 회사설립 승인서가 먼저 발급될 수도 있음.
9) 사업자 등록증(TDP; 통상 2주 소요)
   무역부(Ministry of Trade)(실제로는 시군의 상무국)에서 사업자등록증(Tanda Daftar Perusahaan; TDP)을 발급받음.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에 관계 없이 무역부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단계까지는 공통적이나 그 이후 단계부터는 업종에 따라 등록 절차와 제출 서류가 다름.
10) 관보 게재(규정상 2주 소요)
11) 사업 본허가서(Business License)
   원칙적으로 영업개시 전에 사업 본허가(Business License; Ijin Usaha/IU)를 받아야 함.

(조언)

2016년 들어 투자조정청이 3시간 내 법인설립 프로세스를 모두 완료할 수 있는 3시간 fast track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실제 이 제도를 통해 법인 설립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음.

2. 고정사업장 과세 위험

(배경)

2013년 초 인니 국세청과 관세청의 정보공유 협약으로 인해 국세청에서 통관자료 입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과세가 용이해지고, 국세청에서 5년이상 경과한 rep office(대표 사무소)는 모두 사무소를 법인 전환한 싱가폴 case를 benchmarking함에 따라 일본계, 한국계 대표사무소들에 대해 고정사업장 과세 사례가 발생

다수의 일본 및 한국 rep office들이 고정사업장 관련 tax letter를 수령하였으며 trading rep office가 아닌 단순 시장조사, promotion만을 수행하는 pure rep office라는 답변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음

(관련 규정)

조항	내용
한-인니 조세협약 5조 (고정사업장) 발췌	1. 고정사업장의 범위 (1) 경영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채취장소. (2) 6개월을 초과하는 건축장소, 건설공사, 조립 및 설비공사 (3) 3개월을 초과하는 자문용역 2. 예외조항 (1) 보관 또는 전시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2) 보관 또는 전시만을 목적으로 한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3) 타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재화나 상품의 보유 (4)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5)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활동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Income tax, Article 2.1(a)	고정사업장을 가진 경우 corporate taxpayer 로 간주받음.
Income tax, Article 2.5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면, 법적 실체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
Minister of Finance Decision Number: 634/ KMK.04	1) Trade rep office의 경우 총 거래금액의 1%를 이익으로 간주 (deemed profit) 2) 간주 이익의 44%(*)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함(총 0.44%).

(*) 재무부령 제정 당시 법인세율 30%였으나 현재 법인세율은 25%이며, 한-인니 조세조약에 따라 Branch Profit Tax 세율은 20%에서 10%로 경감이 가능함.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 다음의 세율로 과세가 가능함.

- 간주이익의 40% = income tax 25% + branch profit tax (1-25%) X 20%
- 간주이익의 32.5%= income tax 25% + branch profit tax (1-25%) X 10%

(**) 자세한 사항은 2015년 대사관 발행 '인도네시아 세법 해설' 125쪽 참고

(사례)
과세금액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아 유형자산 거래의 경우 관세청 통관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과세 기준연도에 대해서도 각 세무공무원마다 일관성이 없음. 국세청에서 조세협약에 명시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실제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대표사무소의 경우에도 과세 가능성이 있으며, 총거래금액을 바탕으로 세액이 산정되므로 거액의 세금 징수 및 가산세 위험이 큼.

* 2015년분 총 수입금액 100억원에 대해 고정사업장 과세될 경우: 본세 (4,400만원, 간주이익의 44% 가정) + 가산세48% (2,112만원) = 6,512만원

원칙적으로 고정사업장은 한국법인의 지점이므로 인니에서 부담한 법인세는 한국본사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인니 과세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과세의 경우 한국본사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지연이자 등 가산세 또한 공제가 불가능함

(조언)

따라서 대표사무소가 설립 후 기간이 오래 경과되며, 인니 내 법인이 없을수록 고정사업장 과세위험이 증가하므로 해당 대표사무소의 법인전환과 관련한 장단점을 검토하고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사무소가 과세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세협약에서 규정한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활동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문서를 구비해 두는 것이 필요함.

- Business license에 활동범위가 한정되어 있음.
- 인니 판매 거래는 최종소비자와 본사와 직접 이루어짐.
- 계약서 및 모든 관련서류에 rep office가 관여하지 아니함.
- 시장조사 등 수행결과, 본사 보고자료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성을 본사 세무팀을 통해 한국에서 사전 확인하는 것이 필요

3. Transfer Pricing (이전가격) 세무조사 사례

(배경)
최근 인니 세무당국은 이전가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한국기업의 이전가격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 2008년이후 지속적인 이전가격 스터디 및 해외 사례 참조, 본격적인 TP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방법이 발전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DGT 차원에서 직접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사례가 증가

(관련규정)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주요 규정 제개정 현황은 다음과 같음. 2016년 12월 현재 인도네시아 이전가격 규정이 OECD가이드라인 및 BEPS를 반영하여 개정될 예정으로 2017년 초에 발표될 예정임.

일 시	규 정	주 요 내 용
2008.9.23	Income Tax Law	• 18조에서 특정 거래에 대하여 과세당국에서 거래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을 규정
2008.1.1	PP 80/2007	• 이전가격의 문서화에 대한 규정
2009.7.2	PER-39/PJ/2009	• 법인세 신고서에 이전가격에 대한 서식 추가
2010.3.31	S-153/PJ04/2010	• 이전가격 조사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 제정
2010.9.6 2010.10.3 2010.12.31	PER43/PJ/2010 PER48/PJ/2010 PER69/PJ/2010	• 이전가격에 대한 최초의 규정 (1995년 OECD 가이드라인 참고)
2011년.11.11	PER-32/PJ/2011년	• 이전가격 규정 개정 (2010년 OECD 가이드라인 참고)
2013.5.30 2013.10.24	PER-22/PJ/2013 SE-50/PJ/2013	• 이전가격 세부 규정 및 세무조사 가이드라인
2016.12.30	PMK-213/2016	• BEPS도입 관련 이전가격 문서화에 대한 신규규정

이전가격과 관련된 주요 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이전가격		주요 사항
과세당국		인도네시아 국세청 (ITO)
공시의무		특수관계자 거래 내용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
특관자 정의		25% 이상 직간접적으로 지분 관계, 의사결정기구 또는 기술 지배, 가족 관계 등
제척기간		회계기간 종료시점으로 부터 5년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의무	유 (특관자 거래가 있으며, PMK-213의 세 가지 요건 중 한가지라도 충족하는 경우 작성하여야 함)
	작성기한	유 (세무회계연도 종류 후 4개월 이내 작성 및 신고)
	작성언어	인도네시아어
과태료(이전가격보고서 미작성)		미작성에 따른 과태료 없으나, 세무조사시 요청자료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 및 불리한 포지션이 될 수 있음.
사전승인제도(APA) 상호합의절차(MAP)		2014년 및 2015년 관련 규정 개정으로 2016년 현재 다수의 APA 및 MAP 진행 중 (인도네시아 세법해설 141 ~ 146쪽 참고)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발표한 이전가격 조사 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음

① 생산, 경영관리 경영권이 특수관계기업의 통제를 받는 기업
② 특수관계기업과의 업무거래액이 비교적 큰 기업
③ 장기 결손 기업 (연속 2년이상 결손)
④ 장기간 소규모 이익 혹은 결손, 하지만 지속적으로 경영규모를 확대하는 기업
⑤ 이익이 급격히 변동되는 기업
⑥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특수관계기업과 업무거래를 하는 기업
⑦ 동종 업종과 비하여 이익수준이 낮은 기업
⑧ 그룹사 내부와 비교하여 이익율이 낮은 기업
⑨ 특수관계기업에 각종 불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기업
⑩ 법정 감면세 기간을 이용하거나 혹은 감면세기간 종료후 이익이 급격히 하락하여 조세 회피 혐의가 있는 기업

(사례)
임가공무역
전자부품을 조립/가공하는 기업 A, 가공방식은 내료가공으로서 한국 본사로부터 원재료를 무상으로 수입하여 조립가공 후 수출하고, 그 대가로 가공비를 수령함. 회사의 매출액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당기순이익이 개선되지 아니하며, 특히 별다른 외부적인 충격요인이 없는데도 매출총이익률이 매년 급격하게 변동하는 현상을 바탕으로 한국본사가 자의적으로 가공단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과거 5년치 이전가격을 조정하여 법인세 과세

수출가격
스포츠용품을 생산하는 기업 B, 제품의 개발과 판매활동은 전부 본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당사는 인니 내에서 원재료를 구입하여 주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한 후 전량 해외 본사로 수출. 관할 세무기관은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이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판매가격으로 수출함에 따른 것으로 보고 과거 4개년에 대하여 매출가격을 조정하고 당기순손실을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조정하여 법인세 과세

경영자문수수료
의류를 생산하는 기업 C, 본사는 중국 및 인니에 3개의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회사에 경영지원과 기술자문의 대가로 각 자회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용역수수료를 청구, 인니 자회사는 매 분기별로 본사의 청구서에 따라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고 비용으로 계상
용역제공 계약은 체결되어 있으나, 경영과 기술자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비용 산정 근거가 부족하고 회사는 계속적인 영업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해외본사로부터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경영지원과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보고 경영자문수수료 전액을 손금불산입

(조언)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질문서 등 자료 제출 요구 시 신중한 회신 및 대규모 특관자 거래가 있는 경우 적절한 이전가격 문서화가 필요함. 특히, 인도네시아 이전가격 규정이 대부분 OECD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경험에 비추어 향후 제정될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관련 OECD 규정 등을 참고하여 본사 차원에서 이전가격에 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함.

4. 이전가격 – 인도네시아 BEPS 도입 관련 신규 규정(PMK-213)

재무부는 이전가격문서화(TPD)에 대한 신규 규정 No.213/PMK.03/2016 (PMK-213)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2016년 12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즉, 동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그 이후에 종료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이 된다.

PMK-213은 현행 이전가격 규정을 철회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존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PMK-213의 규정이 우선한다.

신규 규정하에서 TPD는 아래의 세 가지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a.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b.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
c. 국가별 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 CbCR)

전반적으로 위에 언급한 인도네시아의 의무사항은 OECD BEPS Action 13과 일맥상통한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의 경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다국적 기업이 인도네시아의 이전가격 요구를 지원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Master File and Local File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를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a. 전년 기준 매출액이 500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b. 전년 기준 특수관계자 거래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 물동 거래가 200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2) 서비스, 이자, 무형재화 또는 기타 특수관계자 거래가 각 50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경우;또는
c. 인도네시아보다 세율이 낮은 국가나 사법관할 구역에 위치한 당사자와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위에 언급한 (c)항의 관련하여, 동 조건은 금액기준이 없으므로 납세의무자는 특수관계자 거래의 상대방의 사법관할구역의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인도네시아 보다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가 거래가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의 작성을 초래할수 있다.

또한, 매출액은 서비스 또는 주요 사업 활동에서 창출되는 매출로써 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공제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 추가로, 납세의무자가 전년도 영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출액과 특수관계자 거래 금액은 12개월로 환산하여 상기의 기준 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

Master file required contents 통합기업보고서의 구성

통합기업보고서는 사업그룹에 대하여 아래의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직구조, 지배구조, 전체 법인의 국가 또는 관할구역
2. 비지니스 활동의 유형
3. 소유한 무형자산
4. 자금조달활동 및 재무현황
5.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 및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한 세무정보

이러한 카테고리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위하여, PMK-213은 또한 OECD BEPS Action 13의 Master file의 요구사항과 유사한 자세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첨부문서로 포함하고 있다.

Local file required contents 개별기업보고서의 구성

개별기업보고서는 인도네시아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아래의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비지니스 활동의 설명 및 내용
2. 특수관계자 거래와 비특수관계자 거래의 정보
3. 정상가격 범위의 적용
4. 재무정보
5. 비재무현황 또는 이익 수준 또는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통합기업보고서의 요구사항과 동일하게, PMK-213은 또한 OECD BEPS Action 13의 Local file의 요구사항과 유사한 자세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첨부문서로 포함하고 있다. PMK-213은 개별기업보고서가 사업 특성별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구분(segmented)손익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데이타의 비교가능성과 품질(Quality)이 회사의 이전가격 포지션을 지원 가능한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구분손익 또는 법인전체 접근방법이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Timeline for the preparation of the Master and Local files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기한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는 반드시 세무회계기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작성이 되어야 한다. 통합 및 개별기업보고서는 동 시점까지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동 보고서의 작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반드시 서명된 statement letter가 보고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이는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의 실무적인 처리와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이는 OECD BEPS Action 13에서 요구하는 통합 및 개별기업보고서는 소득세(법인세)신고시에 같이 제출되어야 한다는 규정과 일부 상이하다. PMK-213은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신고서 제출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준비에 대한 연장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추가로, 인도네시아의 보고서의 제출기한은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를 활용하고자 계획한 다국적 기업에 일부 시간적인 제약을 부여하게 된다. 인도네시아의 납세의무자는 4개월의 제출기한을 위하여 통합기업보고서에 대한 접근과 개별기업보고서의 준용을 위하여 반드시 본사 또는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추가로, '요약'(실질적으로 신고)은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동 '요약'은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의 실질적인 체크리스트가 되며, 동 보고서의 작성이 완료된 날짜(사용이 가능한 시점)를 신고하여야 한다.

Circumstances requiring submission of the Master and Local files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요구

DGT는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를 하기의 상황 하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a. 법규 준수 의무 감독, 일반 세무조사, 조세 범죄의 사전 증거에 대한 세무조사, 조사(investigation)
b. 이의신청 절차, 행정 패널티의 감면 또는 취소, 적합하지 아니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감면, 취소 및 개정

납세의무자는 현행 세법에서 규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a)의 상황하에서 납세의무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DGT는 납세의무자의 보고서가 규정에서 지정한 TPD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납세의무자가 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DGT는 납세의무자가 TPD의 작성과 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Country-by-Country Reporting 국가별보고서

OECD BEPS Action 13와 같이, 하기의 조건을 충족하는 그룹회사의 자회사는 반드시 국가별보고서를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인도네시아 납세자가 비지니스 그룹내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자회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 인도네시아 납세자가 인도네시아 회계기준 또는 증권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가 있는 경우
- 인도네시아 납세자가 당해 연도 연결 기준 매출액이 11조 루피아를 초과하는 경우

통합 및 개별기업보고서와 동일하게, 매출액은 서비스 또는 주요 사업 활동에서 창출되는 매출로써 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공제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

그룹회사의 자회사는 모회사의 거주국가 또는 사법관할구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회사는 국가별보고서를 반드시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a. 국가별 보고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b. 인도네시아와 정보교환협정(EoI)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c. 인도네시아와 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되어 있지만, 모회사의 거주국가나 사법관할구역으로 부터 국가별보고서를 공유받을 수 없는 경우

Country-by-Country Report required contents 국가별보고서의 구성

국가별보고서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가/사법관할구역
2. 회사명 및 세무등록번호
3. 비지니스 활동의 유형
4. 매출액 -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의 매출을 구분표시(납세자의 거주국의 배당으로 간주되는 지급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5. 세전손익

6. 소득세 납부액(현금기준) – 원천징수, 자가징수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포함
7. 소득세 납부금액 – 재무제표 기준
8. 자본금
9. 누적이익잉여금
10. 정규직원의 수 (independent contractor 포함)
11. 유형자산 (현금 및 현금등가물과 화폐성자산 제외)

기본 국가별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CbC-1 보고서 : 위에서 언급한 (4) – (11)의 국가별 정보를 포함
- CbC-2 보고서 : 국가별 비지니스 활동의 유형을 포함
- CbC-3 보고서 : CbC-2 보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타 정보를 포함

Timeline 제출기한

국가별보고서는 회계기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작성이 완료되어야 한다.

2016년 회계연도 이후부터, 국가별보고서는 익년도의 소득세 신고서 제출시에 첨부서류로 제출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의 납세의무자는 2016년 국가별 보고서를 2017년 소득세 신고서 제출시에 DGT에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Data, language and general requirements 데이타, 작성언어 및 일반 요구사항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는 특수관계자 거래가 발생한 시점의 이용가능한 정보와 데이타를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반면에 국가별보고서 당해연도 연말까지 이용가능한 정보와 데이타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어야 한다. 특히, 동 요구사항은 납세의무자가 준수하기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예를 들면, 이용가능한 데이타의 경우 많은 시간차가 존재함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구조건의 자세한 이해를 위하여 DGT와 추가적인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정상가격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기존 인도네시아의 TPD실무와는 달리, 현행 규정에서 공식적인 TPD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외국어 및 외국통화의 사용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TPD를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으나, 이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번역이 되어야 한다.

또한, PMK-213은 납세의무자가 TPD의 작성의무가 없더라도, 동 납세의무자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반드시 정상가격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TPD의 작성 및 준비는 납세의무자에게 단순한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다. 이는 납세의무자의 이전가격 포지션의 포괄적인 지원이며 세무조사 대응을 위한 전략이 된다.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의 보다 자세한 정보와 작성 형식에 대해서는 MoF website를 참고하길 바란다.

5. 고정자산 재평가 사례

(배경)
2015년 10월 조코위 대통령의 제5차 경제정책 패키지의 일환으로 고정자산재평가에 대한 한시적 소득세 감세 규정이 발표됨. 한편, 2015년 9월 최초로 과소자본세제(DER)가 도입(사례 42 참조)되어 회계상 부채비율이 자본 금액 대비400%를 초과하는 경우, 400%를 초과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채와 관련된 금융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됨에 따라 재무건전성 확보 및 과소자본세제 규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정자산 재평가를 검토

(관련규정)
신규 규정은 201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므로 이후 기존 PMK-79가 적용됨

항목	기존(PMK-79)	신규(PMK-191/PMK-233)
고정자산의 범위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유형 고정자산으로 모든 유형자산을 재평가하여야 함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유형 고정자산으로 일부만 재평가 가능
납세의무자	루피아로 장부를 기장하는 법인으로 과거에 고정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5년이상 경과한 법인	루피아 장부 기장 법인 외에 i) USD 장부 기장 법인 ii) 과거 고정자산 재평가 후 5년 미만 경과한 경우도 가능 iii) 장부를 기장하는 개인 납세자도 가능
최종 분리과세	재평가차익의 10%를 최종분리과세 (단, 신고 시 KJPP; 감정평가법인의 보고서 제출 필요)	• 2015년 12월말까지 평가 및 신고 시 : 3% • 2016년 6월말까지 평가 및 신고 시 : 4% • 2016년 12월말까지 평가 및 신고 시 : 6% (단, 사전에 KJPP 보고서가 없이 신고 후 추후 평가보고서 제출 가능하며, 평가보고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세율 적용)
매각 제한 기간*	• Category 1 및 2 : 신규 내용연수 종료 시까지 • Category 3 및 4 : 10년 • 토지 및 건물 : 10년	• Category 1 및 2 : 3년 • Category 3 및 4 : 5년 • 토지 및 건물 : 1년
재무제표 반영	인도네시아 회계기준 PSAK에 따라 회계상 재평가도 수행하여야 함	회계상 재평가는 수행하지 않아도 되며 주석 공시만 의무

* 제한기간 중 매각 시 법인은 25%, 개인은 30%로 재평가 차익에 대하여 최종 분리과세를 부담하며, 기존 납부세액은 공제 가능

(사례)
기업 A는 신규 공장 투자로 인하여 차입금이 증가함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고정자산 재평가를 수행함. 규정에 따르면 자산재평가 전 재무제표(사본)을 구비하여 지방청(KANWIL)에 신고 및 접수하고, 관할세무서(KPP)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 관할세무서(KPP)와 상의 후 지방청(KANWIL)에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i) 고정자산 재평가 신청서 및 고정자산 목록(원본)
ii) 재평가차익에 대한 세금납부서(사본)
iii) 고정자산 재평가 평가서(원본)
iv) 감정평가법인 사업자등록증(사본)
v) 자산재평가 전 재무제표(사본)

고정자산 재평가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의 감정평가 후 평가서 수령까지 약 30일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고정자산 재평가 승인은 관련자료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역 확인 및 확인일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승인 및 통지까지는 약 40일 가량 소요되었음.

(조언)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부채비율은 회계상 부채 및 자본을 바탕으로 산정되므로, 이자비용 손금불산입은 회계상 재평가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대응이 가능함. 또한 회계상 재평가만 수행하는 경우, 재평가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가 필요없음.

세무상 재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재평가 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가 필요하지만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재평가차익에 대한 세율(최대 10%)보다 향후 감가상각비를 통한 법인세 절감 효과(25%)가 더 크므로 회계상 재평가만 수행할 지 세무상 재평가도 함께 수행할 지에 대하여 장단점 분석이 필요함

한편, 경우에 따라 최근년도 법인세 신고내역, 고정자산 명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며, 재평가 결과 평가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6. 부채 자본 비율 (Debt to Equity Ratio, DER) 규정 및 사례

1. 주요 내용
   - 자본 금액의 4배를 초과하는 부채로부터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손금부인
   - 부채 : 자본 비율 = 4:1 (DER)

2. 적용대상기업
   - 적용 대상 : 인니에 설립되거나 거주 중인 법인 납세의무자, 다만 아래는 제외
     - 은행/금융기관/보험 및 재보험사
     - PSC, CoW, Mining Cooperation Agreements과 DER 조항을 포함한 관련 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Oil and Gas Mining, General Mining 및 기타 Mining 회사 (단, 계약서/협약서의DER 규정이 만료된 경우에는 적용)
     - 100% 최종분리과세(Final Tax)를 적용 받는 납세의무자
     - 인프라 산업을 영위하는 납세의무자

3. DER 계산시 적용되는 부채
   - 장기부채 (Long-term debt), 단기부채 (Short-term debt)
   - 이자를 동반하는 매입 채무 (Trade payable which bear interest)
     * 동 규정은 특수관계자 부채와 제3자 부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4. DER 계산시 적용되는 자본
   - 인도네시아 회계기준상 자본으로 분류되는 모든 항목
   -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무이자부 부채

5. 금융 비용
   - 대출이자, 대출금 관련 프리미엄, 디스카운트 금액
   - 차입금 주선비용, 리스관련 금융비용, 보증수수료
   - 상기 항목과 관련된 외화환산금액

(*) 참고
외화환산 금액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은 부채의 원본금액이 아닌 금융비용과 관련한 외화환산 금액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금융비용과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채의 원본 금액과 관련한 외화환산금액은 전기에 처리한 손금/손금불산입 여부 및 추후 발표될 해석을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DER 계산 방법
   - 부채/자본 금액은 과세기간 동안의 월별 평균 부채/자본 잔액 사용
   - 완전 자본잠식과 같이 자본금액이 '0' 이거나 그 이하인 경우 모든 금융 비용이 손금부인
   - Final tax를 적용 받는 업종과 적용 받지 않는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회사 전체의 DER을 우선 계산하여, 금융 비용을 Final Tax 적용 받는 소득과 적용 받지 않는 소득에 안분
   - 특정차입금이 비과세 소득의 발생에만 관여되는 경우 DER 계산시 특정차입금과 관련 금융 비용을 사전에 제외하고 DER을 계산
   - 동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어, 1월부터 월말 잔액을 사용하여 DER을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시 자진신고에 포함하여야 함.

7. 해외 사채(Offshore private loan) 신고 의무
- 해외 사채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반드시 해외 사채 금액을 국세청에 신고
- 동 신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금융 비용은 전액 손금부인

(하기의 예제는 No169/PMK.010/2015에서 발췌하여 번역.)
예제 1.
PT KAFA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음.
(1) 부채 적수 계산
(2) 자본 적수 계산
(3) PT KAFA의 부채:자본 비율 계산
(4) KAFA Korea로 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전가격 이슈

	2016년 12월 31일		2015년 12월 31일
부채		(*) 발생이자비용	
매입채무			
- 이자부	810,000	10,765	800,000
- 무이자부	700,000	-	600,000
관계사 차입금			
- KAFA KOREA(무이자부)	50,000	-	50,000
단기차입금			
- PT ABC (관계사)	725,000	96,000	800,000
장기차입금			
- PT JKT	660,000	20,660	900,000
- WWW Co.Ltd	1,970,000	100,575	2,500,000
자본			
자본금	150,000		150,000
자본잉여금	110,000		110,000
이익잉여금	475,000		425,000

(1) 부채 적수 계산

월	월말잔액				
	PT ABC	PT JKT	WWW Co.Ltd	이자부매입채무	합계
1월	800,000	900,000	2,500,000	800,000	5,000,000
2월	750,000	900,000	2,500,000	790,000	4,940,000
3월	750,000	900,000	2,500,000	750,000	4,900,000
4월	750,000	900,000	2,500,000	820,000	4,970,000
5월	740,000	900,000	2,500,000	850,000	4,990,000
6월	740,000	900,000	2,500,000	720,000	4,860,000
7월	740,000	660,000	1,970,000	800,000	4,170,000
8월	740,000	660,000	1,970,000	810,000	4,180,000
9월	725,000	660,000	1,970,000	845,000	4,200,000
10월	725,000	660,000	1,970,000	860,000	4,215,000
11월	725,000	660,000	1,970,000	805,000	4,160,000
12월	725,000	660,000	1,970,000	810,000	4,165,000
평균	742,500	780,000	2,235,000	805,000	4,562,500

(2) 자본 적수 계산

월	월말잔액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관계사 무이자부 부채	합계
1월	150,000	110,000	425,000	50,000	735,000
2월	150,000	110,000	425,000	50,000	735,000
3월	150,000	110,000	575,000	50,000	885,000
4월	150,000	110,000	300,000	50,000	610,000
5월	150,000	110,000	300,000	70,000	630,000
6월	150,000	110,000	600,000	70,000	930,000
7월	150,000	110,000	400,000	70,000	730,000
8월	150,000	110,000	400,000	30,000	690,000
9월	150,000	110,000	700,000	30,000	990,000
10월	150,000	110,000	400,000	30,000	690,000
11월	150,000	110,000	400,000	50,000	710,000
12월	150,000	110,000	475,000	50,000	785,000
평균	**150,000**	**110,000**	**450,000**	**50,000**	**760,000**

(3) 부채 : 자본 비율 계산

a. 부채의 평균 월말 잔액 : 4,562,500 (from (1))

b. 자본의 평균 월말 잔액 : 760,000 (from (2))

c. 부채자본비율(a/b) : 4,562,500 / 760,000 = 6

DER규정상 최대 부채비율은 400%까지 인정하므로, PT AAA는 세법상 부채과다법인으로 손금으로 인정가능한 이자비용은 아래와 같음.

부채의 종류	평균 잔액	이자비용	손금가능 이자비용
PT ABC	742,500	96,000	64,000
PT JKT	780,000	20,660	13,773
WWW Co.Ltd	2,235,000	100,575	67,050
이자부 매입채무	805,000	10,765	7,177
합계	4,562,500	228,000	152,000

(4) PT ABC로 부터 차입금이 특수관계자 차입금이기 때문에 실제 이자율이 Arm's length를 상회하는 경우, 과세당국이 이를 직권으로 조정이 가능하며, 조정된 이자비용으로 DER을 산정함. 조정된 이자비용과 실제 이자비용의 차액은 Taxable income으로 과세가능함.

예제 2.

예제 1번과 동일한 가정하에, 회사의 총매출이 20,000,000 이며, 이 중에 부동산 임대매출과 관련한 최종분리과세를 적용받는 매출이 5,000,000 인 경우, 손금적용 가능한 이자비용의 금액은?

DER규정상 일반 법인세 적용받는 사업과 최종분리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합산하여 DER을 계산한 후, 매출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야 함. 따라서, 손금가능 이자비용의 금액은 하기와 같음.

(15,000,000/20,000,000) X 152,000,000 = 114,000,000

예제 3.

PT ABC로 부터 차입한 금액이 PT ZZZ의 주식을 60% 구입하는데 사용이 된 경우에는 향후 PT ZZZ로 부터 받는 배당금이 비과세수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련 비용인 PT ABC 차입금의 이자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이 경우에는 PT ABC의 차입금을 적수 계산 및 이자비용 계산시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함.

7. 미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6조(PPh 26)에 따라 해외 비거주자에게 이자, 배당, 로열티, 용역대가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는 인니 거주자는 지급총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해야 함. 한편, 한국과 인니 간에 체결된 조세협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감된 세율이 적용가능

(1) PPh 26관련 원천징수 의무 발생 시점
다음 중 가장 빠른 날
① 소득을 지급한 때, ② 소득 지급을 준비한 때, ③ 소득 지급 기일이 도래한 때

(2) 조세협약상 원천징수 세율
① 배당소득 : 10%
② 이자소득 : 10%
③ 로열티 : 15%
* 한-인니 조세협약 세부내용은 부록참조

(사례)
인니 법인 A사는 한국 본사와 차입약정을 체결하고 차입금을 수령하였으나 재무 상황의 악화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실제 이자 지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미지급이자에 대하여 장부 기장도 수행하지 않음. 이에 대하여 인니 세무서는 i) 실제 소득의 지급이 없고, ii) 소득의 지급을 준비하지 않았으나(미지급 이자에 대하여 장부 기장하지 않음), iii) 차입 약정 상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므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원천징수세를 납부하도록 세무조사를 통보함.

(조언)
실제 이자의 지급이 없더라도 원천징수 의무 발생 시점이 도래하면 원천징수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함. 참고로 상기 사례와 같이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지급뿐만 아니라 국내 거주자에 대한 이자지급 시점에도 원천징수 의무는 동일하게 발생함.

한편, 조세협약에 따라 감면된 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 시 DGT 1 Form을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DGT 1 Form에 한국 세무서의 서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일부 세무서에서 인도네시아 공문서에 서명을 거부하며, 국세청에서 발급한 거주자증명서 (Certificate of Domicile)를 발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조세조약 적용을 위하여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DGT 1 Form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8. 배당 관련 규정

(배경)
한국 회사는 인니에 A 자회사를 설립하고 영업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사업 초기 적자로 인하여 누적 결손 상태임. 영업활동 시작 후 몇 년 만에 흑자 전환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이익이 예상되어 당기에 배당을 검토하고 있음.

(관련규정)
1. 한국의 상법 상 배당가능이익
배당가능이익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에서 배당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음의 각 항목을 공제하여 계산함.

1) 납입자본금(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2) 법정준비금(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
3)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또한,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의 1/10 이상을 자본금의 1/2에 달할때까지 적립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여 배당액을 산정하여야 함.

2. 인도네시아 회사법(Indonesian Company Law No. 40/2007)의 배당에 대한 규정

<Article 70>
(1)회사는 매년 당기순이익을 재원으로 준비금을 적립해야 함 [The Company shall be obliged to allocate a certain amount from the net earnings of each accounting year for reserve fund]
(2)상기 준비금 적립 의무는 회사가 (+)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됨[The obligation to allocate the reserve fund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apply if the Company possesses a positive profit balance]
(3)상기 적립 의무는 자본금의 20 %가 될 때까지임 [The allocation of net earnings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performed up to an amount of 20% (twenty percent) from issued and paid-up capital]

<Article 71>
(1)제70조의 준비금 적립을 포함한 당기순이익의 사용은 주주총회의 결정사항임 [The use of net earnings including the amount of allocation for reserve fund as referred to in Article 70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the GMS]
(2)제70조의 준비금 적립액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주주총회에서 다르게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배당가능 [All net earnings after deduction for reserve fund as referred to in Article 70 paragraph (1) shall be distributed to the shareholders as dividend, except otherwise provided in the GMS]
(3)상기 배당금의 지급은 회사가 (+) 이익잉여금인 경우에만 가능함 [The dividend as referred to in paragraph (2) can only be distributed if the Company possesses a positive profit balance]

(조언)
상기 사례처럼 누적 결손상태는 배당이 불가능함.

한편, 인니 회사법에 따라 배당금 및 준비금은 모두 주주총회 결정사항임. 한국은 배당 시 준비금이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배당액의 최소 1/10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니 회사법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이에 따라 준비금이 자본금의 20%에 달하지 않더라도 주주총희의 결정에 따라 일정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면 배당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음.

회계법인을 통하여 사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무적으로 준비금이 자본금의 20%에 달하지 않더라도 배당하는 경우가 많음. 일부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준비금의 적립액을 "0"으로 결정하고 당기순이익 전액을 배당하는 사례도 있으나 소액이라도 준비금을 적립하고 나머지를 배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최소 준비금 적립 전이라도 배당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각각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 사례별 배당가능이익의 계산

① 준비금 적립 전 배당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비고
자본금 (Paid-up capital)	100	100	100	100	
이익준비금 (Reserve fund)	-	-	20	20	최소 준비금 = 20 (자본금의 20%)
이익잉여금 (Retained earning)	(-) 20	20	10	50	
자본 계(Capital)	80	120	130	170	
당기순이익 (Net income)	30	10	20	30	

(사례1)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누적 결손이므로 배당 불가
(사례2) 이익잉여금이 (+)이며 당기순이익 10이 발생하였으므로 당기순이익의 일정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배당가능
(사례3) 당기순이익(20)보다 이익잉여금(10)이 작으므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배당
(사례4) 준비금이 자본금의 20%이상이므로 당기순이익 전액 배당 가능

② 준비금 적립 후 배당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비고
자본금 (Paid-up capital)		100	100	100	100	
이익준비금 (Reserve fund)	전기이월	-	-	20	-	최소적립금 = 20 (자본금의 20%)
	당기적립	-	-	-	20	
이익잉여금 (Retained earning)		(-) 20	20	10	30	적립금 차감후

자본 계(Capital)	80	120	130	150	
당기순이익 (Net income)	30	10	10	50	

(사례1) 당기순이익 발생했으나 누적결손이므로 배당불가능
(사례2) 이익잉여금이 20이므로 최소 준비금 20을 적립하면 배당가능이익이 없음
(사례3) 당기순이익 전액 배당 가능
(사례4) 당기순이익 중 20을 적립하고 나머지 30을 배당가능

9. 해외 특수관계 지급보증수수료 이중과세 위험

(배경)
한국 본사는 사업확장을 위하여 인도네시아 진출을 결정하고 종속회사 A를 설립하였으며, 투자비용 일부는 본사로부터, 나머지는 금융기관에서 조달하였음. 이 때, 한국 본사의 신용도가 종속회사인 A법인보다 높으므로 이자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한국 본사는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종속회사인 A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수령함.

(관련규정)
인니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F목을 보면, 지급보증수수료는 이자비용의 일종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한국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열거된 이자의 종류에는 지급보증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한편, 한-인니 조세협약 제11조(이자) 제5항에 따르면 '이자'는 금전의 대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그 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이자와 유사한 소득으로 정의함.

(사례)
인니 A법인은 한국 본사에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하며, 인니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를 이자의 일종으로 보고 PPh 26을 적용하여 10%(한-인니 조세협약에 따라 20%에서 10%로 경감)를 원천징수함. 한국 본사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려 하였으나, 한국 세무서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는 이자가 아니고 한-인니 조세협약 제22조의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소득에 해당되므로 한국에서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통지를 받음.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납부한 세금은 착오 납부한 사항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됨.

(조언)
인도네시아와 한국 소득세법이 각각 '이자'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한-인니 조세협약에서 '이자'를 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기 사례의 경우 어느 나라의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논란이 있음. 지급보증수수료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한국 본사가 종속회사에 직접 차입금을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전가격 이슈가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요함.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이중과세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합의(MAP)절차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음.

10. 비거주자의 비상장 주식 매각 시 주식발행회사의 과세 위험

(배경)
인니 비상장법인 A사는 한국 본사, 한국 관계사 및 인니 주주사가 각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한국 본사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의 목적으로 한국 관계사가 보유하고 있던 인니 비상장법인 A사의 지분을 전액 매입함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6조(PPh 26)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인도네시아 비상장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매수인이 거래대금의 5%를 원천징수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인니 조세협약 제13조 양도소득
  부동산 및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동산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의 양도는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함. 즉, 비상장주식의 매각은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

(사례)
1) 한국 거주자간의 주식 거래는 인니에 과세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한국에서만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그러나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매각은 원천징수 대상이며, 만약 매수인 또한 비거주자여서 원천징수가 어려운 경우,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니 세무당국은 인도네시아 법인 A사에 매각대금의 5%를 원천징수세로 과세함.

2) 인니 비상장법인 A사는 한-인니 조세협약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각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매도인인 한국 관계사의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Domicile)를 DGT 1 Form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인니 세무서는 거주자증명서 발급일이 주식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임을 문제삼아 절차상의 흠결을 원인으로 원천징수세를 과세함.

(조언)
비거주자가 인도네시아 비상장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매각대금의 5%가 과세되며, 매도인 및 매수인이 모두 비거주자여서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므로 주의가 필요.
한편, 일부 세무서에서 거주자증명서 발급일이 거래계약일보다 이후인 경우 절차 상의 흠결을 원인으로 원천징수세 면제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절차 상의 흠결을 보완하거나 조세불복청구 등을 통하여 승소하는 사례가 있음. 이러한 경우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계약일 이전으로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고 적법하게 DGT 1 Form을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함.

11. 인도네시아 법인의 외부감사 여부

(배경)
A회사는 주주가 한국인으로 구성된 외국투자기업이며, 1998년 설립되었으나, 그 동안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고 매년 과세당국에 재무제표만 신고하고 있었음. 그 후 2003년부터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계속적으로 받아 거액의 추징세액이 발생하고 있음.

(관련 규정)
1) 인도네시아 회사법 Article 68 : 자산 또는 매출이 500억 루피 이상인 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2) 산업통상부(Minister of Trade and Industry) Decree No. 121/MPP/Kep/2/2002, Law No.40, 2007) : 자산금액이 250억 루피아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투자한 주식회사(PMA)의 경우 감사보고서를 회계기간이 종료한 후 6개월 이내에 관계당국에 제출하여야 함.

(사례)
A회사는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내부 재무제표만 제출함에 따라 과세당국으로 부터 요주의 업체로 지정되어 계속적인 감사를 받아오게 되어 거액의 추징세액을 납부할 예정임.

(조언)
외국투자법인(PMA)임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를 받지 않을 경우 penalty는 3백만 루피아로 적은 수준이며, 현재까지 이 벌금을 부과받은 회사는 없음. 그러나 향후 Corporate Registry Number (Tanda Daftar Perusahaan) 을 갱신할 경우 관계당국이 갱신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갱신이 지연될 수 있음(article 27 of Decree of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o.596/MPP/Kep/9/2004 dated September 23, 2004 about the Corporate Registry Number).

또한, 최근 증가하는 세무조사 및 공격적인 과세환경을 고려할 경우,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는 신뢰성이 낮아 세무조사시 감사받은 경우보다 많은 Tax Correction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거래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영업이익, 특수관계자 거래 등에 대해서도 의문제기를 받을 수 있음.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외부감사를 받아 세무신고시에 감사받은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를 법인세 세무신고서(Corporate Income Tax Return)와 같이 제출하는게 회사의 세무Risk를 낮출 수 있음.

12. 기능통화 변경사례

(배경)
2010년 인도네시아 재무회계기준 PSAK 10의 개정으로 인하여, 인도네시아 내 PSAK을 적용하는 모든 회사는 2012년 1월 1일부터 기능통화(Functional Currency)에 대하여 적정한 평가를 통하여 회사의 선택 및 적용하여야 함. 기능통화는 세무상 장부를 기장하는 통화(이하 '세무통화')와 다를 수 있으며, 한국계 기업인 경우 대부분 IDR 또는 USD를 기능통화로 회계장부를 기장하고 있음. PSAK 10의 개정 및 적용에 따라, 2012년 회계연도부터 기능통화와 세무통화가 서로 상이한 회사가 다수 발생하게 되며, 현재 세무통화 변경 규정이 기능통화 규정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로 1년 내지 2년의 회계통화(기능통화) 및 세무통화가 다른 경우가 발생함.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주로 외국기업에 대하여 기능통화와 관련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2012년 부터 외부감사인으로 부터 기능통화 변경을 요구 받는 기업이 다수 있으며, 2013년에는 IDR환율의 급격한 변동성 때문에 기업이 스스로 회사의 기능통화를 USD로 변경한 사례도 적지 않음.

인도네시아 세법상, 회사는 세무상 장부를 IDR 또는 USD로 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별도의 신고가 없는 경우 IDR을 기초 세무통화로 판단함. 회사가 USD로 세무통화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적용하고자 하는 회계연도의 3개월 이전(12월 결산 법인이 경우 9월 말)에 Ministry of Finance(실무적으로는 담당세무서장)로 부터 승인을 받아야 적용가능 함.
본사례는 2013년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재무성과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기능통화를 평가하여 적합한 기능통화로 USD로 변경을 한 사례이며, 2014년에 세무통화의 변경을 신청하여 2015년부터 세무통화도 USD로 변경한 사례임.

(사례)
- 기능통화의 선택
PSAK 10에 회사의 기능통화는 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가장 잘 나타내는 통화로 주로 회사의 매출, 주요매입(원재료, 부재료 등), 영업비용(판매관리비, 인건비 등), 차입금, 유형자산의 취득, 자본금 순으로 Hierarchy를 두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Companyhyof Finance)하여 회사가 주로 사용하는 통화를 선택하여야 함. 기능통화의 선택 주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경제적 실질에 따라 변경은 용이하나 실무적으로는 한번 기능통화를 변경할 경우 최소 3년에서 5년은 변경하지 않고 있음.

- 세무통화의 변경
세무통화의 변경 신청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담당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1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함(1개월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함). 세무통화 변경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 시작 3개월이전에 승인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
(*) 변경신청시 첨부서류
  - 세무통화 변경 신청서
  - 변경이 적합한지 사유를 설명하는 내용의 문서(Companyhyof Finance)상의-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는 감사보고서

- 기능통화와 세무통화의 불일치시 세무신고
실무적으로 세무통화의 변경은 기능통화의 선택변경 이후에 이루어지며, 기능통화의 변경이후 일반적으로 1년에서 2년의 통화의 불일치가 발생함. 기능통화가 USD이고 세무통화가 IDR인경우, 회사는 감사보고서의 통화는 USD이며 세무신고는 IDR로 신고서식을 작성/제출하여야 함. 일반적으로 세무신고시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같이 제출하는 기업이 많으며, 기능통화와 세무통화가 상이한 경우, 세무서에서 감사보고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감사인에게 별첨정보(supplementary information, IDR기준의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에 첨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 정보가 포함된 감사보고서의 경우 실무적으로 세무서에서 인정해 주고 있음.

13. 외환평가손익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 이의신청 사례

(배경)
A회사는 '06회계연도말 결산 시점에 對 달러 루피아 가치가 전년도말에 비해 크게 하락하여 대규모 환평가손실을 입음. 따라서, 인도네시아 회계규정 및 세법에 의해 회계장부에 적법하게 외환평가손실을 계상하였고, 세무조정시 손금에 전액 산입하였음.
그 이후 관할 세무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시 세무 조사원은 외환평가손실 계산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기납부세액 환급을 거절하였음. 이에 회사는 법에 정한 절차에 의거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세부 절차가 진행 중이나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관련규정)
- No.196/PMK.03/2007 (6조 2항)
A. 미국 달러화로 거래를 하였을 경우, 회계장부의 기장은 실제 거래 내역대로 계상되어야 함
B.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인니 국내 및 해외에서 발생한 거래는 아래에 언급한 해당 거래일의 적정한 환율을 사용하여 환산, 계상되어야 함.
(1) 거래 장부에 환율이 정해져 있으면, 해당 환율이 상기의 적정한 환율로 봄
(2) 거래 장부에 환율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일반 회계 원칙에 의거하여 인니 중앙은행이 고시한 기준환율(Middle Rate) 을 적용하여야 함

- Indonesian Repulic Law No.17 (4조 1항)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미실현 수익에 대해 납세의무자는 납세 의무가 있음
L. 외화환산평가익

- Circullar Letter of Tax Director General No.SE-03/PJ.31/1997 (1조)
Law No.7 Year 1983 concerning Income Tax (개정 소득세법 No.10 year 1994) 상의
외화 환산 관련하여
a. 4조 1항의 납세 대상의 외화환산이익은 적법한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회계장부에 계상되어야 함. 따라서, 개인 납세의무자 뿐만 아니라 법인도 외환평가익을 매년의 과세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b. 6조 1항의 외환환산손실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로서 아래에 적시한 방법을 토대로 적법한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기장하여야 하며, 과세 대상이익에서 공제함
(1) 고정환율 : 다만, 해당 환산평가손익은 동일하게 실현되어져야 함
(2) 회계연도말 인니 중앙은행 고시 기준환율. 회계 장부 계상은 회계연도말 인니 중앙은행 고시 기준환율 또는 회계연도말 적용 실제 환율로 계상되어야 함 또한, 상거래 상에 있어 납세 의무자가 일반적인 회계기준에 의거 회계 장부에 적정하게 계상하고 있다면, 외환환산손실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사례)

1. 회사는 통상적으로 월 회계마감을 실시하며, 월 회계결산시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인니 중앙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루피아화로 환산한 후 회계장부에 계상하여 왔음.

   (당월 환평가손익 증감액 = (당월말 환율-전월말 환율) × 외화자산 및 부채 금액)
2. 세무 담당자는 회사가 제공한 기초 거래자료를 토대로 해외채권에 대한 환평가손익을 재계산하여 그 차액에 해당되는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함.

   1,924,334,100(추징 대상금액) = 4,022,041,798(회사 계산금액) – 2,097,707,698(세무서 재 계산금액)
3. 회사는 회계 분개 상 차이에서 오는 금액 차이일 뿐이며, 다른 외화자산을 동시에 고려하여 회사 전체의 외환평가손익을 계산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옴을 입증하는 자료를 만들어 이의 신청을 하였음.

(조언)

1. 인니 세무당국의 보수적이고도 비합리적인 결론을 기 경험했던 이전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금번 경우도 정상적으로 환급받기는 어려울 전망임.
2. 본 케이스를 통해 얻은 교훈으로는 상거래에 대한 회계장부 기장 시 반드시 원칙대로 하여야 하며, 계정과목 사용 또한 정확하게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함. (계정 과목별, 환산 대상 항목별로 개별 환산 후 미실현 부분은 환산 손익으로, 실현시에는 환산 손익을 고려하여 환차손을 계산하여야 함).
3. No.24/PMK.011/2012 이 제정됨에 따라 영어와 미 달러화(USD)로 장부 기장이 가능하게 되었음(다른 언어와 화폐는 대상이 아님). 따라서, 영어와 미 달러화로 장부 기장을 수행하는 경우에 외화 관련 손익이 장부에서 제거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하기 기능통화 변경사례 참조)

14. 판매제품(수출)에 대한 CLAIM 처리사항

(배경)
A사가 B회사에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A회사에서 B회사에 CLAIM을 청구(6개월분)함.
C사에서 B회사에 인터넷 E-MAIL로 CLAIM내용과 청구금액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B회사에서 CLAIM내용을 검토하였는 바, Claim청구내용과 청구금액에 대하여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Claim 인정금액을 다시 A회사에 E-MAIL로 보냄. 이에 A회사는 다시 합의사항을 B회사에 회신을 보냈으며 최종적으로 B회사는 품질관리팀의 기안을 거쳐 사장 결재를 득한후 A회사에 회신하게 됨.

(사례)
C사는 CLAIM 대금 관련하여 B사에 판매대금 송금시 공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으나, 이는 회계팀과의 협의없이 이루어 졌음. 회계팀에서는 판매대금 입금 정리 과정에서 CLAIM대금이 공제된 것을 알았으며, 사후적으로 내부 CLAIM 기안을 통해 CLAIM 비용으로 회계처리 함.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CLAIM 비용금액에 대한 판매계약서상의 CLAIM 하자내용사항, 처리예정사항과 CLAIM INVOICE 증빙, A회사의 거주자증명서을 요청받았으나, CLAIM 내용 합의된 E-MAIL 내용과 기안 내용(인니어)만 있었는 바, CLAIM 비용을 손금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약 법인세 $8.5만).

(조언)
CLAIM비용 처리시 CLAIM내용은 물론이고 INVOICE를 꼭 발행 받도록 하며, 거래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세무서발행 거주자 증명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어야 세무상 손금 인정에 문제가 없음.

참고로 상기 사례의 경우 Claim 대금을 매출채권(AR)에서 차감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할 경우에는 비거주자 관련 원천징수를 규정한 PPH26(비거주자에 대한 국외 지급 소득에 대해서 20%의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 관련 이슈도 제기될 수 있음. 본 사례는 'AR 차감' 또는 '별도지급' 등 처리방법과는 별도로 관련 Claim 비용의 세무상 손금인정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것임.
일반적으로, Sales Promotion과 Rebate의 경우 제품 판매 후 추후에 rebate 또는 promotion 진행시 해당 시점에 매출 차감으로 회계처리 처리하고 있음. 동 부분과 관련해서 기존까지는 최근에 국세청에서 동 매출차감과 관련하여 최초 매출 시점의 invoice 상의 금액을 차감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PPh23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할인으로 보아서 15%의 원천세를 납부하도록 요청함. 동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국세청과 논의중에 있으므로, 현재 유사한 사례에 해당하는 회사들은 반드시 동 분야의 전문가와 논의가 필요함.
Claim의 성격이 promotion, rebate와는 다르나, 회계 처리 방법이 동일하고, 그에 따라 추후에 해당 이슈가 claim 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15. Claim 관련 회계처리 및 세무상 이슈

(배경)
세무조사 중에 지적된 사항으로 재무제표(감사보고서)상의 클레임 회계 처리에 대해 이견이 있음.
회사의 회계처리 : 외주업체에 대한 "기타 미수채권 및 외주가공비 차감"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외주공임 발생시 : 차변> 외주가공비 1000 대변> 외상매입금 1000
2) 외주업체 클레임 발생 : 차변> 기타미수채권 100 대변> 외주가공비 100
3) 외주업체 클레임 공제 : 차변> 외상매입금 100 대변> 기타미수채권 100

세무서의 회계처리 : 구체적 언급 없음
회사는 외주가공비 관련 매입부가세는 당연히 클레임금액을 공제하여 (상기 예, 1,000 - 100 = 900) 환급신청하였으며, 클레임(미수채권 100) 거래 자체에 대해서는 Invoice 발행하지 않음.

(사례)
세무당국은 회사의 재무제표(감사보고서)상에 기타미수채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계정은 매출(수익)로 간주해야 하며, 아울러 "매출 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과 이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조언)
회사는 세무서의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하려고 함.

1) 이 건은 실제 사고 건으로 바이어로부터 CLAIM을 당한 것이고 동시에 외주업체에 대한 그 책임을 부담 시킨 것임을 입증
2) 바이어로부터 온 BEBT청구 등 증빙을 보완하고 업체와의 사고 합의서 등으로 해명
3) 관련 규정이나 사례 등으로 이 건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

참고로 회사는 단지 회계처리 상의 차이 (수익계상 또는 비용차감)만 있을뿐, 실제적으로 세무상 부가세 납부금액에서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받게 됨.

회계처리	부가세 신고	세무당국
비용차감 처리	매입부가세 차감	인정X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세신고 누락)
수익계상	매출부가세 납부	인정O

단지 회계처리상 비용차감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매출부가세 누락이라는 세무당국의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약해 보임. 그러나, 회사가 클레임 채권을 수익(비용차감) 계상하였고, 별도의 Invoice 가 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부가세 ISSUE 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른 사례에서도 파악된 바 있으나, 인니 세무당국은 "거래의 실질"보다 "형식(회계처리)"을 중시하는 경우 많음. 결국 "단순한 회계처리의 실수 아닌 실수"로 인하여 실질이 잘못 해석되고 이는 세무상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은 한국기업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부분임. 하지만, 회사가 거래처에 먼저 배상한 "클레임비용"에 대해서는 "수출수수료"로 회계처리하여 큰 이견 없이 손금인정되었다는 사실도 유념할 필요 있음.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이 클레임 거래가 처리될 경우에는 부가세 ISSUE 에서 벗어날 수 있음.
거래현황

- 주문 : 거래처(X) → 생산자(Y) → 하도급업체(Z)
- 클레임청구 : 거래처(X) → 생산자(Y) → 하도급업체(Z)
- 클레임보상 : 하도급업체(Z) → 생산자(Y) → 거래처(X)

생산자(Y)는 아래 조건 충족시키도록 회계/세무 처리

- X가 발행하는 Invoice는 Y가 아닌 Z명의로 함
- 클레임 관련 Mark-up 은 없음.
- 클레임 관련 수익/비용을 회계상 인식하지 않음

실무상 상기 조건을 충족시키기 쉽지 않으며, 본 사례처럼 별도 거래로 인식하는 경우 많음. 이 경우에는 별도 Invoice 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역시 PPH23(거주자 원천징수 규정에 따라 15% 또는 2%를 원천징수함) 관련 ISSUE 가 제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16. 법인세 환급 세무조사시 주의사항(손금불산입)

(배경)
개인소득세 계산시 회사가 부담하는 사회 보장 부담금(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BPJS')을 과세 대상 총급여에 포함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사회 보장 부담금 중 고용주(법인) 부담분에 대하여 법인이 손금산입 한 경우 세무조사시 발생한 이슈.

인도네시아는 사회 보장 제도의 확대 시행을 목적으로 2015년 7월 1일자로 신규 규정을 발표하여 산재보험, 사망보험, 노후저축 및 연금보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특히 연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6개월 이상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의무가입토록 개정함 (자세한 개정사항은 '인도네시아 세법해설' 152쪽~153쪽을 참고).

(사례)
법인세 환급 세무조사시 세무조사관이 고용주 부담분에 대해서 종업원 개인 소득에 추가하거나 법인의 손금 불산입 할 것을 요구하였음. 개인 소득에 추가하면 회사 입장에서 사외 유출이 더 적을 수 있으나 종업원 반발이 예상되고 처리가 복잡한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손금불산입에 포함하여 세무서의 조정사항에 동의함.

(조언)
복리후생비, 사회 보장 부담금 등의 일반 법인세 손금조정 항목은 흔히 Tax Correction이 발생하는 항목으로, 세무조사시 패널티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신고시 정확하게 신고하는게 중요하다. 사회 보장 부담금 중 고용주 부담분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종업의 개인소득세 계산시에는 이를 총 급여 포함(노후저축은 제외)하여야 함.

17. 복리후생비(Benefits-In-Kind:BIK) 관련 세무상 처리

(배경)
회사가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현물(*)(BIK: Benefit-in-kind)에 대하여 현지법인 및 지사의 관점에서 세무상 비용인정 여부 및 개인 소득세 측면 검토.
(*) 주요 지급 현물 : 주택제공, 승용차, 이동전화 등

(관련규정)
1) 세무상 처리 원칙
* 회사(현지법인) : 세무상 손금 부인
* 개인(종업원) : 개인소득세 비과세(개인소득으로 보지 않음)
2) 세무상 손금부인 금액 : 전액. 단, 승용차와 이동전화의 경우 50%는 회사 비용으로 인정함.
3) 예외 – 일부 특정한 경우에는 현물급여 성격의 복리후생비를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며, 이는 다음과 같음. 하기의 법인 또는 지사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결정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비용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임.
- 1984년 이전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광산 회사 및 오일 가스 산업의 PSC(Production Sharing Contractors)
- 외국 기업의 대표 사무소로서 법인세 납세자가 아닌 경우
- 최종 분리 과세를 적용 받는 회사
- 인정 이윤 과세 대상 회사

(사례)
주택임차의 경우
① 임대인(법인) / 임차인(법인)
- 임차료 및 부가세 10% 부담
- 회사 : 손금 부인처리/ 개인 : 임차료 지원금액 소득세 비과세
- 주택 임차는 Final tax(PPH 4)로 원천징수(10%) 대상임
- 원천세 익월 납부 및 신고로 종료 : 법인세 신고시 고려 대상 아님

② 임대인(개인, PKP없음)/ 임차인(법인)
- 부가세 없음
- 회사 : 손금 부인처리/ 개인 : 소득세 비과세
- 송금시 원천징수(10%) 대상이며 임대인이 NPWP가 있어야 함.(실제 신고시 임대인의 NPWP를 기재하여 신고)

(조언)
지사의 경우는 본사 지원 주택임차료 및 상기 BIK에 대하여 개인소득으로 간주하여 개인의 소득세 신고시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18. Employee Benefit 관련 회계 기준의 변경

1) 기존적용방법

인도네시아 회계처리기준(PSAK)는 IFRS를 도입하여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하여 독립된 제3자의 계리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두 가지 평가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적용 가능하였음(revised 2010)

- Corridor Approach : 보험수리적 손익을 잔여 근속기간에 이연하여 상각하는 방법
- New alternative approach to recognize actuary gain or loss through OCI (OCI approach) : 당해 발생한 보험수리적 손익을 대차대조표에 직접반영하는 방법(손익계산서에서는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됨)

2) 2013년 변경 적용 내용 (K-IFRS와 동일하게 기준 적용함)

IAS개정에 따르면 기존에 선택 사용가능했던 두가지 방법 중 Corridor approach 를 2013년 1월 1일자로 시작하는 회계기간부터는 적용이 불가함. 따라서 현재 PSAK하에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는 OCI approach를 적용하여 Employee Benefit을 계산하고 있음.

3) 실무적용 사례

대부분의 회사는 퇴직급여충당금의 계리평가를 회계기간말에 1회 받아서 기말감사시 적용하므로, 분•반기 검토시에는 OCI approach 적용이 용이하지 아니함. 따라서, 직전연도말에 평가받은 보고서 상의 차기연도 예상 금액을 월할로 계상하는 방법을 실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회계기준 중 PSAK이 아닌 ETAP(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동 회계기준의 적용 의무가 없으며, 한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하는 가정하에 퇴직금 추계액을 산출하여 계산하면 됨.

조기 결산을 하는 법인의 경우, 인도네시아 계리보고서 발행이 늦어져 결산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12월 말이 아닌 10월 또는 11월 말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계리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기준일자에 예상했던 기말 인력정보와 실제 정보 상의 유의한 차이가 없어야함.

19. 기계제작이나 건축공사 외주제작 및 공사 - PPH23 대상

(배경)
기계 제작과 관련하여 외주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외주기계 제작 계약서에 총 제작 금액을 표시하였음. 인도네시아 세법상 외주 제작 또는 외주가공비에 대하여는 PPH23(임차 및 외주용역비 세금)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및 납부토록 되어 있음.

(사례)
제작업체에 PPH23에 근거하여 원천징수 하고자 총 용역 금액을 세분해 보니, 용역 자재대금이 80%이고 20%가 제작 인건비(용역비)이었으며, 제작 업체에서는 총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율을 적용하면 자재대금에 대하여도 세금을 적용 납부하게 되는 사항으로 공사 이윤이 없다는 불만을 제기함.

이에 대하여 세무서에 질의 해 본 바, PPH23은 제작 용역비에 대하여만 부과하는 세금으로 파악되었으며, 결국 계약서 상에 총 대금 내역을 세분하여 자재대금 80%(금액기표) 및 인건비20%(금액기표)로 기표함으로써 PPH23 에 근거한 원천징수 및 납부는 인건비20%에 대하여만 이루어졌음.

(조언)
기계 제작시에는 계약서 대금 작성시 자재대와 인건비(용역비)를 구분함으로써 용역비에 대하여만 PPH23 세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이 절세 방안임.

(기타논의사항)
자재대금 관련하여는 "구매List"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자체에는 부가세 과세표준 및 부가세 금액만 표시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원천징수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향후 tax risk를 줄일 수 있음.

20. 일반 용역비에 부가되는 PPH23

(배경)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처리하는 비용 계정 과목 중 수선비, 차량유지비 및 외주가공비 계정은 대부분 수리, 수선 및 외주가공 용역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PPH23에 근거하여 원천징수 및 납부토록 되어 있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기계수선비, 차량수선비 및 부품관련 외주가공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공급업체에 대금 지급시 PPH23에 따라 원천징수 한다고 하면 상당히 거부감을 표시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음. 더 나아가 관련 세금을 공급받는 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아울러 그런 조건이라면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음.

(사례)
PPH23에 해당되는 내용이 증빙에 JASA, SERVICE 표현으로 봉사료, 서비스료라는 뜻을 나타내므로 당연히 PPH23세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음.
이와 달리, 계산서 내역에 소모품이나 소모공기구을 표현할 수 있는 SUPPLIES, PERLENGKAP, ALAT-ALAT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회계처리도 소모품비계정으로 처리하여 PPH23세금 과세대상에서 벗어남. 그리고 부품 외주가공에 대하여도 외주업체와 협의하여 외주가공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재구매나 소모품 구매로 전환하도록 하였으며, 외주 가공업체의 자금에 대하여는 선급금을 지급해주거나 자재 대금결재을 신속하게 해줌으로써 외주가공업체의 자금부족을 해소하였음.

(조언)
PPH23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질 거래와 다르게 서류작성 및 회계처리함으로써 향후 이로 인한 Risk 를 완전히 회피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21. 국외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 배당소득 지급관련 원천징수

(배경)
A회사(인니)는 한국의 B사로부터 일정금액의 차입금이 있으며 동 금액에 일정율의 이자를 부담하여 상환하였음. 동 이자소득의 지급은 원천징수 대상임.

(관련규정)
PPH 26 - 해외 비거주자(법인, 개인)에 대한 이자, 배당, 로열티, 용역대가 등 지급시 인니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총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해야 함.
그러나 한국과 인니는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조세협약상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조세협약상 원천징수 세율>
① 배당소득 : 10% (지분율이 25% 이상인 경우) / 15%(지분율이 25% 미만인 경우)
② 이자소득 : 10% (정부소유 금융기관은 0% 적용 가능)
③ 로열티 : 15%

(조언)
조세조약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DGT 1 Form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회사의 실수 또는 관리 소홀로 해당 시점에 DGT 1 Form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거주자 증명원(Certificate of Domicile)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시 세무조사관이 이를 부인할 수 있음. 실무적으로는 세무 조사 단계에서는 회사가 Formality를 위배하였으므로 불리한 입장이며, 이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

※ 참고
상기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국세청 규정에 따라 DGT Form-1 (금융기관의 경우 DGT Form-2)을 거래 상대방으로 부터 수령하여, 이자비용에 대하여 원천징수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DGT 1 Form은 매년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DGT 1 Form은 부록 참조).

22. 월 선납 법인세 계산 및 사례

(관련규정)

1. 소득세법 25조

   소득세법 25조는 거주 납세의무자와 고정사업장을 가진 자는 월할 납부세금의 의무를 우선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이는 선납되는 한국기준의 중간예납과 유사한 성격의 법인세 이외에도 국외 출국자 세무신고 같은 내용도 있음.

2. 선납법인세

   인도네시아 선납법인세는 법인의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납부세액이 있는 모든 법인은 매월 선납법인세를 자진 납부 해야 함 (직전년도 기준)

(*) 한국 : 법인세 중간예납제도를 통하여 1년 1회(12월말 법인은 8월) 신고.납부하며 직전년도 기준과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납부하는 방법 중 선택가능하나 일반적으로 후자로 신고

3. 선납법인세 계산 방법

1) 직전년도 세전이익	×××	
2) 비정기 소득	(×××)	(영업외 수익 : 환차익, 고정자산처분익, 잡이익등)
3) 비정기 비용	×××	(영업외 비용)
4) 선납법인세 산출기준 소득액	×××	
5) 세무상 결손금 보전액	(×××)	
6) 선납법인세 과세표준액	×××	
7) 산출세액	×××	(과세표준 × 25%)
8) 선납소득세 (PPh 22, 23, 24)	(×××)	
9) 납부세액	×××	
10) 월 선납법인세	×××	(1/12)

3. No. KEP-537/PJ/2000 제7항

   과세연도 중 3개월 이상 경과 후, 해당 연도의 납부세액이 선납세액의 75%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감액 신청을 제출 할 수 있다. 신청서는 예상소득금액 계산내역과 해당연도 선납소득세 잔액 명세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이 없으면 결정은 받아들여진 것으로 간주된다.

(사례)

(1) K사 선납법인세 사례

K사는 2011년도 법인세 신고시 2012년 선납 법인세 계산을 여러가지 상황을 반영하여 신고함(오류 신고). 법인세 신고 이후 PMA로 부터 선납 법인세 계산 오류 통지와 함께 선납 법인세 과소액 및 지연이자를 추징 당함.

(2) K사 선납법인세 감면 신청

K사는 손익이 직전년도 보다 감소할 것임을 PMA 측에 계속 주장하여 감면 신청을 제출 하고 PMA측은 여러 정황을 확인하여 DGT에 승인 요청 후, DGT로부터 최종 감면 결정 받게 됨.

▷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감면사유서, 감사보고서, 법인세신고서, 추정자금수지, 추정손익

(3) 선납법인세 계산 및 감면 사례(2012년 4월 ~ 8월)

	K사 계산	PMA 계산	**감면신청**
직전년도 세전이익		122,000,000	88,000,000
영외수익		-23,000,000	-23,000,000
산출기준소득액	91,000,000	99,000,000	65,000,000
결손금보전액	0		
과세표준액	**91,000,000**	**99,000,000**	**65,000,000**
산출세액 (과표 ×25%)	22,750,000	24,750,000	16,250,000
선납소득세	16,000,000	12,000,000	10,300,000
납부선납법인세			5,312,500
납부세액	6,750,000	12,750,000	637,500
월 선납법인세	562,500	1,062,500	91,071
납부선납세 (5개월)	2,812,500	5,312,500	
기납부선납세		-2,812,500	
미지급선납법인세		2,500,000	
Penalty		150,000	150,000
선납법인세(최종)		**12,750,000**	**6,100,000**

감면액	**6,650,000**

(*1) K사 계산 : 세전이익 추정, 영업외수익 고려 제외, 선납소득세 추정
(*2) PMA 계산 : 직전연도 세전이익 반영, 직전연도 영업외수익 고려, 직전연도 선납소득세 반영
(*3) 감면신청 : 납세자 추정 세전이익 반영, 직전연도 영업외수익 반영, 추정 선납법인세 반영

(조언)

- 소득세법 25조에 근거한 산출방식을 적용한 신고가 필요(↔선납법인세 과소액 및 지연이자 추징)
- 인도네시아 세무행정 특성상 환급이나 감액결정은 쉽지 않으며, 특히, 하반기 신청은 세무서별 세수문제로 상당히 어려울 수 있음.
- 감액결정을 신청할 때 감액율은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세수 등을 고려한 승인여부가 결정 .
- 세무서 담당자와의 유대관계를 통한 회사의 이미지 구축 필요(감액신청시 적극 지원).

(*) 참고 : 소득세 신고서식 중 선납법인세 산출신고 내역

Form 1771 Page 2

		RUPIAH
(1)	(2)	(3)
E MONTHLY INSTALLMENT OF ART.25 F OR CURRENT YEAR	14. a. INCOME BASE FOR CALCULATION OF MONTHLY TAX INSTALLMENT.....	14a
	b. FISCAL LOSS CARRIED FORWARD: (From Special Attachment 2A Total of Column 9)	14b
	c. TAXABLE INCOME (14a – 14b)	14c
	d. TAX DUE (Tax Rate from Part B line 4 X 14c)	14d
	e. WITHHOLDING TAX PAID BASED ON NUMBER 14a	14e
	f. INCOME TAX MUST BE PAID (14d – 14e)	14f -
	g. INCOME TAX ARTICLE 25 : (1/12 X 14f)	14g -

23. 부가세 신고 및 환급 세무조사 절차

(배경)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환급 신청함.

(사례)
환급 신청 (회사) → Tax Audit Instruction Letter발행(세무서) → Data request letter발행(세무서) → Field Audit (생략 가능) → 요청 자료 및 서류 제출(회사, 반드시 30일 이내) → 회사 준비 자료와 Auditor 자료(거래선 신고된 자료에서 준비된) 비교 → 비교 분석(회사 & Auditor) → 차이 소명 추가 증빙 제출 (회사) → Summary of Tax Audit Findings Notification Letter(SPHP)(세무서) → Response Letter제출(회사 - 7일 이내 제출이 원칙이며, 3일 연장가능) → Closing conference 요청(세무서) → Closing conference참석 및 종료→ 과다 납부 통지서(SKPLB) 발행 → 환급액과 징수액 상계(PBK) → 최종 환급 금액 통보(SPMKP) → State of treasury에서 환급액 지급 준비 → 은행 구좌로 송금 완료

(*) 참고 - 용어설명
SPHP : Surat Pemberitahuan Hasil Pemeriksaan
SKPLB : Surat Ketetapan Pajak Lebih Bayar
PBK : PEMIMDAH BUKUAN (AR/AP 상계 – booking Process)
SPMKP : Surat Perintah Membayar Kelebihan Pajak (Common letter to KPKN Transfer money)
KPKN : Kantor Perbendaharaan Keuangan Negara (State of Treasury)

(조언)
최근 세무조사 사례를 보면, 세무서가 공격적인 Target 설정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Formality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대부분 Correction을 통하여 과세를 하고 있음. 특히, 조사 단계에서 요청자료 제출요구를 받고 이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SPHP의 답변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하면 이에 대해서는 매우 공격적으로 과세가 이루어 지고 있음. 따라서,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수감하는 경우 반드시 Formality를 충족하여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과세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추가로, 세무서와 규정 해석 또는 적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가 주요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음. 이런 경우에는 Quality Review나 Ruling을 통하여 규정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이나 소송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회사의 입장을 주장을 하여야 함.
모범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수감하지 않고 부가세 및 법인세의 Overpayment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세무조사가 종결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향후 세무조사시 과다환급 금액에 대하여 추가적인 패널티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또한 2014년 규정이 개정되어, 보세구역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범 납세자 또는 저위험 납세자 지위를 보유할 수 없게 됨.
모범 납세자와 저위험 납세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인도네시아 세법해설' 페이지 217~221을 참고하길 바람.

| 저위험도 납세자와 모범 납세자의 비교 |

구분	저위험도 납세자	모범 납세자
관련 근거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4c항 및 재무부령 No.71/PMK.03/2010	국세기본법 제17C조 및 재무부령 No.192/PMK.03/2007
적용 세목	부가가치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선정 방법	납세자의 신청에 따름	해당 세무관서의 요청에 따라 지방 국세청에서 선정
선정 시기	납세자가 신청한 때	매년 1월 20일까지 연 1회
환급 기간	부가가치세 1개월 내	부가가치세 1개월 내 소득세 3개월 내
세무조사 적발 시 가산세	과다 환급 금액의 월 2%, 최대 24개월	과다 환급 금액의 100%

※ 참고

수시로 세무 조사관과 만나 Communication 하는 것이 좋음. Document Back up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미리 준비 하고 사전 Meeting을 자주 하는 것이 권장됨. Field Audit 은 경우에 따라 생략 가능하나, 한 번쯤 사업장으로 초대하는 것도 좋은 대응 방법일 수 있음.
08년까지는 Audit 시작 후 3개월안에 종료 시한이나, 09년부터 1년 안에 종료 되는 것으로 세법 변경 되었으므로 유의 필요함. 무엇보다 세무 조사관과의 관계가 중요함.
특히, 모범 납세자(Golden Tax Payer License) 지위를 획득하면 audit 없이 환급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있음.

24. 부가세 환급 및 이의신청기간의 지연이자 환급

(배경)
A사는 2003년 1월부터 PT B사와 자재구입 거래를 시작하였음. PT B사는 A사와 거래가 있을 때마다, 관할 세무서에 매출부가세 신고를 하였고(총 부가세금액 약 IDR 50 million), A사는 부가세 환급신청을 통해서 환급을 받았음.
2004년에 지방국세청은 A사의 2003년 실적에 대해 부가세를 포함하여 정기 세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이 해에 국세청장은 납세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Black List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는데, 이 Black List에 PT. B사가 포함되었음.
이에 A사는 국세청에서 발행한 기환급액과 환급액의 100%를 벌금으로 한 IDR 100 million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추가 과세서(Surat Ketetapan Pajak Kurang Bayar Tambahan)를 받았음.

A사는 이 건에 대해 PT. B사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출부가세를 신고하였다는 답변을 들었고, PT. B사의 관할세무서(Cimahi District Tax Service)에도 A사와의 거래에 대한 매출부가세 신고 누락이 없었는 지를 문의 한 결과, A사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가 합법적으로 신고가 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음.

(사례)
A사는 이의신청을 위해 필요한 모든 믿을 만한 자료를 수집하고, 세무서에서 요구한 IDR 100 million을 납부한 이후 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음. 하지만, PT. B사는 Black List에 포함된 회사로서 납세의무 위반이 의심된다는 강고한 의견을 바꾸지 않아, 결국에는 A사가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거절당했음.
이에 A사는 자카르타에 있는 조세심판원(Badan Peradilan Pajak, Tax Justice Body)에 호소장을 보내어 국세청이 PT. B사가 납세의무를 위반했다는 어떤 증거물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과 이의 신청을 위해 준비했던 모든 믿을 만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강하게 설명하였음.
마침내, 조세심판원(Tax Justice Body)은 A사의 호소를 받아들일 것을 결정하였고, 2006년 8월 PMA 4 (Penanaman Modal Asing 4) 서장의 판결에 따라 결정문(Putusan Pengadilan)이 선포되어, A사는 기납부한 IDR 100 million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음.

그리고, A사는 기납부된 IDR 100 million 대한 24개월 간의 이자비용도 충분히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자지급요청서(Surat Permohonan Pembayaran Bunga)를 작성하여 PMA 4 국장에게 제출하였고, PMA 4국장으로부터 받아들여져 약 IDR 48 million의 이자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2006년 9월 A사는 초과과세 지급명령서(Surat Perintah Membayar Kelebihan Pajak)에 의해 기납부한 부가세와 Penalty IDR 100 million및 이자보상명령서(Surat Perintah Membayar Imbalan Bunga)에 의한 IDR 48 million의 이자를 받게 되었음.

(조언)
비합리적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대응하는 경우, 인도네시아 세무 행정의 불투명성과 세무 당국과의 관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사례는 한국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정한 법적 절차를 통해 세무이슈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최근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이 부패척결의지가 강하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25. 부가세 영세율 적용 대상 수출용역 거래

(배경)
한국 소재 기업 A는 인도네시아 진출을 검토하며 인도네시아 소재 컨설팅 법인에게 시장조사를 의뢰하고 용역결과 보고서 수령 후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 인도네시아 컨설팅 법인은 용역결과 보고서 제출 후 기업A에게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용역 대금 인보이스를 발행하였으나 한국 기업 A는 용역의 수출 거래에 대하여 왜 부가세가 과세되냐며 이의를 제기함.

(관련 규정)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인도네시아 국세청훈령(Circular letter) No. SE-49/PJ/2011년
재무부령 No.30/PMK.03/2011년

(사례)
인도네시아 부가세법은 '수출하는 유체재화', '수출하는 무체재화' 및 '수출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규정인 국세청훈령에는 인도네시아 과세지역에서 수행된 용역은 수출 용역의 경우에도 부가세 10%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재무부령에서는 인도네시아 과세 지역에서 수행된 용역일지라도 다음 3가지 수출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① 사급용역 (Jasa Maklon)
② 국외 이용 동산(Barang Begerak)에 대한 수리 또는 수선 용역
③ 국외 소재 부동산(Barang Tidak Bergerak)에 대한 건설용역(설계, 시공, 감리)

(조언)
상기 언급된 3가지 용역의 수출 거래를 제외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수행된 용역은 수출일지라도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해외 거래 상대방에게 사전에 안내가 필요하며, 해외 거래 상대방은 인도네시아에서 부과된 부가세를 자국에서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26. 한-인니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련 상호주의 (수출용역)

(배경)
한국 부가가치세법은 외화 회득 재화 또는 용역(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을 포함) 등에 영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16년 7월 1일부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경우,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국에서도 한국의 거주자 또는 한국법인에게 동일하게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도록 규정이 개정됨.

(관련 규정)
- 한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1호 및 2호
-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10호

(사례)
한국 본사 A법인은 인니 지사를 통하여 인도네시아에 컨설팅을 용역을 수주하였음. 컨설팅 용역은 i) 한국에서 작성되는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과 ii) 인도네시아 거래처가 한국을 방문하여 일정 기간동안 관련 교육 서비스를 제공(숙박 및 식사 등의 제공이 포함)하는 것으로 구성됨. 한국 본사 A법인은 해당 컨설팅 용역이 용역의 수출이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인도네시아에서도 i) 한국에 수출하는 용역과 ii) 인도네시아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국 거주자 또는 한국법인에 공급되는 서비스 가 동일하게 면세된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
결국 한국 A사는 동 용역의 제공이 부가세 과세 거래라고 결론을 내리고, 인니 거래처에 계약금액의 수정을 요청함.

(조언)
개정된 한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사례 25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특정 3가지 거래를 제외하고 용역의 수출이 부가세가 과세되므로 더 이상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제공하는 용역도 부가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인도네시아로 용역 수출 시 계약금액 산정에 부가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7. 보세구역(Kawasan Berikat) 승인 절차 및 효과

(배경)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은 일정요건을 충족시 보세구역 신청이 가능하며 보세구역 지정에 따른 단점이 없지는 않으나 불필요한 사외유출을 최소화 하기 위해 회사는 2008년초부터 보세구역 적용을 검토하여 2008년 10월부터 보세구역 적용을 받고 있음.

(추진과정)
관세 환급과 관련하여 회사는 매년 발생하는 수입관세/수입부가세 벌과금에 대한 근본 대책을 고민하던 중 해결책으로 보세구역 적용 추진을 결정하였음. 인니 관세납부 프로세스 상 수출/국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기업은 원부자재의 수입시 수출용과 국판용이 명확히 구분되어 수입되지 않는 한 매년 관세청 감사 후 관세/부가세 미납액에 대해 100%에 상당하는 벌과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보세구역 신청이 가능한 전제조건"은 제품별 수출비중이 최소 50%(업종별 차이여부는 추가검토要)가 넘어야 하며 보세구역 지정과 더불어 기존의 수입 Facility는 종료되며 관세청의 제품/원부재료의 입출관리를 위해 출입구를 1개로 가져가야 함. 보세구역 승인 추진을 위해 기존 출입구가 2개였던 것을 감안하여 Lay-out조정 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이후 약 1주일 동안 보세구역 신청을 위한 서류작업을 진행하였음.

주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으며, 동 절차를 거쳐 현재 보세구역으로 적용을 받고 있음.
1) 해당지역 관세청에 보세구역 지정 신청
2) 지역 관세청의 실사
3) 공장내 관세청 직원 사무소 설치
4) 지역 관세청 승인 확보
5) 중앙관세청 보세구역 지정 신청
6) 중앙관세청 실사 및 승인 확보
7) 과거분 관세에 대한 Audit
8) 보세구역 지정 전까지의 관세 정산 및 납부(결정서 통지 후 1개월 內)

보세구역 지정 과정은 대략 5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보세구역 승인 확보 후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회사의 공장2개 모두가 동부자바 지역에 위치하나 관할 관세청이 각각 달라서 1개 사업장 관할 관세청에서는 수입 Facility 종료 시점의 재고에 대해 관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나머지 1개 사업장 관할 관세청에서는 해당 재고에 대해 관세 납부를 주장하여 중앙 관세청의 예규 및 동부 주재 관련 공공기관의 협조를 통해 원만히 해결한 경우가 있었음.

(조언)
보세구역 적용으로 수출용 로컬 원부재료 구매시 부가세 납부 유예기능이 있고 관세/부가세 벌과금 추징 사전 방지 및 관세납부액 기준(제품기준 또는 해당 원부재료 기준)을 회사가 선택할 수 있어 관세 절감도 가능함.
기존 수입 Facility의 종료 시점과 보세구역 적용 기일 사이에 기간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이 기간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우선 필요하고(최소 5일 이내로 조정), 사전에 주요 원부재료 수입 시점 조정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의 수입을 제로화 하여 관세납부 가능성을 없애도록 함.

28. 수입부가세 관련

(배경)
A회사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재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동 업종에서는 직접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항상 Agent사를 통해서만 수입할 수 있는 상황임.

수입 당사자에게 수입자재 하역지 세무당국이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는 수입관세, 수입부가세 및 수입 관련 소득세(pph 22)가 있으며, Agent사 또한 사무소 소재지 세무당국이 부과하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발생. 동일 물품에 대하여 이중으로 부가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하여 동종 업계 회사들은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Agent사에게 수입대금 청구시 부가세를 제외하고 청구토록 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련당국에서도 이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여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A회사가 수입한 물품 중 최초 물품은 수입자재 하역지 세무당국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Agent사 수입대금 청구서상의 부가세를 자카르타 세무서에 납부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에 수입자재 하역지 세무당국의 부가세 납부 독촉 및 수입 자재 반출금지 명령을 받게 되었음

(사례)
A회사는 현재 관련 당국의 법령 개정 과정을 설명하고, Agent 사 청구서에 포함되어 납부한 부가세를 수입자재 하역지 세무당국의 징수액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자카르타 세무당국은 세금납부 주체가 A회사가 아닌 Agent사로 되어 있기에 Agent 사가 세금 환급을 통해 A회사로 변경하지 않는 한 A회사의 부가세 납부의무는 여전히 존재함을 통보함.
이에 따라, A회사는 Agent에게 세금 환급을 청구하도록 요구하였으나, Agent사는 세금 환급 요청시 시행되는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세금 환급 청구를 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며, 자카르타 세무당국은 Agent사의 세금 환급 요청을 통하여 변경이 된다 할 지라도 가산세 2% 납부 의무는 여전히 A회사가 부담하게 됨을 알려옴

(조언)
상기 사례 이외에도, 자재 수입시 대금은 A회사가 지급하지만 명의는 타사의 명의로 수입을 하는 경우 유사한 문제가 발생. A회사가 직접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향후에 기납부한 수입부가세 및 수입 선납법인세의 경우 상계하거나 환급신청이 가능하나, 타사의 명의로 수입이 된 경우에는 A회사 입장에서 이를 Tax Credit으로 사용하기가 매우 힘듬. 또한, 이에 대하여 환급 신청시에 부가세의 경우 100%의 패널티를 과세받을 수 있을 수 있으므로, 환급 신청 전에 반드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29.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간접수출 조건에 대한 해석

(배경)
A사는 수출가공 제조업체(KITE)로서 원자재 수입시 관세 유예를 받고 1년 이내에 수출신고를 함으로서 관세 면제를 받는 회사임. A사는 보세지역(KB)에 위치한 B회사에 제품 공급하고 있으며, 이 거래는 "간접수출(영세율 적용)" 로 적용받아야 함.

상기 거래의 간접수출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제약조건이 있음.

1. 부가세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A회사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코드가 수출 이력이 있어야만 수출실적의 25% 한도 내에서 내수판매(부가세 거래)가 가능함
2. (상기 1번의 제약조건과 무관하게) A회사는 보세지역(KB)을 통한 간접수출 형태로 판매를 진행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함.
3. A회사가 상기 2번의 간접수출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판매한 제품이 "diprocess lebih lanjut" 해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사례)
A사가 판매한 제품은 B회사의 수입품질검사 및 포장라인의 작업과정을 거치고 A사의 제품이 B회사의 원자재로 구성되어 있고 A사의 원자재가 연결되어야만 B회사의 본체가 주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diprocess lebih lanjut" 이라고 해석하여 B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았으며, 지방세관 2곳에 상기조항에 대해 별도 문의결과 B사와 같은 해석을 내리고 간접수출을 적용할 수 있다는 구두 답변을 받음.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상기조항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고 예상됨. 즉, "diprocess lebih lanjut"을 가공 과정으로 유권해석하여 A사의 제품이 가공과정 없이 단순 포장과정만을 거치므로 간접수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석 할 수 있음. (상기 국세청 세법해석 건은 정식 질의결과가 아니며, 세무담당의 PMA 2 구두 문의를 통해 접수된 정보임.)

(조언)
A사는 지방세관의 답변 및 B사의 문서(확인서)를 근거로 간접수출 형태의 거래를 이미 시작하였으며 향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며, 향후 국세청과 해석상 이견 발생시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임

(*) 참고
본 사례는 '가공(diprocess lebih lanjut)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논의로 보임.

구분	영향	관세	비고
"가공"인정될 경우	간접수출 인정	원자재수입시 유예받은 관세 납부 할 필요 없음. 부가세 영세율 적용	수출 실적 인정되어 25%한도 내에서 내수판매 가능
"가공"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간접수출 불인정	수출을 전제로 관세 유예받았으나, 결론적으로 규정 위반한 것이 되어 다시 납부해야 함. 부가세 과세	수출 실적 인정이 되지 아니하여 내수판매 불가능

요약하면, KITE(수출가공제조업체) 형태로 회사 설립할 경우에는 상기와 같은 "간접수출" ISSUE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세 유예 받지 못함에 따름 Cash flow 상 문제와 아울러 "내수판매"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음.

30. 운송 주선업 부가세 과세표준에 대한 규정 변경

(배경)
인도네시아 부가세법 상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 과세표준이 판매가격, 거래가격, 수출가격 및 수입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동 과세표준의 10%를 부가세로 신고 및 납부한다. 이와는 별도로 특정한 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3년 2월에 운송료와 함께 청구되는 운송 주선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과세표준을 별도로 발표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음을 발표하여 이를 인재모 세미나에서 발표함(일반적인 거래 및 특정한 거래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관련사항은 '인도네시아 세법해설' 181쪽 ~ 183쪽을 참고).

(규정)
- No.38/PMK.011/2013(PMK-38) : 특정 거래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에 대한 규정. 2013년 2월에 발표되어 2013년 3월 1일부터 효력 발생
- Circular Letter No.SE-33/PJ/2013(SE-33) : PMK-38에 대한 국세청 내부적인 세무지침으로 2013년 7월 12일에 발표됨.

(사례)
위에서 언급한 PMK-38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운송 주선 업체(ex. 포워딩 회사)는 거래처에 인보이스 발행시 총 거래금액에 10%를 부가세로 포함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운송 주선 업체가 다양한 활동(임시 보관, 서류 처리 업무, 운송 등)을 포함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청구 금액의 1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즉, 총 청구 금액의 1%가 매출부가세로 거래처에 청구가 되어야 한다. 또한, 1%의 부가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운송 주선 업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한 예외사항은 SE-33에 규정이 되어 있다('인도네시아 세법 해설' 183쪽 ~ 184쪽을 참고).

(*) 참고
인재모에서 동 규정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 이후에, 포워딩 업체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회원사도 기존에 지불한 매출세액을 수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이를 매입세액 공제를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토론이 있었음. 이는 인도네시아 규정 신설 및 개정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는데, PMK-38이 2013년 2월 발표되었는데 실제 적용시점은 2013년 3월로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동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DGT도 세부지침을 7월에 내놓을 정도로 적용 절차가 납세자들에게 유리하지 못한 실정임. 당시 세미나에서도 많은 회원사들이 세미나가 있었던 2013년 10월까지는 기존처럼 적용하였으며, 포워딩 업체도 이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1% 부가세 적용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함.

31. 생산 전 부가세 매입세액의 공제/환급 여부

(배경)
인도네시아에 신규로 진출하는 많은 한국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세정의 불명확성과 이해부족 및 사전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법인 설립 이후에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 세무조사를 통하여 과세를 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음. 법인의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전가격 문제, 복리후생비 등의 세무조정 문제, 각종 원천징수 납부의무 준수 등에 대하여 많은 회사들이 세무조사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뿐만 아니라, 법인설립 이전 및 상업생산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거래 및 세무신고와 관련하여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이번 주제에서는 법인 설립단계 및 상업생산 이전 단계에서 법인이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부가세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자 함. 사전에 기본적인 세무지식과 법인설립 단계의 부가세법을 고려한 업무진행 계획을 통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동 주제를 선정하였음..

(관련 규정)
인도네시아 부가세법 제9조 2(a)항에 따르면, 회사는 상업 생산 이전에 발생한 부가세 매입세액(Input VAT)에 대하여, 동 부가세 매입세액이 자본재(Capital goods)의 취득인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이를 해석해 보면, 상업 생산 이전에 발생한 자본재가 아닌 재화나 설비의 취득과 관련한 부가세 매입세액은 환급이나 매출세액과의 상계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임.

(사례)
예를 들어, A법인이 2016년 1월 1일에 설립이 되었고 토지취득, 건물 취득, 기계장치 구입, 서비스의 구입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18년 1월 1일에 상업 생산을 시작하였음. A법인은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부가세 납세번호를 정상적으로 등록하였음. 2016년과 2017년에는 상업 생산이 없으므로, 즉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년 동안은 부가세 매출세액은 없고 부가세 매입세액만 존재함. 향후 A법인이 부가세 환급을 통한 세무조사를 받거나, 특별세무조사를 통하여 부가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주지하여 부가세 매입세액에 대한 과세를 최소화 하여야 함.

(조언)
회사가 2016년과 2017년에 발생한 부가세 매입세액을 전액 매출세액과 상계하거나 환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상업 생산 이전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의하여 추가 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추가 패널티 100%를 받을 수 있음. 동 규정의 취지는 부가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이 있는 동일한 과세기간에 공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상업 생산 이전의 부가세 매입세액의 공제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외로서 자본재의 취득과 관련한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A법인을 예로 들면, 건물 및 기계장치의 취득과 관련한 부가세 매입세액은 자본재의 취득 거래로서 부가세 매입세액을 Credit으로서 공제 받을 수 있음. 그러나, 법률서비스, 회계서비스, 자문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부가세 매입세액은 상기 규정으로 인하여 Credit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이를 Credit으로 계상 또는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시에 이를 추가징수하고 관련하여 100%의 패널티를 과세하게 됨. 예를 들어, 회계서비스 수수료로 11억 루피아(부가세 1억 루피아)를 지급하고 관련 부가세 1억 루피아를 Credit으로 공제받은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 1억 루피아가 과세되며 관련하여 1억 루피아가 패널티로 과세되어 총 2억 루피아가 징수됨. 법인 설립 단계 및 상업 생산 이전 단계에서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부가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매출세액-매입세액 상계 원칙만을 고려하여 모든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추가로,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달리 토지도 부가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며 A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부가세 매입세액이 발생하게 됨. 토지 관련 부가세 매입세액의 경우 위에 설명한 9조 2(a)항의 자본재의 범위에 포함하는지에 따라 공제의 적정성 여부가 판단되는데,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 세법에서는 자본재는 1년 이상의 내용연수를 가진 유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토지가 자본재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으며, 케이스별로 세무조사의 결과가 다른 실정임. 토지의 취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부가세 공제 여부를 판단하여 회계기장 및 세무신고를 하여야 함.

또한, 세법상 상업 생산 시점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세무조사시에는 실무적인 해석을 통하여 적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상업 생산 시점은 매출 세금 계산서 발행 시점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경우가 대다수 임. 여기에서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매출 준비를 위하여 매입한 원재료, 부재료 등은 상기 9조 2(a)항의 자본재의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실무적으로는 회계나 세법에서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매출 시점의 사전 계획을 통하여 원재료 등의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생산 시점 이전의 거래에 대하여는 세법을 고려한 계획을 통하여 잠재적인 과세 리스크를 낮춰야 함.

32. 부가세 및 선납 법인세의 면제 신청

(배경)
회사는 신규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시점에 손실을 예상하여 PPh 22 수입선납법인세와 수입부가세를 면제 신청하여 승인받음. 또한, 선납 법인세가 예상 납부 법인세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하여 PPh 22 및 PPh 25 월할 선납 법인세를 면제신청하여 승인받음

(사례)
1) 2012년 건설기간과 관련하여 수입 선납 법인세 면제 신청 관련 (PPh 22)

1. PPH 22 (수입 선납법인세 2.5%) : 2012년

- 면제 조건 (PER-1/PJ/2011, PER-14/PJ/2014 pasal 1 ayat (1) huruf C)
  1) WP baru berdiri dan masih dalam tahap Investasi
  2) Kompensasi Kerugian Fiskal
  3) Import BKP Modal Strategis

- 제출 서류 (3~4번의 경우 있으면 제출, 필수는 아님)
  1) Surat Permohonan SKB
  2) SPT tahunan yang sudah dilaporkan sebelumnya
  3) Master List dari BKPM
  4) Dokumen Import : PIB, Invoice + Packing List + BL + LC+ Contract, Brosur (Kegunaan BKP), Flow Chart proses produksi

- 기타 조건
  1) KPP akan mengeluarkan surat keterangan Bebas atau penolakan permohonan dalam 5 hari kerja
  2) Surat Keterangan Bebas berlaku sampai dengan berakhirnya tahun pajak yang bersangkutan

2) 2012년 건설기간 이후의 수입 선납 법인세 면제 신청 관련 (PPh 22)

면제 조건은 상기에서 언급과 조건과 동일하며, 2013년 부터 2016년까지 상반기에 연간 예상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법인이 수입 선납 법인세를 과다하게 납부하게 됨을 소명하여 면제 승인을 받음.

3) 월할 선납 법인세 면제 신청 관련 (PPh 25)

- 감액 조건 (KEP-537/PJ./2000)
  1) Diajukan ke KPP bersangkutan
  2) Pengajuan diajukan paling cepat 3 Bulan setelah berjalannya tahun pajak
  3) Wajib pajak dapat menunjukan bahwa PPh yang akan terhutang untuk tahun pajak tersebut kurang dari 75% dari PPh terhutang yang menjadi dasar perhitungan besarnya PPh Pasal 25

- 제출 서류
  1) Surat Permohonan
  2) SPT tahunan yang sudah dilaporkan sebelumnya
  3) Proyeksi perhitungan laba rugi tahun berjalan
  4) bukti-bukti pembayaran pajak yang telah dilakukan

- 기타 조건
  Surat Keputusan permohonan pengurang akan dievaluasi 15hari kerja sejak permohonan diterima lengkap dan menerbitkan surat keputusan paling lama dalam 3hari kerja sejak jangka waktu 15 hari kerja berakhir

4) 수입부가세 면제 신청 관련 (VAT)

- 면제 조건 (PER NO.12 TAHUN 2001, PP no.31 tahun 2007)
  1) Import BKP tertentu yang bersifat Strategis
  2) Master List BKPM

- 제출 서류
  1) Surat Permohonan SKB PPN
  2) Master List dari BKPM
  3) Draft PIB Aju Import (Nilai CIF)
  4) Invoice + Packing List + BL
  5) Flow Chart Process Produksi
  6) Gambar/Brosur
  7) Copy Insurance BKP Import

- 기타 조건
  1) KPP akan mengeluarkan surat keterangan Bebas atau penolakan permohonan dalam 5 hari kerja
  2) Surat Keterangan Bebas PPN Yang di terima dari KPP pastikan isi nya sama dengan surat yang diajukan terutama CIF dan nama barang

(조언)
사례 1번과 관련하여 위의 면제조건 중 2) 번의 요건이 중요하며, 매출 발생 이전의 건설기간 이므로 결손이 예상되어 선납법인세 납부 불필요함. 접수 후 5일 이내에 승인/기각이 결정됨. (접수 이전에 AR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 면세승인서(SKB)는 PPH22의 경우, 과세기간(승인시점부터 12월까지)동안 유효함. 다만, 매번 통관 시에 SKB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최초 SKB원본 획득 후, 복사하여 세무서에서 원본확인(Legalisir)을 받아야 함 (최대 30장까지 가능)

사례 2,3번과 관련하여 감액조건 2)번과 관련하여 최소 3개월간은 기 결정된 월할 선납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감액조건 3)번과 관련하여 예상 법인세가 반드시 전년도 실제 납부 법인세의 75% 미만으로 예상이 되어야 함. 실무적으로 75% 미만임을 정확히 예상할 수 없는 경우, 예상 손익계산서의 작성을 통하여 AR과 협의하면 승인을 받을 수도 있음. 최초 접수 후 KPP의 전문 Auditor와 2~3회 추가 미팅 실시(세무서 담당자를 이해시켜야 함) 및 최종 확인 후, 정식

접수처에 접수 후 15일 뒤에 문서 상의 하자 없음이 통보 되고 그로부터 3일 뒤에 최종적으로 월선납법인세(PPH25) 감액 승인서를 받았음. 실제 감액율은 70%로 감면세액은 연간 USD 600,000 수준이었음

사례 4번과 관련하여 면제조건 2)번 : BKPM으로부터 Master-list 승인이 완료되어 관세를 면제받고 있는 자본재를 대상으로 수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도 세무서에 면제신청 (Master-list 본지에 본 건을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도 면세를 받으세요 라는 내용 있음. SKB PPN은 매 통관 시 신청하여 발급 (과세기간 및 법인세와 무관) 신청과정은 하기와 같음.

1) 수입면장(PIB),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화증권, 공정도, 제품설명서, 해상보험증권 확보(신청대상이 "기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
2) 수입면장(PIB)의 CIF금액기준의 10% 부가가치세 면세 신청
3) working-day 5일 후, SKB 확보
4) SKB PPN 승인번호를 이용하여, 패킹리스트 세무서 확인 신청(세무서장 사인 불필요)
5) SKB PPN 및 세무서 확인 서명 있는 패킹리스트를 세관에 제출
6) 최종 부가가치세 면세

(*) 모든 서류의 수입금액, 기계 명칭 등이 반드시 일치해야 함. (오류 발생 시 세관에서 기각)

33. 자기주식 매각에 대한 사례

(배경)
인도네시아 소재 PT A사는 회사의 사정상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해외 과계사에 매각한 사례임.

(관련 규정)
회사법
제 37조
- 1항 자사주 매입 가능 (순자산 감소 원인이 될 수 없음, 발행 주식의 10% 초과 불가)
- 2항 자사주 매입이 규정과 모순되는 경우 법에 의하여 취소됨
- 3항 이사회는 자사주 매입 취소로 인한 선의의 주주들의 손해에 대하여 공동 책임
- 4항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된 자사주는 최장 3년간 보유 가능 (※ 3년 내 매각 혹은 소각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

제 38조 및 39조 : 자사주 매입 또는 처분은 주주총회 결정사항, 주총 후 1년 내 감사회 승인
제 40조 : 자기주식 주주의 경우 주총 참석 불가, 배당불가
제 47조 : 주주총회 결정으로 주식 소각 혹은 감자 가능
제 58조
- 1항 정관에서 정한 경우 다른 주주에게 먼저 매각 제안 의무 있음, 30일 내 구매하지 않을 경우 제3자에게 매각 가능
- 2항 30일 후에도 매각 제안 철회 가능
- 3항 매각 제안 의무는 1회

제 62조
- 1항 주주는 일정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자사주 매입 요청 가능 (정관변경, 회사 순자산의 50%를 초과하는 이동, 합병,해산,변경,분할)
- 1항 매입을 요청받은 주식으로 37조 1항 b호의 규정(10%)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나머지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 노력

(사례)
- 한국과 인도네시아 주식매각시 주식가액 계산 비교

  한국에서 비상장 주식의 매매가격 산정을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 DCF(Discount Cash Flow)에 의한 평가방법, 소득세법상 평가방법이나 합병시 합병가액 산정을 위한 평가방법 등이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지 평가법인을 통한 주식 평가를 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자산가치+수익가치+시장가치를 고려하여 계산함.

- 한국 상증법상의 평가방법

  자산가치(BPS)와 수익가치(EPS)를 2:3으로 가중평균

  주당수익가치는 과거 3년간의 주당순손익을 가중 평균한 다음 할인율(10%) 적용

1) 주당자산가치 (BPS : Book-value Per Share) = 자기자본금액 / 주식수
- 자기자본 : $20,000,000
- 발행주식 : 40,000주
- ☞ BPS : $500/주

2) 주당수익가치 (EPS : Earning Per Share) = 당기순손익 / 주식수

- 2013년 주당순이익 :	$125/주	$5,000,000	40,000주	(X3)
- 2012년 주당순이익 :	$75/주	$3,000,000	40,000주	(X2)
- 2011년년 주당순이익 :	$25/주	$1,000,000	40,000주	(X1)
- 3개년 가중평균 :	$91.67/주			
☞ EPS :	$916.7/주 (할인율 10% 적용)			

3) 주당 주식가치 평가 (가중평균 = (자산가치X2 + 수익가치X3) / 5)

☞ 주식평가 $750/주

※ 최대주주(50% 초과) 주식은 평가액의 30% 할증, 영업권 평가 등을 추가로 반영 함

- 인도네시아 주식가액 평가방법

인도네시아 세법은 주식가액 평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독립된 감정평가 법인(KJPP)의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KJPP로 부터 평가를 받게 되며, 이 경우 세무서로 부터 평가금액에 대한 이슈제기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KJPP 중 신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 평가를 진행하는게 리스크를 낮추는데 도움이 됨.

(조언)

- 주식매각과 관련한 원천세

인도네시아 세법 26조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인도네시아의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5%를 원천징수하여 인도네시아에 납부하여야 함. 이 경우, 한국주주가 PT A의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한 사례로 5%의 원천징수 대상이 되나 한-인니 조세조약을 통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음. 유의하여야 할 점은, 한-인니 조세조약상은 동 거래가 원천세가 면제되지만, 싱가폴-인니 조세조약은 5%가 그대로 과세가 되니, 회사의 주주가 싱가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실제로 동 사례에서는 회사는 5%의 원천징수를 인도네시아에 징수하여 납부하고, 이를 한국주주가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통하여 환급 받음. 원칙적으로는 조세조약을 조약을 징수/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으니 유사한 사례가 있는 회사는 조세조약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주주 수의 감소

인도네시아 회사법 제 7조 1항에 따르면, PT는 설립시에 최소 2인 이상의 주주가 필요하다. 또한, 제 7조 5항에서는 회사가 설립 이후에 주주가 2인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주들이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회사가 타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인 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서 이를 6개월 이내에 양도하거나 회사가 신주를 타인에게 발행하여 2인 주주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34. 수입자 인증번호(API) 개정사항

1. API의 이해

수입자 인증 번호(API)는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하는 무역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인허가입니다.

수입자 인증 번호란(API)

- **수입자 인증번호**
  - ✓ 수입자 인증 번호(Angka Pengenal Importir, API) : 수입을 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허가서로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구분하여 발급됨
- **API 제정의 목적(2012년 27호 규정)**
  - ✓ 수입급증에 따라 중소제조업의 보호를 위해 제조업의 상품 수입을 규제

API 관련 규정 연혁

- 2009.9 제45호
  - ✓ 일반수입허가(API-U)와 제조업 수입허가(API-P)로 구분하여 제조업의 상품 수입 제한
- 2010.10 제39호
  - ✓ 산업 개발 목적의 제조업 상품 수입 허용
  - ✓ 상세 규정이 없어 관행상 제조유사 품목 상품은 수입가능
  - ✓ 2011년 위헌 판결
- 2012.5 제27호
  - ✓ 수입자 인증번호(API)에 대한 새로운 규정 제정
- 2015.9 제70호 : 27호 및 변경규정 84호 개정

수입자 인증 번호(API)는 제조업(P)과 비제조업(U) 구분에 따라 2가지 종류가 있으며, API-U의 경우 21가지의 섹션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었습니다.

기존 27호 규정의 주요 내용

- 수입자 인증번호를 두 가지로 분류
  - ✓ ***API-U***: 교역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
  - ✓ ***API-P***: 제조공정상 소비를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려는 제조업자
- 회사는 한 개의 API만 발급 가능
- API의 유효기간 : 5년
- API-U의 경우 별도의 수입허가서가 필요하지 아니함
- **API-U의 수입제한**
  - ✓ 제품 구분 시스템에 따라 21가지로 섹션을 구분하고 해당 섹션 내에서만 수입을 허가
  - ✓ 따라서 다른 섹션의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섹션 추가 발급 필요

1. API의 이해, *con.*

API-P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품의 수입이 엄격히 제한되며, 자가 소비 또는 사업개발 목적의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였습니다.

API-P의 수입제한

- API-P의 경우 별도의 제조업체 수입허가 (Produsen-Importir)를 얻어야 함
- API-P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수입가능

1) 자가소비 목적

✓ 자본재, 원자재, 부자재 또는 생산공정을 지원을 위한 자재의 수입

✓ 수입된 상품은 타인 양도, 판매 불가

2) 사업개발 및 투자목적

✓ 생산공정에 사용되지 않고 단지 ***시장테스트*** 또는 ***보완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특정 산업재는 수입가능

✓ 이 경우, 타인에 판매 또는 양도가 가능

❖ **Tes Pasar(시장테스트)**

- 아직 생산이 불가능한 생산자가 시장의 반응을 파악하거나 사업개발을 목적으로 생산자에 의해 수입된 특정 산업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 관계 공관이 지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만 가능

❖ **Barang Komplemetar(보완재)**

- 업종허가와 관련된 특정 산업재 중 수입자와 **특수 관계(Hubungan Istimewa)**에 있는 해외 기업이 생산 또는 공급한 제품을 수입한 제조업 수입업자의 제품
- 아직 생산이 불가능한 API-P 소유 업체/ 업종 허가 또는 사업허가에 관련된 산업재로 특수 관계에 있는 해외 기업이 생산

2. API 개정사항

수입자 인증 번호에 관한 신규 무역부 장관규정 2015년 제 70호가 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Nomor 70/M-DAG/PER/9/2015).

신규 규정 주요 변경 사항

- **제37조 :** 장관규정 2012년 제 27호에 근거하여 발급된 API-U 및 API-P는 그대로 유효하나 늦어도 2016년 6월 30일 까지 본 변경 규정에 근거하여 갱신하여야 함.
- **제38조** : 기존 규정에 따라 API-P를 소지한 회사의 제조업체 수입허가(Produsen Importir)는 허가기간까지 유효함.
- **제39조** : 본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부터 2012년 장관규정 27호 및 84호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 2012년 규정 대비 삭제된 내용

- 시장테스트 또는 비매품(보완품) 및 특수관계에 대한 정의 삭제
- 21개 섹션으로 제한하던 API-U 수입업자의 수입품 섹션을 삭제함으로써 하나의 API 취득으로 해당 업종의 품목 전체 수입 가능

3. Implication

수입자 인증 번호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황	Implication
API-U	▪ 다른 상품군 수입을 위해 섹션 추가 허가에 따른 노력 필요	▪ 21개 섹션이 삭제되어 상품 수입의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다른 섹션의 상품 수입을 위한 섹션 추가 노력 불필요
API-P	▪ 자가 소비 이외 비매품(보완품) 또는 시장Test를 위해서만 수입 가능 ▪ 비매품은 특수관계 거래만 허용 ❖ 관행적으로 비매품으로 신고하여 상품 수입	▪ **제조업의 경우 자가 소비 이외 상품 수입이 금지** ▪ **API-U를 위한 별도 법인 필요** ❖ **과거 관행적 수입에 대한 조사/제한 예상**
갱신기한	▪ API 유효기간 5년 ➔ 2012년 5월 발급인 경우 2017년 5월이 갱신 기한	▪ 2016년 6월 말까지 기존 API 갱신 필요

Appendix

수입자 인증 번호에 관한 무역부 장관 규정 2015년 제 70호

▪ 주요 규정 원문

Pasal 37

API-U dan API-P yang telah diterbitkan berdasarkan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27/M-DAG/PER/5/2012 tentang Ketentuan Angka Pengenal Importir (API) sebagaimana telah diubah beberapa kali terakhir dengan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84/M-DAG/PER/12/2012, dinyatakan tetap berlaku dan harus disesuaikan dengan Peraturan Menteri ini paling lambat tanggal 30 Juni 2016.

Pasal 38

Penetapan sebagai Produsen Importir yang diterbitkan berdasarkan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27/M-DAG/PER/5/2012 tentang Ketentuan Angka Pengenal Importir (API) sebagaimana telah diubah beberapa kali terakhir dengan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84/M-DAG/PER/12/2012, dinyatakan tetap berlaku sampai dengan masa berlakunya berakhir.

Pasal 39

Pada saat Peraturan Menteri ini mulai berlaku,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27/M-DAG/PER/5/2012 tentang Ketentuan Angka Pengenal Importir (API) sebagaimana telah diubah beberapa kali terakhir dengan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84/M-DAG/PER/5/2012, dicabut dan dinyatakan tidak berlaku.

35. 발전사업 주요 회계/세무 이슈

(배경)
발전사업 회계 및 세무 이슈
발전산업의 경우 인도네시아도 한국과 동일하게 IFRS를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세무적으로는 IFRIC 12 민간투자사업 (ISAK16, 2029호)를 적용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민자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는 건설기간 중 건설회사처럼 건설수익을 인식하나, 세무상은 일반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 회계 : 수익인식 후 확정기간 동안은 금융자산, 미확정 기간 동안은 무형자산 인식
  가.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비용 : 급여, 인허가 비용, 토지보상비, 컨설팅 비용
  나. 건설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비용 : 지급이자 및 수수료, Loan을 위한 컨설팅 비용(이연비용 및 Loan에서 차감)
- 세무 : 고정자산 인식(별도 자산리스트 구비) 및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 인식
  가. 미수금 인식시에 부가가치세 납부 요청 : 국세청 미팅을 통한 해결
  나. 송전선 관련은 PLN으로부터 부가세 지급받는 것으로 결정

(조언)
인도네시아의 경우 발전 분야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 발전소의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에 회계적으로 소유권이 PLN에 양도가 되며, 발전회사는 이를 다시 금융리스로 장부에 기표하고 PPA(Power Purchase Agreement)에 따라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함. 하지만, 세법상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기존의 세무처리(conventional approach)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즉, 세무상은 발전회사가 자산의 소유권을 보유하므로 자산의 매각거래가 없으며, 발전회사에서 감가상각도 인식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례로 이러한 규정의 미비 및 해석의 차이로 세무조사시 조사관이 매각거래와 감가상각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여 과세를 한 사례가 종종 있음.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소송에서 납세자가 승소한 케이스가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케이스도 있음.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과세로 케이스 및 관할세무서 별로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발전회사(또는 약정리스(embedded lease)를 포함하는 회사)는 세무조사시 위의 사항을 유의하고 전문가와 협의하여야 함. 또한, 송전 및 배전 설비의 경우 건설종료시 법적 소유권이 PLN으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발전설비와 회계 및 세무에 대한 처리가 다르므로 유의하여야 함. 최근 송전 및 배전 설비의 양도시 이에 대하여 PLN에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세무서가 결정한 사례가 있으니 이 점 또한 유의하여야 함

(*) 참고사항

1) 발전사업 기타 세무이슈
- 수입부가세 : 관세 관련 마스터리스트로 과세 여부 판단
-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탄소배출권) 판매 부가세 : 선판매 대금 수금 관련
- 부가세 대리 납부 : 컨설팅 대금 및 비용 해외 송금시
- 차입금 지급이자 과세 : ECA(Export Credit Agency)는 비과세, 네덜란드 은행 비과세, 나머지는 과세
- 주소지확인서(Certificate of Domicile) : 이자, 컨설티 비용 송금시 매년 징구
- 배당금 지급 : ECA도 과세, 25%이상 해외지분 10% (인도네시아 내국 법인주주 : 0%)
- 이전가격 과세 : OE(Owner's Engineering), TSA(Technical Service Agreement), 주주대여금 이자율

2) 금융비용 세금 정리

No	Description	Company	Country	Withhold	VAT	COD	Note
1	Loan Principal	KEXIM	Korea	-	-	NA	
		Commercial Bank	Japan	-	-	NA	
		Commercial Bank	Netherlands	-	-	NA	
		Commercial Bank	France	-	-	NA	
2	Interest (Financial firm)	KEXIM	Korea	-	-	Evidence	(*1)
		Commercial Bank	Japan	10%	-	DGT Form 2	
		Commercial Bank	Netherlands	-	-	DGT Form 2	(*2)
		Commercial Bank	France	10%	-	DGT Form 2	
3	Interest (Shareholders' loan/ Non-financial firm)	KEXIM	Korea	-	-	Evidence	(*3)
		Shareholder	Singapore	10%	-	DGT Form 1	
		Shareholder	Korea	10%	-	DGT Form 1	
		Shareholder	Indonesia	10%	-	-	
4	Hedging IDS (expense or Interest)	Commercial Bank	Netherlands	-	-	DGT Form 2	
		Commercial Bank	France	10%	-	DGT Form 2	
5	Agency Fee	Commercial Bank	France	-	10%	DGT Form 2	
		Commercial Bank	Indonesia	-	10%	-	

(*1) 한-인니 조세조약상 대한민국 정부가 자본을 전적으로 소유하는 은행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한국에서만 과세가 가능하며 인도네시아에서 이자비용 지급시 원천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또한,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조세조약에 명시된 정부소유 금융기관의 경우 DGT Form 2의 작성 및 제출의무도 면제됨

(*2) 네덜란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네덜란드의 금융기관은 차입기간이 2년 이상인 Loan에 대하여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됨.

(*3) 이자비용 이외에도 Up-front fee, Commitment fee 및 CPRG fee의 비용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는 명목과 상관없이 동일한 차입금 원금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이자비용과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함.

매도자	매각대상회사	적용 세법	적용세율	조세조약 적용시	구비서류
인도네시아 법인 주주	인도네시아 비상장회사	일반 법인세	처분이익의 25%	해당사항 없음	-
한국 법인 주주	인도네시아 비상장회사	Article 26조	매각대금의 5% 원천징수	0%	DGT Form 1
싱가폴 법인 주주	인도네시아 비상장회사	Article 26조	매각대금의 5% 원천징수	5%	-
모든 주주	인도네시아 상장회사	총 매각대금의 0.1%를 최종분리과세로 납부하여야 함 (*)			

(*) 동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창업주(Founder)는 상장시 시장가격의 0.5%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시 차익에 대하여 일반 과세 규정을 적용함.

36. 건설지사 과세 사례

(배경)
건설지사는 대표사무소임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하여 현지 로컬 건설업체와 Joint Operation("JO")를 수립하여야 하고 건설 용역의 종류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분리과세를 하게 됨. 한편, 세후 순이익에 대하여 지점세를 부담하여야 함.

(관련규정)
건설지사 관련 규정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음

내용	구 규정 (No.05/PRT/M/2010)	비고
JO 체결시점	간접수출 인정	반드시 입찰 전에 체결
JO 파트너 요건	불명확	인니 로컬 지분 65%이상으로 MoPW의 사전승인 필요
JO 파트너 업무 비중	100% 인니 로컬 지분 건설회사	• 건설시공 : 총 금액의 30% 이상 • 건설자문 : 총 금액의 50% 이상
건설지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규정 없음	구 규정에 • 건설시공 : Rp. 1천억 이상 • 건설자문 : Rp. 1백억 이상의 프로젝트
수행 지역	고위험, 하이테크 기술 및 고비용 건설 프로젝트	• 건설시공 : 총 금액의 50% 이상 인도네시아에서 수행 • 건설자문 : 100% 인도네시아에서 수행
지식 전수	규정 없음	지식 전수에 대한 요건 포함
경영진	규정 없음	건설지사의 이사, 감사 및 지사장은 다른 인도네시아 건설회사의 이사나 감사의 겸임이 금지

- 최종분리과세 소득세법 PPh 4.(2) 적용
  건설업은 소득세법 제4조 2항의 최종분리과세가 적용되며, 용역의 종류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음

구분	건설 시공	건설 설계	건설 감리
건설업 면허가 있는 경우	3% (*)	4%	4%
건설업 면허가 없는 경우	4%	6%	6%

(*) 건설 시공의 경우, 소규모 업체 면허를 받은 경우, 2%의 세율 적용.

건설업 또는 소규모 업체 면허는 인도네시아 건설협회(LPJK)에서 발행하는 라이센스(SBU)로 2개 이상의 건설업협회가 존재하며 현재 모든 건설업협회에서 발행한 라이센스를 인정하고 있음.

- Branch Profit tax (지점세)
  건설지사는 매출액에 대하여 최종분리과세되는 원천징수세액 이외에도 세후이익에 대하여 지점세를 납부하여야 함. 건설지사는 건설 매출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한 후, 기납부한 최종분리과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지점세로 납부함. 지점세 신고납부 시점은 법인세 신고납부 시점과 동일함. 단, 지점세 세율은 원래 20%이므로 10%로 경감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DGT 1 Form을 사전에 준비하여 세무신고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Joint Operation
  JO는 세무상 독립성 여부에 따라 Administrative JO(Profit Sharing)와 Non-Administrative JO(Revenue Sharing)으로 구분됨

  Administrative JO (Profit Sharing)
  JO가 별도의 납세자번호(NPWP)를 부여 받아 독립적인 세무상 납세주체가 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PKP)로 등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는 의무를 부담함. JO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정산한 후 세후순이익에 대하여 JO 약정에 따라 건설지사와 인니 로컬 건설업체에 배분하고, 공사프로젝트가 끝나는 경우 관련 JO를 청산하기 위하여 NPWP를 반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조사가 진행됨. 한편, 정부발주 공사의 경우 Administrative JO를 요구함

  Non-Administrative JO(Revenue Sharing)
  JO는 공사수주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만든 조직으로 별도의 납세자번호를 부여받지 않고 건설지사와 인니 로컬업체가 각각 세금납부의 주체가 됨

(주의 사항)
- 동등기술증명서(Sertifikat Penyetaraan)
  LPJK가 외국건설지사에 발행하는 동등기술증명서(Sertifikat Penyetaraan)는 시공능력에 대한 인증서로 최종분리과세 세율 적용 시 경감된 세율 적용과 무관하므로 주의가 필요
- 건설지사 부가가치세 환급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은 가능하며, 이를 위하여 납세자번호(NPWP)와 납세등록증(Surat Keterangan Terdaftar) 및 부가세과세등록증(Surat Pengukuhan Pengusaha Kena Pajak/PKP)를 발급받아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부가세과세등록증(PKP) 발급 이전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하며, 환급신청 시 세무조사가 수반되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수정신고가 불가능하므로 환급신청 전에 충분한 검토 후 신청이 필요함(세무조사 추징세액에 대하여는 미납세금에 대하여 100% 가산세 및 월 2% 지연이자-최대 24개월-이 부과됨).

한편, 부가세과세등록증(PKP) 발급 이전에 매출 발생 시 매출액의 2%가 매출부가세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프로젝트 일정에 맞춰 사전에 부가세과세등록증(PKP) 발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함

- 파견 임직원 급여 관련 소득세

  파견 임직원 급여 지급 시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에 따라 0~3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개인별로 납세자번호(NPWP)를 받아야 하며, 미발급 시 근로소득의 20%를 추가 납부하여야 함

- On-shore 및 Off-shore 계약 구분에 따른 과세

  일반적으로 건설시공계약(EPC) 시, 전체 프로젝트 금액에 대하여 최종분리과세 PPh 4.(2)가 이루어지나, 한국 본사와 인니 건설지사가 공통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Engineering 및 Procurement 등 Off-shore 부분을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Off-shore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한국 본사와 인니 건설지사가 Turn key로 계약을 하거나, On-shore 및 Off-shore계약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한국 본사가 수행한 Off-shore 거래금액에 대하여도 인니 소득세법 26조(PPh 26)을 적용하여 거래금액의 20%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37. 인도네시아 외환시장 안내

1) 일반적인 국제 외환시장의 특징

- 범세계적 시장 (one global market) : 규제의 완화(deregulation)와 정보통신 기술 발전으로 범세계적인 시장이 형성
- 24시간 시장 (24–hour market) :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지리적 시차로 인해 세계 주요 외환시장의 거래시간이 중복 연결됨으로서 24시간 외환거래가 가능
- 점두시장 (over-the-counter market) : 외환시장은 대부분 거래참가자들이 일정한 거래장소와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딜링머신, 메신져, 텔렉스, 전화 등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점두시장임.
- 미국달러화 기준시장 :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미 달러화가 대부분의 환율표시에 있어 기준이 됨.
- 제로섬 시장 (zero sum market) : 중앙은행의 개입 등의 변수를 제외한다면 외환시장은 제로섬으로 귀착. 즉 한 거래자가 이익 실현시 반대편 거래 상대방은 필연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손실이 발생.

2) 인도네시아 외환시장과 한국 외환시장의 비교

구분	한국 외환시장	인도네시아 외환시장
거래통화	USD/KRW	USD/IDR
개장시간	09:00 ~ 15:00(월-금)	이론적으로는 24시간(월-금)이나 오후 3시 이후에는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며, 뉴욕, 런던등 시장에서 NDF로 거래
현물환결제일	익익영업일(Value Spot)	
일일최대변동폭	상한가,하한가 없음	
거래단위	최소 1백만불, 5십만불 단위	일정한 기준은 없으나 통상 1백만불 단위로서 3~5백만불
거래참가자 및 거래중개자	시중은행, 외국은행 서울지점, 종금사, 서울외국환중개(주), 한국자금중개(주)	투자은행, 상업은행, 증권회사, 중앙은행 Over-the counter 및 broker

3) 세계 주요 외환시장

지역시장	주요국가	시간대 (서울기준)	거래 중심 통화	특징
동경 외환시장	일본 한국 싱가폴 홍콩	08시 ~ 17시	JPY, KRW, SG 및 기타아시아 통화(CNY, TWD, INR 등)	세계 3대 시장 수급 다양한 엔화의 상대적 안정적 움직임 아시아 통화의 주무대
런던 외환시장	영국 유럽	16시 ~ 익일 01시	EUR, GBP 등 G7 통화 및 동유럽 통화(HUF, RUB, PLN등)	동경외환시장과 시간대가 겹치며 세계 최대 거래시장 파운드화 및 유로화 활발한 움직임
뉴욕 외환시장	미국 라틴아메리카	20시 ~ 익일 05시	EUR, JPY 등 G7 통화 및 라틴아메리카 통화(BRL등)	런던 중식시간대를 이어받아 뉴욕시장 오전 8시 30분경의 경제지표에 의해 변동성 큰 움직임 형성 익일 동경시장에 영향을 미침
호주 외환시장	호주	익일 06시 ~ 익일 08시	AUD,NZD, JPY	뉴욕시장과 동경시장의 가교역할 정도 주말에 이벤트가 있었던 경우 동경 시장 개장 전 변동성이 클 때가 있음.

38. 인니중앙은행 외화정책 및 규정

1) 배경

- 민간 외채의 규모가 계속 증가 추세이며 과거 10년을 기준으로 보면, 해당 기간 동안 3배 정도 규모가 증가함 (2005년 말 543억불, 2014년09월 말 1,593억불). 동 금액 중 2014년 09월 기준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54.5% 임
- 인니 중앙 은행에서는 민간 외채가 Currency Risk, Liquidity Risk, Overleverage Risk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함. 특히,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currency risk)은 높은 편이며, 그 이유는 민간 외채는 사업 운영 활동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루피아를 벌어 외채를 갚기 때문임. 이외에도 유동성 리스크(liquidity risk)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임. 왜냐하면 단기 외채 비율과 금액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임. 부채비율 초과 리스크 (overleverage risk) 또한 계속 증가 추세로 수익에 비해 부채비율은 계속 증가함
- 외부적으로는 세계 통화 조절 정책(양적완화)이 종료되면 선진국들 특히 미국의 이자율 상승과 인니의 이머징마켓 국가들의 성장 둔화 그리고 국제시장에 공급하는 원자재의 낮은 가격이 인니 경제성장의 불투명한 주요 요소로 보고 있음. 이는 곧 외채 상환 능력의 약화 가능성을 보여줌

2) 목적

상기 세가지 리스크를 완화하여 인니 내 투자 활동 유지와 지속적 사업 활동 유지 지원하기 위함이고, 외채 지양 목적이 아니라 최소 헤징 비율, 최소 유동성 비율, 최소 신용등급을 충족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외화 관련 정책 및 규정

- 인니 중앙 은행은 비은행권의 기업들이 최소 헤징 비율, 최소 유동성 비율, 최소 신용등급을 충족하여 지속적 사업 활동 및 인니 내 투자 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고자 규정을 적용함.

구분	인니 중앙 은행 규정	규정 일자	내용
신규정	PBI 16/20/PBI/2014	14년10월28일	외채와 관련하여 헤징 비율, 유동성 비율, 신용평가 등급 관련 의무 적용
개정법	PBI 16/21/PBI/2014	14년12월29일	旣 20번 규정 폐지, 20번에 대한 보완 규정으로 21번 적용
세칙	SURAT EDARAN EKSTEM 16/24/DKEM	14년12월30일	21번 세부사항 규정
신규정	PBI 16/22/PBI/2014	14년12월31일	LLD 및 외채 관련 보고 방법 및 행정처벌 규정

- 보고기간
  ① 연중 : 매분기 종료 후 3개월 이내
  ② 기말 : 기말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기관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
  ③ 수정기간 : 상기 보고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단, 보고 지연으로 간주되며, 동 기간 이후에는 미보고로 간주됨.)
  ④ 보고 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보고 완료되어야 함.

- 처벌규정(22조)
  ① 허위불충분/허위보고 : 매 보고서에 대해 500,000 루피아의 행정벌금
  ② 보고지연 : 일 500,000 루피아, 최대 5,000,000 루피아까지 행정벌금, 경고장 발송 및 관련 기관/권한 기관에 통보
  ③ 미보고 : 10,000,000 루피아 행정벌금
  ④ 신용등급 미보고/지연 : 경고장 발송 및 관련 기관/권한 기관에 통보
  ⑤ 보고조사 : 법인에 근거 자료 요청 또는 법인에 직접 가서 조사
  법인의 감사인(회계법인)에 설명 요청. 인니 중앙 은행에서 지정한 측에 의한 조사 실시(법인에서는 인니 중앙 은행의 요청서를 받으면 최장 15근무일 내에 증명해야 함)

- 인니중앙은행 개정법(21조) 주요내용
  1. 외화부채의 정의
  거주자 채무가 비거주자에게 외국환 또는 루피아로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 외화 부채가 있는 비은행권의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본 법을 따라야 함. 의무 시행 해야 하는 것은 아래와 같음
  ① 헤징 비율
  ② 유동성 비율
  ③ 신용 등급 평가
  - 신용평가 부여등급 중 최소 BB- 등급 이상에 해당해야하며, 2년간 유효하고, 차입 서명 및 서류발행 시점부터 기산함. 익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기간 포함 최장 제출일의 익월 20일까지 보고되어야 함.
  - 모회사 차입금 또는 모회사 보증시 모회사 신용등급 사용가능
  - 신설회사의 경우 최장기 3년간 모회사 신용등급 사용가능
  - 예외사항
    Refinancing(추가차입금이 없거나 BI가 지정한 금액[현재는 USD 2Million or Refinancing 금액의 5%]이하일 경우)
    1. 아래에서 차입한 인프라 프로젝트 자금
    A. 차입금 전체 모두 국제 기구(bilateral / multilateral)
    B. 50%이상이 국제 기구로부터 형성된 신디케이트 차입
    C. 외채로 중앙 또는 지방 정부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차입
    D. 국제기구로부터 보증된 외채(bilateral / multilateral)
    E. 매입채무의 외화부채(trade credit)
    F. 기타 loan 등의 외화부채

2. 규정 주요내용 요약

구분	2015년 (1.1 ~ 12.31)	규정 일자	내용
최소 헤징 비율	만기 3개월 이하 : 20% 및 만기 3개월 초과 ~ 6개월 : 20%	만기 3개월 이하 : 25% 및	
최소 유동성 비율	만기 3개월 이하 : 50%	만기 3개월 초과 ~ 6개월 : 25%	
최소 신용 등급	없음	2016년01월01일부터 의무 적용	
의무 헤지 비율을 위한 헤지 거래	해외, 인니 은행 모두 거래 가능		인니 내 은행만 가능
행정 처벌(12조)	4분기부터 처벌 적용	규정에 맞게 처벌	

(*) 현재 시점에서는2017년 이후 규정만 유효하므로, 과거 규정은 법 제정 시점 기준의 참고 목적임.

- 예외조항

  헤징비율 : 장부 통화가 USD이고 수출 매출 비중이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초과할 것

3. 헤징 및 유동성 비율 계산

  1) 헤징 비율 계산(비은행권 기업들, 헤징은 인니에 있는 은행과 의무적으로 거래)

  헤징비율 = (외화자산 – 외화부채) x 최소의무비율(25% = 2016년 이후)

  Threshold = 100,000 USD

  수출 매출 비중이 50% 초과하고 인니재무부에서 장부 기준 통화를 USD로 승인받았을 경우 헤징 비율 적용 예외.

  2) 유동성 비율계산

  유동성 비율 = (외화자산 ÷ 외화부채) x 100%

  최소 의무비율 = 70%(2016년 이후)

  3) 헤징거래 예시

- 통화선도(forward) : 루피아로 USD 50,000 매입 거래 체결. 체결일 14년12월28일 & 만기도래일 15년04월03일

  → 외화자산 계산에 포함. 헤징비율 및 유동성 비율 계산에 포함

- 통화스왑(swap) : 루피아로 USD 10,000 매입 거래 체결. 체결일 15년02월20일 & 만기도래일 15년06월20일

  → 외화자산 계산에 불포함. 헤징비율 및 유동성 비율 계산에 포함

✓ 인니중앙은행 시행세칙(24조) 주요내용

1. 외화 자산

   1) 매출채권 : 마지막 분기에서 0 ~ 3 개월 기간 및 3개월 초과 ~ 6개월까지의 매출채권중 반품이 불가한 매출 성격(yang bersifat jual putus)을 의미함. 2015년 7월 1일 이전 계약이 체결된 거주자에 대한 외화매출채권은 외화자산으로 분류. 2015년 7월 1 일 이후로는 인도네시아 중앙 은행의 승인을 받은 거주자에 대한 전략적 인프라 프로젝트관련 매출채권만 외화자산으로 분류. 전략적 인프라 프로젝트 여부는 권한 기관 또는 부처의 증명서로 증빙 가능함.

   2) 재고자산 : 수출기업(전 회계연도의 수출수익이 총수익의 50%를 차지하는 기업에 해당)의 재고자산은 외화자산으로 분류 가능함. 재고자산의 경우 제품은 100%, 재공품 50%, 원재료 25% 비중으로 외화자산 계산에 포함.

   (단, 장비 또는 기기는 불포함.)

   3) 유가증권 : Market Price 가 형성되어 있고, 관찰(observable)될 수 있으며 손익을 통하여 적정가가 식별 가능한 카테고리를 의미하며 매각 가능하고 6개월 이하의 만기가 존재함(Hold to Maturity) 그리고 유가증권은 Debt Instrument, 즉 해외 국채 또는 사채 등 또는 equity instrument, 즉 해외 주식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주식, 외화 펀드 등을 포함함.

   4) 선물환/스왑/옵션거래 : 마지막 분기에서 0 ~ 3개월까지 만기 그리고 3개월 초과 6개월 만기를 의미함.

2. 외화부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모두 해당. 외국 통화로 지불 되거나 결제 되어야 하는 유동부채를 의미하며, 선물환/스왑/옵션거래에 따른 금액 역시 이에 포함됨. 마지막 분기에서 0 ~ 3 개월까지 만기 그리고 3개월 초과 6개월 만기를 의미함.

   rollover, revolving 또는 refinancing 으로 현재 진행중인 외화부채는 증빙서류등을 근기로 계산시 외화부채에서 제외 가능. 증빙 서류에는 채권자로부터의 rollover, revolving 또는 refinancing 중이라는 내용으로 계약서 관련 조항으로 뒷받침되어야 함

3. 최소헤징비율 : 현재 Threshold 는 USD 100,000 임

4. 신용등급평가 : 최소 BB- 이상 되어야 함.(인도네시아 – PEFINDO, Fitch, ICRA), 해외 – S&P, Fitch, Japan Credit Rating Agency, Rating and investment invormation inc.). 단, Moodys의 경우 Ba3 이상임

- 비금융권의 신규기업의 경우 신용등급과 관련하여 언급된 기업이 상업적 활동을 시작한 후로부터 최대 3년동안 모기업의 신용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 상업적 활동 시작 시점은 아래와 같음;

  a. 용역/서비스 분야의 경우, 용역을 처음으로 판매한 시기 및/또는 수입 발생 시점 또는

  b. 제조업 또는 상업 분야의 경우, 제품을 처음으로 판매한 시기 및/또는 수입 발생 시점

- 비은행권의 기업 설립과 관련하여 joint venture 일 경우, 대주주의 신용등급을 사용 가능함

✓ 인니중앙은행 규정(22조) 주요내용 – 중앙은행 보고에 대한 규정

- 3조

  1항 : 비은행권의 기업이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a. 헤징비율, 유동성비율, 신용등급에 대한 보고서(KPPK 보고서라 칭함)

b. 증명 프로세스를 거친 KPPK 보고서

c. 신용등급 충족 정보 및

d. 재무 보고서

2항 : 1항에서 의미하는 KPPK 보고서는 3개월 만기 및/또는 6개월 만기에 대한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자료를 포함함.

3항 : 1항의 b 에서 의미하는 증명 프로세스를 거친 KPPK 보고서는 독립된 공인 회계사에게 증명 프로세를 거쳐 평가된 보고서를 의미함

4항 : 신용등급 충족은 신용등급, 신용등급 시기, 신용 등급 평가 기관을 포함

5항 : 재무보고서란 회계 감사를 받지 않은 분기별 재무보고서 및 회계 감사를 받은 연말 회계 감사 보고서를 의미함

- 11조

헤징비율, 유동성비율, 신용등급에 대한 보고서(KPPK 보고서), 증명 프로세스를 거친 KPPK 보고서, 신용등급 충족 정보, 재무 보고서는 의무적으로 인니 중앙 은행에 온라인으로 제출함 (온라인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사전에 인니 중앙은행에 연락하여 회사가 KPPK 제출 대상 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온라인 등록을 위한 ID 및 최초 제출 시점에 대한 확인을 받도록 해야함).

회계 감사를 받지 않은 분기별 재무보고서는 보충 자료와 진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함.

재무보고서 기준 통화를 USD 로 사용하는 비은행권의 기업은 KPPK 보고서 근기/보충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함

KPPK 보고자는 의무적으로 기 보고한 KPPK 보고서에 대해, 독립된 공인 회계사를 이용하여 증명 프로세스를 거친 평가를 받아야 함.(4분기 보고서만 해당됨)

비은행권의 기업은 신규 외채 발생시 신용 등급 충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함

- 13조 ~ 16조

보고는 분기마다 함

최장 보고서 제출은 분기말 보고 후 3개월 말까지 시행 되야 하며, 수정기간을 포함하여 4 개월 말 까지 보고 되어야 함

3조4항 및 11조에서 의미하는 신용등급 보고는 외채 발행 또는 발생 시점, 계약서 서명 후 익월말까지 되어야 하며, 수정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제출일의 익월 20일까지 보고 되어야 함.

증명 프로세스를 거친 KPPK 보고서 및 연말 회계 감사 보고서는 최장 익년도 6월까지 보고 되어야 하고, 수정기간을 포함하여 익년도 7월 말까지 완료되어야 함

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보고 완료되어야 함

보고자가 기술상 문제로 인해 온라인으로 보고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익일까지 오프라인으로 인니 중앙 은행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적 문제 해결 후 온라인으로 보고해야 함

위의 정해진 기간을 지나서 인니 중앙 은행에 보고 완료된 경우, 지연 보고로 간주하고,

위의 정해진 기간 또는 이후에도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보고로 간주함

인니 중앙 은행은 보고된 자료에 대해 설명 및 자료 요청, 조사 실시 가능하며, 증명 프로세스를 거친 KPPK 보고서에 대해 평가를 한 공인 회계사/법인에 직접 설명 요청가능

보고자가 자료 제공, 설명 불가능 할 경우, 보고서가 올바르지 않다고 간주함

39. BI(중앙은행) 루피아 의무사용 규정

1. 규정요약

구분	내용
근거	2015.3.31일자 BI 규정(PBI no.17/3/PBI/2015)
목적	루피아 가치 안정화
(외국통화사용의 증가가 루피아 가치 하락을 지속 시키고 있음)	21번 세부사항 규정
대상	인도네시아 內에서 발생되는 모든 현금, 비현금 거래
시행일자	- 현금거래(Cash transaction) : 2015.03.31 - 비현금거래(Non-cash transactions) : 2015.07.01
주요내용	-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는 현금, 비현금 거래시 루피아 의무사용 (재정적 의무와 기타 지급거래에 대한 결제 포함) - 은행이체로 이행되는 지급의무(예: 학비, 상품이나 서비스 결제 등) - 비현금거래 : 신용카드, Debit 카드, ATM 카드, 전자머니, 자금이체 등 - 모든 사업주체들은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루피아로 표기

2. 예외조항

구분	내용
국제 무역 거래	1. 수출입 거래 ※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예: 항구 정박["ship docking"], 컨테이너 하역비 ["container loading/unloading"], 항구에 컨테이너 임시보관료 ["container temporary storage"] 와 항공 주차료, 등)은 루피아로 해야 함 2. 무역서비스 a. 국경 간 공급 ("cross boarder supplies") : 인터넷이나 콜센터를 통한 온라인 구매 (예 : 인터넷전화, 위성서비스 등) b. 해외소비 ("consumption aboard") : 내국인을 위한 해외 서비스(예: 해외유학생 학비 또는 재외국민의 해외치료비)
국가 세입/세출 관련 제거래	2. 외국통화표시 역내외 외화 대출 3. 외화상품 및 자본관련 지출 4. 국영기업 외화 수입 5. 기타 국가 수익과 지출 실행으로 발생되는 거래

은행 외화거래	1. 수출 및 기타활동을 위한 대출 2. 은행간 외환거래 3. 외화채권 및 후순위채 4. 외화 증권 거래
관련법(투자관련 중앙은행법 및 수출입은행법)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외화거래	해외투자자의 해외투자송금 및 투자이익금 회수 등 관련 아래 거래 a. 자본금 b. 이익, 은행 이자, 배당금 및 기타수익 등 c. 자재 및 기계 구매대금 d. 증자 대금 e. 채무 상환 f. 로열티 지급 g. 외국인 급여(7/1일 이전 작성된 계약서는 유효기간까지 유효) h. 사업상 손실과 기업인수 보상금 i. 기술지원, 경영.기술서비스, 프로젝트계약 및 지적재산권 관련 지급 j. 자산 매각 대금
기타	은행 외화표시 예금, 국가간 원조 거래, 외화표시 인도네시아 정부채권

3. 제재조치

구분	내용
현금거래/ 루피아거래 거절 금지 위반	-개인 : 1년이하 징역 및 벌금(2억루피아 또는 15천불) -법인 : 267백만루피아 또는 2만불 벌금 (사업면허 무효 또는 자산 압류 가능)
비현금거래 위반	<경고장> and <벌금 1%(거래금액), Max IDR10억 또는 77천불> and/or <지급거래 금지>
상품. 서비스 루피아가격 표기 위반	서면 경고
기타	-BI는 사업허가 취소 또는 사업활동 정지 등을 관련기관에 요청 가능. -외국인투자자들은 BKPM으로부터 사업허가 취소 될 수도 있음. -BI의 조사, 보고 요청시 당사자의 이행 의무

4. 관심사례(BI와의 Q&A)

1) 질문 : 외국인력의 임금은 루피아로 지급해야 하는지, 외화지급이 허용되는지?

답변 : 루피아화 의무사용 규정에 의하면, 인도네시아내의 외국인력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루피아로 지급되어야 함. 그러나, PBI 21조에 보면 이미 존재하거나, 2015년 7월 1일 이전에 만들어진 계약서에 외국통화를 표기해놓았을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외화지급이 가능함. 따라서, 회사에서 외화로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외국인력과의 계약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외화로 임금지급 가능함. 또한, 회사에서 외국인력의 루피아 계좌에 루피아로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외국인력과의 계약이 이미 있을지라도, 은행에서 외국통화로 환전하여 은행의 외국인력의 외화계좌로 입금이 가능함.

2) 질문 : 인도네시아 국토 내 서비스 또는 물품 구매 거래 시 루피아를 사용하나요? 외화 사용이 가능한지?

답변 : 루피아화 사용 의무화 PBI 에서는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의 원칙을 준수하며,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영토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는 의무적으로 루피아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이 PBI에서 예외사항으로 지정된 것이나 또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것은 제외)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 영토내의 제품/서비스 구매는 의무적으로 루피아화 사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상기의 경우 BI앞 문의결과, 외국인력의 임금지급과 마찬가지로 법시행 예정일인 7/1일 이전에 만들어진 계약서에 외국통화를 표기해 놓았을 경우 계약기간까지 외국통화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추가적인 문의는 BI(중앙은행) 콜센터(BI Call Center : 500-131 / 담당부서 : Money Mgt.)

40.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매입

1. 토지에 대한 기본 관념
   A. 토지공개념; 관습법(원주민의 권리 인정)
   B. 중앙정부의 관리: BPN(국토사무소; 중앙 및 각급 지방 국토사무소)

2. 토지 관련 권리의 종류
   A. Custom land(adat land): 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
   B. Certified land

구분	자격	의미/내용	기간	담보
HAK MILIK (소유권)	- 인도네시아 국적 개인 - 인도네시아 공기업	- 토지에 대한 가장 강한 권리이며 상속 가능 - 일반내국법인/외국인/외국인투자법인 등은 취득할 수 없음	- 제한 없음	은행 담보 가능
HGB (건축권)	- 인도네시아 국적 개인 - 인도네시아 법인[외국인투자법인포함]	- 토지 위에 건축 및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 HGB(Hak Guna Bangunan)가 설정될 수 있는 토지는 국유 토지(state land) 또는 HPL(토지관리권)이 설정된 토지, HAK MILIK(토지소유권)이 설정된 토지로 제한됨	- HGB가 국유 토지위에 설정되는 경우: 최초 30년, 이후 20년 연장 가능. 연장 종료 이후 30년 갱신 가능 - HGB가 HAK MILIK위에 설정되는 경우: 최초 30년, 연장 불가. 그러나 30년 갱신은 가능	은행 담보 가능

HAK PAKAI (토지사용권)	- 인도네시아 - 국적 개인 - 인도네시아 법인(외국인 투자법인 포함) - 정부 기관/ 지방자치정부기관 - 종교단체 - 인도네시아 거주 외국인 - 인도네시아에 사무소가 있는 외국 국가 또는 국제기구 단체	- 토지를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주로 외국 국가 또는 국제기구 단체에게 부여되는 토지 사용에 대한 권리 - Hak Pakai가 설정될 수 있는 토지는국유 토지(state land) 또는 Hak Milik이 설정된 토지로 제한됨	- HAK PAKAI가 국유토지 위에 설정된 경우: 최초 30년, 최대 20년 연장 가능 - HAK MILIK이 설정된 토지 위에 HAK PAKAI가 설정되는 경우 최대 25년이며 25년 갱신 가능함.	- 국유 토지에 설정된 토지 위에 설정하는 HAK PAKAI만 은행 담보로 제공 가능 - HAK MILIK이 설정된 토지 위에 HAK PAKAI를 설정하여 이를 은행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는 추가 확인 예정(기본적으로 물권적 권리이므로 담보설정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확인 필요)
HGU (경작권)	- 인도네시아 국적 개인 - 인도네시아 법인(외국인 투자법인포함	- 토지를 농업, 재배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최소 5Ha 이상의 면적이어야 함. - HGU가 설정될 수 있는 토지는 국유토지(state land)로 제한됨.	- 권리 기간은 25년이지만 필요에 따라 최대 35년까지 보유 가능. 보유 기간 종료 후, 25년 연장 가능	은행 담보 가능

- 기타
  i. 관리권/Right to Manage (Hak Pengelolaan/HPL)
  ii. 저당권/Mortgage (Hak Tanggungan)

3. 각 권리에 관한 개요

A. 소유권(Hak Milik)

소유권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자연인과 특수공법인에게만 허용되는 최상위 권리임. 인도네시아 국민이 국적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 1년 이내에 토지를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 소멸되고 국가에 귀속됨.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국민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로 토지를 양도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이와 같이 국가에 귀속된 토지는 경매를 통하여 처분됨.

토지소유권을 가진 자는 토지를 직접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유권에 기반하여 제3자에게 건축권 및 토지사용권을 부여할 수도 있음.

B. 건축권 (Hak Guna Bangunan)

건축권이란 타인 소유의 토지 상에 건물을 건축하고 소유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도네시아 국민,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둔 인도네시아 법인에게만 인정됨. 따라서 외국인이 투자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법인을 만들고 회사의 명의로 건축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실제 외국인 투자기업뿐 아니라 내국기업인 인도네시아 법인은 토지에 관한 권리 중 건축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편적임. 건축권을 취득할 경우, 해당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소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보까지 설정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것과 유사한 효력을 기대할 수 있음. 또한 건축권은 매매, 교환, 현물출자,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국유지에 대한 건축권의 유효기간은 최대 30년이나, 관할 지방 토지관리청에 신청하여 건축물의 상태에 따라 최대 20년의 연장이 가능하며 이후 갱신도 가능함. 기간 연장 또는 갱신은 건축권을 취득한 자가 예정된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건축권에 대한 자격요건 기준을 계속하여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연장 또는 갱신 시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 최소 2년 이내에 연장 또는 갱신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연장신청서는 토지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함. 이에 대한 특례로 투자법에 따라 투자시설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최장 총 80년으로 인정하고, 미리 일시에 50년 연장과 추가 30년의 갱신을 허용함.

C. 사용권(Hak Pakai)

사용권은 국가나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하거나 토지상의 수확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도네시아 국민,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자연인,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가진 인도네시아 법인, 외국법인이 인도네시아에 세운 대표사무소, 외국대표나 국제단체의 대표, 정부기관이나 지방기관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음. 사용권 보유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1년 내에 권리를 포기하거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권리를 양도하여야 함.

사용권의 유효기간은 30년까지 이나, 이후 최대 25년간 연장할 수 있음. 투자법에서는 이에 대한 특례를 두어 투자시설에 대한 토지사용권을 총 70년까지 인정하고, 미리 일시에 45년과 추가로 25년의 갱신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음.

D. 경작권(Hak Guna Usaha)

경작권은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농업, 어업,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도네시아 국민,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가진 인도네시아 법인에게만 인정됨. 외국인에게는 경작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외국인이 주주가 되어 자본금 10만불 정도의 소규모 현지법인을 만들고 회사의 명의로 경작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외국인이 정식으로 출자하여 인도네시아에 세운 법인은 인도네시아 법인으로 분류되어 토지의 경작권, 건축권 등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임.

경작권은 최대 35년까지 부여될 수 있으나, 이후 2차에 걸쳐 연장될 수 있음. 1차 연장 시에는 25년, 2차 연장 시에는 35년까지 연장이 가능함. 이에 대한 특례로, 투자법에 따르면 투자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미리 일시에 60년까지의 기간을 부여하고 추가로 35년의 갱신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최장 총 95년간 경작권을 부여 받는 것이 인정됨.

4. 외국 개인/법인의 토지 소유

A. 개인: HP only
B. 외국법인: HGU, HGB, HP = 내국법인과 차별 없음.

5. 건물에 대한 권리

-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만 항상 건물에 대한 별도로 등기부를 두는 것은 아님.
- 건물에 대한 소유권 증서 관리: 지방정부 관리
- 소유권 증서가 없을 경우 소유권 증명: IMB (건축허가) 등
- 구분소유권(strata title)

6. 외국인에 의한 아파트/주택 소유

- 토지에 대한 권리: HGB, HP
- 건물: 신축 건물에 한함
- 건물의 종류: 아파트 및 일반 주택
- 면적: 하위 규정 없음
- 수량: 하위 규정 없음.

41. HGB 연장에 대한 사례

(배경)
PT A는 인도네시아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HGB를 소유하고 있으며 최초 허가 기간이 30년이 종료함에 따라 이를 연장 신청하여 연장 허가를 득하였음.

(관련규정 및 사례)

1. HGU, HGB 및 Hak Pakai에 대한 규정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1996

   TENTANG HAK GUNA USAHA, HAK GUNA BANGUNAN DAN HAK PAKAI ATAS TANAH

   제 25조 : 최초 허가시 최장 30년 가능하며, 최장 20년 연장(perpanjang) 가능하며, 그 이후 다시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HGB 갱신(pembaharuan) 가능

   제 27조 : 허가기간 종료 2년 전 연장 혹은 갱신 신청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규정

   제 35조 : HGB 허가 취소사유(**)

2. 비용 관련

   PERATURAN MENTERI NEGARA AGRARIA/KEPALA BADAN PERTANAHAN NASIONAL Nomor 4 Tahun 1998(*)

   제5조

   (1) 최초

   - 200㎡ 이하 : 0% X 면적 X 기준금액
   - 200~600㎡ : 1% X 면적 X 기준금액
   - 600~2000㎡ : 2% X 면적 X 기준금액
   - 2000㎡ 이상 : 3% X 면적 X 기준금액

   ※ 기준금액은 기본적으로 NJOP, 최초 허가기간이 30년 미만인 경우 잔여기간 계산

   (2) 연장시에도 최초 허가 조건과 동일

   ※ 즉, 최초 허가시 기준금액을 적용하며, 현재 NJOP를 적용하지 않음

3. 신 규정 참조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5 TAHUN 2007

   TENTANG PENANAMAN MODAL

   제 22조 신규로 HGB 신청시 총 80년 가능 : 최초 50년 내 + 연장(perbarui) 30년 내

   (조언)

   - 회계규정 관련

   회계규정 : IASK 25 (interpretasi Standar Akuntansi Keuangan 25) Land Use Right

   인도네시아는 2011년 토지사용과 관련한 회계규정인 ISAK 25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2012년 1월 1일 부터 적용됨. 동 규정에 따르면, 토지사용권의 최초 취득과 관련된 법률 및 제반비용은 본 계정인 토지사용권과 동일하게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받아 토지로 회계처리하며, 토지사용권 연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무형자산(또는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여 토지의 내용연수와 실제 경제적 사용연수 중 짧은 연수를 적용하여 상각하여야 함. ISAK 25의 도입 이전에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토지사용권 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Deferred Asset 이라는 계정으로 계상하고 이를 상각하고 있었으나, 동 규정의 적용시에 Deferred Asset의 잔액을 일시에 토지로 계정을 변경하여 상각을 중단함.

- 연장비용 계산시 기준금액 적용과 관련

위에서 설명한 연장과 관련한 비용 계산시에는, 규정상 연장시점의 NJOP가 아닌 최초 취득 시점의 NJOP를 적용하도록 됨. 그러나 실제 사례에서는 30년 이전의 NJOP와 연장시점의 NJOP 비교시 토지가격 인상의 사유로 관할 부서에는 연장 시점의 NJOP를 적용하여 연장비용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회사는 위의 규정을 토대로 관할 부서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최초 취득 시점의 NJOP를 적용하여 연장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음. 약 30년 간의 토지의 NJOP 인상을 고려하면 두 금액의 차이는 매우 중대한 요소이므로 반드시 규정을 토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토지사용권 연장시 세금을 절감할 수 있길 바람.

- 토지사용권에 대한 회계처리

인도네시아 회계처리 기준은 토지사용권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토지와 같이 비한정 내용연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하지 않음. 그러나 IFRS적용시에는 토지사용권에 대한 회계처리가 각 회계법인별로 해석을 상이하게 하고 있어, 연결재무제표 작성시에 본사 회계감사인에 따라 회계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면, A회계법인은 최초 취득 기간만 상각, B회계법인은 최초 취득 기간 + 연장기간 동안 상각 및 C회계법인은 토지로 간주하여 회계처리 하고 있음. 동 사례에서는 본사 감사인은 토지로 간주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각 회사별로 본사와 회계처리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함.

42.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의 변경

1. 내 용

정부는 GR-34를 통하여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한 세율 변경 및 과세대상 거래의 범위를 확대함. 동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권리 매매 양해각서(PPJB)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에 포함되었으며, 양도소득세율은 기존 5%에서 2.5%로 변경함.동 GR-34는 2016년 8월 8일부터 적용됨.

2. 과세기준금액

거래 유형	과세 기준 금액
정부에 부동산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권한 있는 공무원에 의해 결정된 가격**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경매 의사록에 따른 금액**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권리 또는 PPJB를 양도하는 경우 – 신규	**공정가액 (수취하여야 하거나 획득했어야 하는 금액)**
제3자에게 부동산 권리 또는 PPJB를 양도하는 경우 - 신규	**실거래가액**
자산 스왑, 포기, 양도, 허가, 상속 또는 기타 합의된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 신규	**공정가액 (시장가치에 기초하여 수취하여야 하거나 획득했어야 하는 금액)**

(*) 부동산 개발업자가 저가주택 및 저가아파트를 제공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1%과세

(**) 합병/결합 등의 걸래에서 장부가액 합병승인을 받은 경우 및 BOT. BTO에 따른 건물의 양도 또는 정부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GR-34를 적용받지 아니함

3.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기존의 5%에서 2.5%로 인하하면서,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매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도 현행 5%에서 인하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음

43. 다자간금융정보교환(MCAA)

2. MCAA 협정 요약

○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에 의거
협정 서명국 간에 **조세관련 금융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상호 교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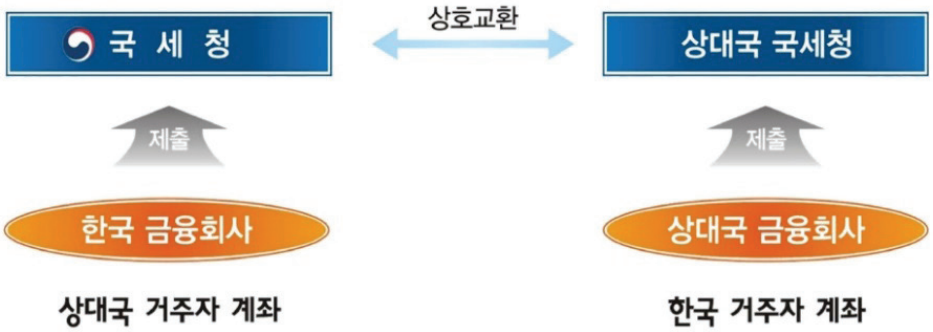

1. 추진 배경

○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전 세계 정부의 재정 위기 초래

○ 2008년 스위스 UBS 탈세 사건으로 역외 탈세에 이목 집중

○ 2010년 **미국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 발효** (FATCA)

○ 2010년 G20 재무장관 : 역외 탈세 공조,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체결**

○ 2013년 G20 정상회의 : 금융정보자동교환 합의

○ 2014년 **OECD 공통보고기준 마련 (CRS)**

○ 2014년 10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식 (MCAA)

2. MCAA 협정 요약

○ 금융기관이 **정보교환 표준모델(CRS)**에 따라 국세청에 전년도말 기준으로 보고한 금융계좌 정보를 **양국 국세청이 9월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

보고 대상 계좌	**개인**	◦ 모든 계좌
	법인	◦ (기존계좌) 2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 ◦ (신규계좌) 모든 계좌
보고대상 금융정보		◦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계좌잔액 등
보고대상 금융기관		◦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 정부기관,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정보교환 시기		◦ 전년도말 금융정보를 매년 9월까지 상호교환
금융계좌 소유자 식별		◦ 국적, 주소, 전화번호 등을 감안하여 식별

3. 보고 금융회사

○ **금융회사의 범위**

- **예금기관** : 은행업 또는 그와 유사한 예금을 수탁하는 단체
- **수탁기관** : 다른 이의 계좌를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한 단체 **(총 소득 20%)**
- **투자단체** : 단기 금융시장 상품거래, 포트폴리오 관리, 자금 투자·운용·관리 등의 활동을 고객을 위해/고객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단체 **(총 소득 50%)**
- **특정 보험회사** : 현금가치보험계약이나 연금계약을 발행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지급 의무가 있는 보험회사인 단체

* 국내 금융회사는 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금융회사로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지점은 포함되며 **금융회사의 해외 지점은 제외**

○ **비보고 금융회사** (실사 및 보고의무 면제)

- 정부단체, 국제기구, 한국은행, 공공기관, 퇴직펀드, 정부 단체 등의 연금펀드
- 면제 집합투자기구, 수탁자 자료제출형 신탁, 적격 신용카드발행인 등

4. 금융 계좌

○ **금융계좌의 범위**

- **예금계좌** : 예금·적금·부금 등의 계좌
- **수탁계좌** : 하나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다른 인(人)의 이익을 위한 계좌
- **자본지분 및 채무지분** : 금융회사의 자본 및 채무 지분, 조합 및 신탁의 지분
- **현금가치 보험계약, 연금계약**

○ **제외 계좌**

- 특정 저축계좌 : 퇴직계좌,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 특정 정기생명 보험계약
- 유산계좌
- 결제 위탁 계좌

5. 보고 금융 계좌

○ **보고 금융계좌**

- **금융계좌보유자**또는**수동적비금융단체의실질적지배자**가**보고대상인(人)인경우**
  즉, 보고대상 관할권의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 수동적 비금융단체 : 이자·배당 등 수동적 수입이 50% 이상인 단체

※ 실질적 지배자 : 단체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개인 (예 : 단체 지분의 25% 이상 보유)

※ 보고대상 인(人) : 보고대상 관할권의 세법에 의하여 거주자가 되는 개인
또는 단체 (**상장회사 및 계열회사**, 정부단체, 금융회사 등 제외)

※ 보고대상 관할권 :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

※ 세법상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6. 실사 절차

○ 실사절차

- 보고 금융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금융계좌 중에서 계좌보유자가 **보고대상 인(人)**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개인	기존계좌	소액	거주지 주소확인 (미국 제외) 전산기록 검토를 통해 추정정보 확인
		고액	전산·문서기록 검토를 통해 추정정보 확인 고객 담당자 확인 (미화 100만달러 초과 계좌)
	신규계좌		본인확인서
단체	기존계좌		규제목적상 또는 고객관리 목적상 관리되는 정보 확인 (미화 25만달러 초과 계좌)
	신규계좌		본인확인서

* 기존계좌 : 15.12.31 이전 개설, 신규 계좌 : 16.1.1 이후 개설

7. 보고 대상 정보

○ **보고대상 정보**

- **식별정보** : 계좌보유자의 이름, 주소, 거주지 관할권, 납세자번호, 생년월일
- **계좌정보** : 계좌번호, 보고 금융기관의 이름 및 식별번호
- **금융정보** : 연도말 계좌잔액, 계좌 해지 사실, 해당 계좌에서 지급되는 금액*

* 이자, 배당 총액, 수탁 계좌 보유 자산 관련 발생 소득, 금융계좌에 보유된 자산의 매각 또는 상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총 거래 가액, 금융회사가 계좌보유자에게 상환한 금액

○ **기타 규정**

- **계좌 잔액 합산** : 고객번호, 납세자번호 등을 기준으로 전산시스템 상 합산 가능한 범위에서 합산하는 것이 원칙
- **통화 환산** : 미화(매매기준율)로 합산가능, 미화 외 해당 통화로 보고 가능

8. 참여 국가 (16.7 기준)

<서명국(53)>	17년 시행국					
앵귈라	아르헨티나	바베이도스	벨기에	버뮤다	세이셸	산마리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불가리아	케이만제도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스웨덴	스페인
퀴라소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페로제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지브롤타	터크스케이커스제도	폴란드
그리스	그린란드	건지	헝가리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인도	아일랜드	맨섬	이탈리아	저지	영국	
대한민국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몰타	멕시코	몬세라트	네덜란드	니우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미서명국(2)>						
도미니카	트리니타드토바고					

<서명국(30)>	18년 시행국					
알바니아	안도라	앤티가바부다	아루바	호주	뉴질랜드	세인트키츠네비스
오스트리아	벨리즈	캐나다	칠레	중국	사모아	스위스
쿡아일랜드	코스타리카	가나	그레나다	**인도네시아**	러시아	세인트루시아
이스라엘	일본	말레이시아	마셜제도	모나코	신트마르턴	모리셔스
나우루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미서명국(16)>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브루나이	**홍콩**	바하마	우루과이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마카오	**싱가포르**	터키	레바논	쿠웨이트
파나마	바누아투					

9.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과의 비교 (FATCA)

항 목	FATCA	CRS
기존 개인계좌	US$ 5만 이하 제외 (보험 및 연금은 US$25만)	모두 보고
신규 개인계좌	US$ 5만 이하 예금·보험 제외	모두 보고
기존 단체계좌	'14. 6. 30. 25만 달러 초과시 보고, 후속연도 US$1백만 초과시 보고	'15. 12. 31.과 후속년도 US$25만 초과시 보고
신규 단체계좌	모두 보고	모두 보고
신규 계좌 기준일	'14. 6. 30.	'15. 12. 31.
거주지 주소검사	-	기존 개인 소액계좌 실사
해지계좌 보고	해지직전 잔액	해지사실
휴면계좌	보고	잔액 US$ 1천 이하 제외
납세자번호	기존계좌 17년 이후 의무	기존계좌는 의무 없음

10. 관련 법령

○ **한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 **인도네시아**

- 조세정보교환 절차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No. 125/PMK.010/2015 (PMK-125, 15.7.7)
- 인니 금융서비스위원회(OJK) 다자간조세정보교환협정 이행 규정
  No.25/POJK.03/2015(POJK-25, 15.12.11)

3

부 록

1 한-인니 조세협약

1988년 11월 10일 자카르타에서 서명
1989년 5월 3일 발효

제1조【인적범위】
이 협정은 일방 또는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제2조【대상조세】
1.이 협정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적용된다.
2.동산이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와 기업에 의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나 급여의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한국에 있어서는
(1)소 득 세
(2)법 인 세
(3)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인도네시아에 있어서는 소득세와 그러한 소득세에 규정된 범위까지의 법인세, 그리고 이자, 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조세
(이하 "인도네시아의 조세"라 한다)
4.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에 제3항에 언급된 조세에 추가하거나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그들 각자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통지한다.

제3조【일반적 정의】
1.이 협정에 있어서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아래의 용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가.(1)"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법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기타의 권리를 가지는 대륙붕의 일부 및 인접한 해양을 포함한다.
(2)"인도네시아"라 함은 인도네시아법에 규정된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영토와 국제법에 따라 인도네시아공화국이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기타의 권리를 가지는 대륙붕의 일부 및 인접한 해양을 포함한다.
나."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인도네시아를 의미한다.
다."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인도네시아의 조세를 의미한다.
라."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조세목적상 실체로 취급되는 다른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마."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
바."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사."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하며,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한 국 :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2)인도네시아 :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자."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지는 모든 개인

(2)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는 모든 법인, 조합 및 협회

2.일방체약국에 의한 이 협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 협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동 체약국의 법상의 의미를 가진다.

제4조【거주자】

1.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동 체약국에서 조세목적상 거주자로 취급되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서만 동 체약국내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체약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의 중심지).

나.동 개인이 중대한 이해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동 개인이 양체약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내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인은 그의 실질적인 경영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제5조【고정사업장】

1.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의미한다.

2."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경영장소

나.지 점

다.사 무 소

라.공 장

마.작업장 및

바.광산, 유전 또는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고정사업장"은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가.건축장소, 건설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 단 그러한 장소, 공사 또는 활동이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존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계속되는 조립 또는 설비공사

다.기업이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피고용인 또는 기업에 종사하는 다른 직원을 통하여 행하는 자문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제공, 단 그러한 성격의 활동이 12개월 중 어느 기간으로서 도합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그 국가내에서(동일한 또는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계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4.이 조 상기 제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보관 또는 전시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나.보관 또는 전시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다.타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라.그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여타 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5.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내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며 동인의 활동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동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된 사업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동 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일방체약국내에서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동 권한을 상시 행사하거나, 또는

나.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나, 그 기업을 대신하여 재화나 상품을 정규적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재화나 상품의 재고를 일방체약국내에 상시 보유하는 경우

6.재보험을 제외한 일방체약국의 보험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피고용인 또는 제7항의 의미에서의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 아닌 대표자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경우에, 그 보험기업은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7.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업이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들이 그들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동 기업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동 인은 이 항에서의 의미의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8.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방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제6조【부동산소득】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 광천과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권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된다.

제7조【사업이윤】

1.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판매되는 재화와 동일한 종류의 재화판매 혹은 고정사업장을 통한 활동과 동일한 사업거래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고정사업장이 소속된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이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되는 경비는, 그것이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어떠한 그러한 공제도 특허권 또는 기타 권리의 사용대가로서 사용료, 보수 또는 기타 유사한 지급금, 수용된 특수용역이나 경영에 대한 수수료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가 아닌 고정사업장에 대여된 금액에 대한 이자의 형태로 고정사업장이 그 기업의 본사에 지급하는 금액(실제 경비의 상환에 대한 것은 제외함)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허권 또는 기타 권리의 사용대가로서 사용료, 보수 또는 기타 유사한 지급금, 수행된 특수용역이나 경영에 대한 수수료,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가 아닌 기업의 본사 또는 다른 지사에게 대여된 금액에 대한 이자의 형태로 고정사업장이 그 기업의 본사 또는 다른 지사에 부과하는 금액(실제 경비의 상환에 대한 것은 제외함)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는다.

4.상기 제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5.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제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6.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영함으로써 취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공동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영위하는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관하여, 당해 기업은 인도네시아 기업인 경우에 한국의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제되고, 한국기업인 경우에는 이후에 인도네시아에서 부과될 수 있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유사한 어떤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9조【특수관계기업】

1.가.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동일인들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두 경우 중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는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일방기업의 이윤으로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되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일방체약국이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이 동 타방체약국기업에서 과세한 이윤을 포함시키고, 따라서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된 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이었다면 동 일방체약국기업에게 발생되었을 이윤인 경우에,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과세액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협정의 다른 조항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배당】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자본금의 최소한 25%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0%

나.기타의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5%

이 항의 규정은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법인에 대한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4.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5.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국내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6.이 협정의 다른 조항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의 이윤은 타방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동 타방국에서 추가적인 조세의 납세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부과되는 추가적인 조세는 타방체약국에서 부과되는 소득세 및 소득에 대한 다른조세를 공제한 후 그러한 이윤액의 1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7.이 조 제6항의 규정은 인도네시아 정부, 정부기구, 정부가 관련된 국영석유 및 가스회사 또는 정부의 기타 단체가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한국거주자와 체결한 석유 및 가스분야 또는 기타 광업분야에 관련된 생산분배계약 및 작업계약(또는 기타 유사한 계약)에 포함된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이자】

1.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중앙은행 또는 동 타방국정부에 의하여 전적으로 소유되는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이자,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중앙은행 또는 동 타방국정부에 의하여 전적으로 소유되는 금융기관에 의해 보증되거나 간접적으로 자금조달되는 채권에 대하여 동 타방국거주자가 취득하는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제3항의 목적상, "중앙은행"과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가.한국에 있어서는

(1)한국은행

(2)한국수출입은행

(3)한국외환은행

(4)양체약국 정부간에 때때로 합의되고 대한민국정부가 자본을 전적으로 소유하는 기타의 금융기관

나.인도네시아에 있어서는

(1)인도네시아은행 및

(2)양체약국 정부간에 때때로 합의되고 인도네시아정부가 자본을 전적으로 소유하는 기타의 금융기관

5.이 조에서 사용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나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 특히 국채, 공채 또는 사채 및 그러한 국채, 공채 또는 사채에 부수되는 할증금과 의외의 소득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그 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금전의 대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유사한 소득을 의미한다.

6.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국에서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7.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이자는 동 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8.이자의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액수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동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2조【사용료】

1.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액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용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 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사용료의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액수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3조【양도소득】

1.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다.

2.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의 양도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체약국내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의 양도(단독으로 또는 전체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국제운수에 운영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개인이 그의 활동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동 개인이 당해 역년중 총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개인이 그러한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거나 상기 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동 타방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의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거나 상기 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동 타방국내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서만 과세한다.

2."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만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 중 총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고,

나.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리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그 보수가 타방체약국내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이 조의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영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제16조【이사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1.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그러한 그의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그러한 활동이 수행되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활동이 양체약국의 정부간에 합의되는 문화교류를 위한 특별계획에 따라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연예인이나 체육인의 그러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소득이 양체약국의 정부간에 합의되는 문화교류를 위한 특별계획에 따라서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발생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다른 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소득은 동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18조【연금】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 과세한다.그러나 지급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연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된다.

제19조【정부기능】

1.가.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게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 과세한다.

나.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1)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단순히 그 용역수행만을 목적으로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가.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으로부터 그 국가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에 제공된 용역에 관하여 개인에게 지급된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4.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의 기관이 지급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한국의 경우 :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외환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 및 양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때때로 합의되는 정치적 성격 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정부 소유기관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도네시아은행, 인도네시아 개발은행, 국립저축은행 및 양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때때로 합의되는 정치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정부 소유기관

제20조【교수】

대학교, 대학, 학교 기타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일방체약국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단기간 방문하는 자로서 동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교수 또는 교사는 당해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보수와 관련하여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된다.

제21조【학생】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면서 교육 또는 훈련만의 목적으로 동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견습생 또는 사업훈련생이 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만의 목적을 위하여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일방체약국 국외로부터 주어지는 한, 동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22조【명확히 언급되지 아니한 소득】

1.이 협정의 상기 제조항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제6조 제2항에서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이외의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

1.한국 거주자의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제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인도네시아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가 또는 공제에 의하여 든가에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법과 이 협정에 따라서 납부되는 인도네시아의 조세(배당의 경우

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인도네시아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이 한국의 조세가 부과되는 전체 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제1항의 목적상 "납부할 인도네시아의 조세"라 함은, 이 협정의 서명일 현재 시행 중인 인도네시아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책과 관련되는 인도네시아의 법이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인 것으로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합의되는 한 동법의 수정이나 그에 추가하여 인도네시아에서 후에 도입될 수 있는 기타의 규정에 따라서, 배당에 대한 인도네시아 조세의 면제 또는 경감이 없었다면 인도네시아세법에 따라서 납부되었을 인도네시아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 항에서 언급되는 세액은 그러한 배당총액의 10퍼센트이다.

3.인도네시아의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가.인도네시아는 자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조세부과시 그러한 조세가 부과되는 과세표준에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항목을 포함시킬 수 있다.

나.인도네시아의 거주자가 한국으로부터 소득을 취득하고 동 소득이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경우에, 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는 동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인도네시아 조세에 대한 세액공제로서 허용된다. 그러나 동 세액공제 금액은 그 소득에 적정한 인도네시아조세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제3항의 목적상, "납부할 한국의 조세"라 함은, 이 협정의 서명일 현재 시행 중인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책과 관련되는 한국의 법이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인 것으로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합의되는 한 동법의 수정이나 그에 추가하여 한국에서 후에 도입될 수 있는 기타의 규정에 따라서, 배당에 대한 한국조세의 면제 또는 경감이 없었다면 한국세법에 따라 납부되었을 한국의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 항에서 언급되는 세액은 그러한 배당총액의 10퍼센트이다.

제24조【무차별】

1.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2.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3.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1인 또는 2인 이상의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4.이 조에서 "조세"라 함은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세를 의미한다.

제25조【상호합의절차】

1.어느 인이 일방체약국 또는 양체약국의 조치가 동인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그는 양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그의 문제가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동 문제는 이 협정에 제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권한있는 당국은 위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스스로 만족할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협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도달된 합의는 양체약국의 국내법

상의 어떤 시한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3.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상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양당국은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도 상호협의할 수 있다.

4.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기 제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직접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5.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 협정의 적용방법을 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으로부터 받는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 언급된 소득에 대한 조세구제 또는 면제를 얻기 위하여 동 타방국에서 준수하여야 할 요건을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정보교환】

1.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제규정을 시행하거나 사기 또는 탈세를 방지하거나 이 협정의 대상세법에 관련된 조세회피에 대한 법규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그와같이 교환되는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 징수, 강제집행 또는 소송이나 소원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과 그 정보와 관련되는 인 이외의 인 또는 당국(법원을 포함함)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2.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및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하에서나 통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교역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이나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27조【기타 규칙】

이 협정의 제규정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음에 대하여 현재 또는 이후에 동의되는 어떤 비과세, 면제, 공제, 세액공제 또는 기타 공제를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가.체약국의 일방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의 결정에 있어서 동 체약국의 법률

나.양체약국간의 경제적 또는 기술적 협력에 관련되는 기타 과세상 특별조치

제28조【외교관 및 영사관원】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9조【발효】

1.이 협정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되어야 한다. 이 협정은 비준서 교환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2.이 협정은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가.이 협정이 발효된 역년의 다음 역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이 협정이 발효된 역년의 다음 역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기타의 조세

제30조【종료】

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각 체약국은 비준서가 교환된 역년 5년 이후 어느 역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종료를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이 협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종료된다.

(1)종료통고가 행하여지는 역년의 다음 역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2)종료통고가 행하여지는 역년의 다음 역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기타 조세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국정부에 의해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88년 11월 10일 자카르타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2 Negative List

정부는 2016년 5월 18일로 발효되는 대통령령 No.44/2016("PR-44")을 통해 개정된 외국인 투자 제한 리스트("Negative List of Investment")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NLI 규정(즉, PR No.39 Year 2014/PR-39)은 폐지됨. 개정 NLI는 2016년 2월 경제조정청(Coordinating Minister for Economic Affairs)에서 발표한 10차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전역의 외국 및 국내의 투자를 증가시키고 국제 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며, 국가전략사업 및 인도네시아 중소기업(SMEs)을 보호할 목적도 가지고 있음 |
* Negative List 영문본은 BKPM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www.bkpm.go.id/en/investment-procedures/negative-investment-list

신규 개정된 NLI의 주요 내용

- 일부 공공사업, 무역, 창조경제 및 보건사업을 NLI에서 제외하여 100% 외국인 투자를 허용함.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업종은 외국인 지분 한도를 증가시켰으며, ASEAN 회원국에 여행산업과 운송업 분야 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투자제한 규정을 완화하였다.
- 고전압 전기, 전자상거래 및 특정 의료사업에 대해서 내국인 보호 규정을 철회하여,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동 산업도 외국인 투자가 가능해짐.
- 일부 업종에 대해서 관련 부처(대부분 농업 분야)로부터의 추천서 취득 요건을 면제하거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몇 개의 사업분야를 통합함(예: 어업 및 운송 분야의 특정 업종).
-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투자제한 업종을 추가하였으며, 건설분야의 도급금액 제한을 증가시키고, 일부 업종에 대하여 내국 중소기업과의 파너트쉽 규정을 추가하였음.
- 산호 채취 및 거래와 난파선에서 보물을 인양하는 업종은 국내 및 외국인 투자가 모두 금지됨.

특정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는 투자업종에 대한 예외
PR-44는 특정 요건을 만족하여야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 업종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NLI의 준수 예외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음.

- 간접투자 또는 국내자본시장에서 운용되는 포트폴리오를 통한 투자
- 특별 경제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투자 (중소기업 보호목적인 일부 업종 제외)

지분율 변동
PR-44는 합병, 취득 또는 결합 과정에서의 지분 변동시에도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PR-44는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자본금을 증자로 인하여 지분율이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에 외국인 투자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조부조항(기존 투자승인사항의 계속 적용)
PR-44에 규정되어 있는 업종별 투자제한은 이전 규정에 따라 투자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함.

개정내용 요약
외국인 직접 투자와 관련한 개정 NLI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A.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No.	Lines of Business	PR-39	PR-44
1	Geothermal power plants with capacity ≤ 10 MW	• 1MW 이하는 100% 국내 투자만 허용됨 • 소규모 발전소(1-10MW)는 외국인 투자 지분이 49%로 제한됨	외국인 투자 지분 67%로 제한
2	Production of pellet fuels	인도네시아 중소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	외국인 투자 지분 100% 허용
3	High and middle voltage electricity installation	외국인 투자가 제한됨(100% 국내 투자만 허용됨)	외국인 투자 지분 49%로 제한
4	Examining and testing electricity supply installations	외국인 투자가 제한됨(100% 국내 투자만 허용됨)	외국인 투자 지분 49%로 제한
5	Examining and testing high/ extra high voltage electricity utilization installations	외국인 투자가 제한됨(100% 국내 투자만 허용됨)	외국인 투자 지분 49%로 제한

B. Industry

No.	Lines of Business	PR-39	PR-44
1	Granulated sugar	외국인 투자가 제한됨(인도네시아 중소기업에게만 허용)	외국인 투자 지분 100% 허용. 단, 인도네시아 중소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이 필요함
2	Crumb rubber	외국인 투자가 제한됨(100% 국내 투자만 허용됨)	외국인 투자 지분 100% 허용. 단, 산업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C. Public Works

No.	Lines of Business	PR-39	PR-44
1	Toll roads	외국인 투자 지분 95%로 제한	외국인 투자 지분 100% 허용
2	Non-hazardous waste management	외국인 투자 지분 95%로 제한	외국인 투자 지분 100% 허용
3	Construction performance services with project values over IDR 50 billion	외국인 투자 지분 67%로 제한	외국인 투자 지분 67%로 제한 또는, ASEAN국가 투자자의 경우 70%로 제한
4	Construction consultancy services with project values over IDR 10 billion	외국인 투자 지분 55%로 제한	외국인 투자 지분 67%로 제한 또는, ASEAN국가 투자자의 경우 70%로 제한

D. Trade

No.	Lines of Business	PR-39	PR-44
1	Direct selling	외국인 투자 지분 95%로 제한	외국인 투자 지분 100% 허용
2	Department Store with area size 400 - 2,000 m2	외국인 투자가 제한됨 (100% 국내 투자만 허용됨)	외국인 투자 지분 67%로 제한 단, 쇼핑몰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무역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3	Retailer via post and internet	외국인 투자가 제한됨 (100% 국내 투자만 허용됨)	외국인 투자 지분 100% 허용. 단, 인도네시아 중소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이 필요함
4	Distributor affiliated with production	외국인 투자 지분 33%로 제한	외국인 투자 지분 100% 허용.
5	Distributor not affiliated with production	외국인 투자 지분 33%로 제한	외국인 투자 지분 67%로 제한
6	Warehouses	외국인 투자 지분 33%로 제한	외국인 투자 지분 67%로 제한

7	Cold storage	외국인 투자 지분 33%로 제한 (수마트라, 자바, 발리) 외국인 투자 지분 67%로 제한 (깔리만탄, 술라웨시, 누사뜽아라, 말라쿠 및 파푸아)	외국인 투자 지분 100% 허용
8	Survey/poll activities	외국인 투자가 제한됨 (100% 국내 투자) 또는 ASEAN국가 투자자의 경우 51%로 제한	외국인 투자가 제한됨(100% 국내 투자) 또는ASEAN국가 투자자의 경우 70%로 제한
9	Futures broker	외국인 투자 지분 95%로 제한	외국인 투자 지분 100% 허용

E. Tourism and Creative Economy

No.	Lines of Business	PR-39	PR-44
1	Private museums	외국인 투자 지분 51%로 제한	외국인 투자 지분 67%로 제한 또는, ASEAN국가 투자자의 경우 70%로 제한
2	Historical sites managed by private entities	외국인 투자 지분 51%로 제한	외국인 투자 지분 67%로 제한 또는, ASEAN국가 투자자의 경우 70%로 제한
3	Travel bureaus	외국인 투자 지분 49%로 제한 또는 51%로 제한(인도네시아 중소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경우)	외국인 투자 지분 67%로 제한 또는, ASEAN국가 투자자의 경우 70%로 제한
4	Restaurants	외국인 투자 지분 51%로 제한	외국인 투자 지분 100% 허용
5	Food (catering) services	외국인 투자 지분 51%로 제한	외국인 투자 지분 67%로 제한 또는, ASEAN국가 투자자의 경우 70%로 제한
6	Bars	외국인 투자 지분 49%로 제한 또는 51%로 제한(인도네시아 중소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경우)	외국인 투자 지분 100% 허용
7	Café	외국인 투자 지분 49%로 제한 또는 51%로 제한(인도네시아 중소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경우)	외국인 투자 지분 100% 허용
8	2-star hotels	외국인 투자 지분 51%로 제한	외국인 투자 지분 67%로 제한

No.	Lines of Business	PR-39	PR-44
9	1-star hotels	외국인 투자 지분 51%로 제한	외국인 투자 지분 67%로 제한
10	Non-star hotels	외국인 투자 지분 51%로 제한	외국인 투자 지분 67%로 제한
11	Motels	• 외국인 투자 지분 49%로 제한 또는 51%로 제한(인도네시아 중소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경우) • ASEAN국가 투자자의 경우 70%로 제한(지역이 자바, 발리인 경우)	외국인 투자 지분 67%로 제한 또는, ASEAN국가 투자자의 경우 70%로 제한
12	Billiard places	외국인 투자 지분 49%로 제한 또는 51%로 제한(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지분 67%로 제한 또는, ASEAN국가 투자자의 경우 70%로 제한
13	Bowling centres		
14	Swimming	중소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경우)	외국인 투자 지분 100% 허용
15	Soccer		
16	Tennis		
17	Fitness centres		
18	Sport centres and other sport activities		
19	Golf courses	• 외국인 투자 지분 49%로 제한 또는 인도네시아 중소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경우 51%로 제한 • ASEAN국가 투자자의 경우 100% 허용(지역이 자바, 발리 이외인 경우) 또는 70%로 제한(지역이 자바, 발리인 경우)	외국인 투자 지분 67%로 제한 또는, ASEAN국가 투자자의 경우 70%로 제한
20	Art impresario services	외국인 투자 지분 49%로 제한 또는 51%로 제한(인도네시아 중소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경우)	외국인 투자 지분 67%로 제한 또는, ASEAN국가 투자자의 경우 70%로 제한
21	Karaoke bars	외국인 투자 지분 49%로 제한 또는 51%로 제한(인도네시아 중소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경우)	외국인 투자 지분 67%로 제한

No.	Lines of Business	PR-39	PR-44
22	MICE (Meeting, Incentive, Conference, and Exhibition) services	외국인 투자 지분 51%로 제한	외국인 투자 지분 67%로 제한 또는, ASEAN국가 투자자의 경우 70%로 제한
23	Natural tourist attractions outside conservation areas	외국인 투자 지분 51%로 제한	외국인 투자 지분 67%로 제한
24	Film studio	외국인 투자 지분 49%로 제한	외국인 투자 지분 100% 허용
25	Film processing laboratories	외국인 투자 지분 49%로 제한	외국인 투자 지분 100% 허용
26	Film dubbing facilities	외국인 투자 지분 49%로 제한	외국인 투자 지분 100% 허용
27	Film printing or duplication facilities	외국인 투자 지분 49%로 제한	외국인 투자 지분 100% 허용
28	Film shooting facilities	외국인 투자가 제한됨(100% 국내 투자만 허용됨)	외국인 투자 지분 100% 허용
29	Film editing facilities	외국인 투자가 제한됨(100% 국내 투자만 허용됨)	외국인 투자 지분 100% 허용
30	Film subtitling facilities	외국인 투자가 제한됨(100% 국내 투자만 허용됨)	외국인 투자 지분 100% 허용
31	Film production	외국인 투자가 제한됨(100% 국내 투자만 허용됨)	외국인 투자 지분 100% 허용
32	Movie theatre	외국인 투자가 제한됨(100% 국내 투자만 허용됨)	외국인 투자 지분 100% 허용
33	Recording studio (cassettes, VCDs, DVDs)	외국인 투자가 제한됨(100% 국내 투자만 허용됨)	외국인 투자 지분 100% 허용
34	Film distribution	외국인 투자가 제한됨(100% 국내 투자만 허용됨)	외국인 투자 지분 100% 허용

F. Tourism and Creative Economy

No.	Lines of Business	PR-39	PR-44
1	International sea transportation for passengers and goods (excluding cabotage)	ASEAN국가 투자자의 경우 60%로 제한	ASEAN국가 투자자의 경우 70%로 제한
2	Port facilities (jetty, building, cargo, handling terminal, liquid and dry bulk terminals, Ro-Ro terminal)	외국인 투자 지분 49%로 제한 또는 민간투자사업(공공기관-민간기관 파트너쉽)인 경우 95%로 제한	외국인 투자 지분 49%로 제한. 단, 최저 투자금에 대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3	Salvage services and/or underwater works	외국인 투자 지분 49%로 제한	외국인 투자 지분 100% 허용 단, 무역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4	Terminal supporting businesses	외국인 투자 지분 49%로 제한	외국인 투자 지분 67%로 제한
5	Air transportation supporting services	외국인 투자 지분 49%로 제한	외국인 투자 지분 67%로 제한
6	Airport related services	외국인 투자 지분 49%로 제한	외국인 투자 지분 67%로 제한
7	Maritime cargo handling services	외국인 투자 지분 49%로 제한 또는, ASEAN국가 투자자의 경우 60%로 제한	외국인 투자 지분 67%로 제한 또는, ASEAN국가 투자자의 경우 70%로 제한
8	Transportation management services	외국인 투자 지분 49%로 제한	외국인 투자 지분 67%로 제한
9	Air cargo expedition services	외국인 투자 지분 49%로 제한	외국인 투자 지분 67%로 제한
10	General sales agent for foreign airlines	외국인 투자 지분 49%로 제한	외국인 투자 지분 67%로 제한
11	Management of crossing ports	정부가 지정한 회사와의 파트너십	외국인 투자 지분 49%로 제한
12	Management of river and lake ports	정부가 지정한 회사와의파트너십	외국인 투자 지분 49%로 제한
13	Land transportation for passengers	외국인 투자가 제한됨(100% 국내 투자만 허용됨)	외국인 투자 지분 49%로 제한

G. Communication and Informatics

No.	Lines of Business	PR-39	PR-44
1	Telecommunication network providers	외국인 투자 지분 65%로 제한	외국인 투자 지분 67%로 제한
2	Telecommunication services	외국인 투자 지분 49%로 제한	외국인 투자 지분 67%로 제한
3	Integrated telecommunication network and services	외국인 투자 지분 65%로 제한	외국인 투자 지분 67%로 제한
4	Telecommunication equipment testing laboratories	외국인 투자 지분 95%로 제한	외국인 투자 지분 100% 허용
5	Sales via electronic platforms (marketplace, daily deals) with investment value ≤ IDR 100 billion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 실무적으로 외국인 100% 투자가 가능하였음	외국인 투자 지분 49%로 제한

H. Health

No.	Lines of Business	PR-39	PR-44
1	Raw pharmaceutical materials industry	외국인 투자 지분 85%로 제한	외국인 투자 지분 100% 허용
2	Business management consultancy services or hospital management services	외국인 투자 지분 67%로 제한	외국인 투자 지분 100% 허용
3	Healthcare equipment testing	외국인 투자 지분 49%로 제한	외국인 투자 지분 67%로 제한
4	Pest control services	외국인 투자가 제한됨(100% 국내 투자만 허용됨)	외국인 투자 지분 67%로 제한
5	Medical evacuation and ambulatory	외국인 투자가 제한됨(100% 국내 투자만 허용됨)	외국인 투자 지분 67%로 제한

No.	Lines of Business	PR-39	PR-44
6	Hospitals	• 외국인 투자 지분 67%로 제한 (인도네시아 전 지역) • ASEAN국가 투자자의 경우 70%로 제한 (마카사르, 마니도를 제외한 동부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지분 67%로 제한 또는, ASEAN국가 투자자의 경우 70%로 제한 해당 업종은 마카사르, 마나도를 제외한 동부 인도네시아에서 적용 가능함
7	Other hospital services (mental rehabilitation clinics)	외국인 투자 지분 67%로 제한	외국인 투자 지분 67%로 제한
8	Specialized medical clinics	• 외국인 투자 지분 67%로 제한 (인도네시아 전 지역) • ASEAN국가 투자자의 경우 70%로 제한 (마카사르, 마니도를 제외한 동부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지분 67%로 제한 또는, ASEAN국가 투자자의 경우 70%로 제한 해당 업종은 마카사르, 마나도를 제외한 동부 인도네시아에서 적용 가능함
9	Specialized dental clinics		
10	Specialized nursing clinics	• 외국인 투자 지분 49%로 제한 (인도네시아 전 지역) • ASEAN국가 투자자의 경우 51%로 제한 (마카사르와 마나도의 경우) 또는 70%로 제한 (마카사르, 마니도를 제외한 동부 인도네시아)	
11	Medical equipment lease	외국인 투자 지분 49%로 제한	외국인 투자 지분 100% 허용
12	Laboratory clinic, medical check-up clinic	외국인 투자 지분 67%로 제한	외국인 투자 지분 100% 허용
13	Healthcare equipment supplier	외국인 투자 지분 33%로 제한	외국인 투자 지분 49%로 제한. 단, 보건부로부터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14	Class A healthcare equipment industry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 실무적으로 외국인 100% 투자가 가능하였음	외국인 투자 지분 33%로 제한. 단, 보건부로부터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15	Class B, Class C, and Class D healthcare equipment industries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 실무적으로 외국인 100% 투자가 가능하였음	외국인 투자 지분 100% 허용 단, 보건부로부터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16	Stem cell banks and laboratories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 실무적으로 외국인 100% 투자가 가능하였음	외국인 투자 지분 100% 허용 단, 보건부로부터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I. Other business sectors

No.	Sector	Lines of Business	PR-39	PR-44
1	Finance	Credit guarantee company	외국인 투자 지분 100% 허용	외국인 투자 지분 30%로 제한
2	Manpower and Transmigration	Work training (including non-formal education)	외국인 투자 지분 49%로 제한	국인 투자 지분 67%로 제한

*** 인도네시아 국세청 홈페이지 www.pajak.co.id에서 다운로드 가능**

Lampiran I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Pajak
Nomor: PER- 61/PJ/2009
Tanggal: 5 November 2009

MINISTRY OF FINANC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DIRECTORATE GENERAL OF TAXES

CERTIFICATE OF DOMICILE OF NON RESIDENT FOR INDONESIA TAX WITHHOLDING (FORM – DGT 1)

Guidance:

This form is to be completed by a person (which includes a body of person, corporate or non corporate):

- who is a resident of a country which has concluded a Double Taxation Convention (DTC) with Indonesia; and
- who claims relief from Indonesia Income Tax in respect of the following income earned in Indonesia (dividend, interest, royalties, income from rendering services, and other income) subject to withholding tax in Indonesia.

Do not use this form for:

- a banking institution, or
- a person who claims relief from Indonesia Income Tax in respect of income arises from the transfer of bonds or stocks which traded or registered in Indonesia stock exchange and earned the income or settled the transaction through a Custodian in Indonesia, other than interest and dividend.

All particulars in the form are to be properly furnished, and the form shall be signed as completed. This form must be certifi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tax office in the country where the income recipient is a taxpayer resident before submitted to Indonesia withholding agent.

NAME OF THE COUNTRY OF INCOME RECIPIENT : _____(1)

Part I	**INCOME RECIPIENT:**	**INDONESIA WITHHOLDING AGENT:**	
Tax ID Number	:_____ (2)	Tax ID Number	:_____ (5)
Name	:_____ (3)	Name	:_____ (6)
Address	:_____ (4)	Address	:_____ (7)

Part II: DECLARATION BY THE INCOME RECIPIENT:

I, (full name) _____ (8) hereby declare that I have examined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is form and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it is true, correct, and complete. I further declare that □ I am □ this company is not an Indonesia resident taxpayer. (Please check the box accordingly)

_____(9)	__/___/___(10)	_____(11)	_____(12)
Signature of the income recipient or individual authorized to sign for the income recipient	Date (mm/dd/yy)	Capacity in which acting	Contact Number

Part III CERTIFICATION BY COMPETENT AUTHORITY OR AUTHORIZED TAX OFFICE OF THE COUNTRY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ax relief, it is hereby confirmed that the taxpayer mentioned in Part I is a resident in _____(13)*[name of the state]* within the meaning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Double Taxation Convention concluded between Indonesia and _____(14) *[name of the state of residence]*.

_____(15)
Name and Signature of the Competent Authority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tax office

_____(16)
Capacity/designation of signatory

Official Stamp (if any)

Date (mm/dd/yyyy): __/___/_____(17)

Office address:
_____(18)
_____

This form is available and may be downloaded at this website: http://www.pajak.go.id

This certificate is valid for 12 (twelve) months commencing from the date of certification.

Page 1

Part IV TO BE COMPLETED IF THE INCOME RECIPIENT IS AN INDIVIDUAL

1. Name of Income Recipient : _____ (19)
2. Date of birth (mm/dd/yyyy) : __/__/____ (20) | 3. Are you acting as an agent or a nominee? □ Yes □ No *) (21)
4. Full address: _____
_____ (22)
5. Do you have permanent home in Indonesia? □ Yes □ No *) (23)
6. In what country do you ordinarily reside? _____ (24)
7. Have you ever been resided in Indonesia? □ Yes □ No*) If so, in what period? __/___/____ to __/__/____(25)
   Please provide the address _____
8. Do you have any office, or other place of business in Indonesia? □ Yes □ No *) (26)
   If so, please provide the address _____

Part V TO BE COMPLETED IF THE INCOME RECIPIENT IS NON INDIVIDUAL

1. Country of registration/incorporation: _____(27)
2. Which country does the place of management or control reside? _____(28)
3. Address of Head Office:_____(29)
   _____
4. Address of branches, offices, or other place of business in Indonesia (if any): _____(30)
   _____
5. Nature of business (i.e. Pension Fund, Insurance, Headquarters, Financing) (31)
6. The company is listed in stock market and the shares are regularly traded. □ Yes □ No *)
   If yes, please provide the name of the stock market: _____ (32)
7. The creation of the entity and/or the transaction structure is not motivated by reasons to take advantage of benefit of the DTC. (33) □ Yes □ No*)
8. The company has its own management to conduct the business and such management has an independent discretion. (34) □ Yes □ No*)
9. The company employs sufficient qualified personnel. (35) □ Yes □ No*)
10. The company engages in active conduct of a trade or business. (36) □ Yes □ No*)
11. The earned income is subject to tax in your country. (37) □ Yes □ No*)
12. No more than 50 per cent of the company's income is used to satisfy claims by other persons (i.e. interest, royalties, other fees) (38) □ Yes □ No*)

Part VI: INCOME EARNED FROM INDONESIA IN RESPECT TO WHICH RELIEF IS CLAIMED

1. Dividend, Interest, or Royalties:

a. Type of Income: _____(39)

b. Amount of Income liable to withholding tax under Indonesian Law: IDR _____(40)

2. Income from rendering services (including professional):

a. Type of incomes: _____(41)

b. Amount of Income liable to withholding tax under Indonesian Law: IDR _____(42)

c. Period of engagement (mm/dd/yy): (43)

►From: ___/___/_____ to ___/___/_____ ►From: ___/___/_____ to ___/___/_____

►From: ___/___/_____ to ___/___/_____ ►From: ___/___/_____ to ___/___/_____

3. Other Type of Income:

a. Type of incomes: _____(44)

b. Amount of Income liable to withholding tax under Indonesian Law: IDR _____(45)

This form is available and may be downloaded at this website: http://www.pajak.go.id

**) Please check the appropriate box*

I declare that I have examined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is form and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it is true, correct, and complete.

_____	___/___/___	_____	_____
Signature of the income recipient or individual authorized to sign for the income recipient	Date (mm/dd/yy)	Capacity in which acting	Contact Number

INSTRUCTIONS
FOR CERTIFICATE OF DOMICILE OF NON RESIDENT
FOR INDONESIA TAX WITHHOLDING (FORM – DGT 1)

Number 1:
Please fill in the name of the country of income recipient.

Part I Information of Income Recipient:

Number 2:
Please fill in the income recipient's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n country where the claimant is registered as a resident taxpayer.

Number 3:
Please fill in the income recipient's name.

Number 4:
Please fill in the income recipient's address.

Number 5:
Please fill in the Indonesia withholding agent's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Number 6:
Please fill in the Indonesia withholding agent's name.

Number 7:
Please fill in the Indonesia withholding agent's address.

Part II Declaration by the Income Recipient:

Number 8:
In case the income recipient is not an individual this form shall be filled by the management of the income recipient. Please fill in the name of person authorized to sign on behalf the income recipient. If the income recipient is an individual, please fill in the name as stated in Number 3.

Number 9:
The income recipient or his representative (for non individual) shall sign this form.

Number 10:
Please fill in the place and date of signing.

Number 11:
Please fill in the capacity of the claimant or his representative who signs this form.

Number 12:
Please fill in the contact number of person who signs this form.

Part III Certification by Competent Authority or Authorized Tax Office of the Country of Residence:

Number 13 and 14:
Please fill in the name of country where the income recipient is registered as a resident taxpayer.

Number 15 and 16
The Competent Authorities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tax office should certify this form by signing it. The position of the signor should be filled in Number 16.

Number 17:
Please fill in the date when the form is sign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tax office.

Number 18:
Please fill in the office address of the Competent Authority or authorized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tax office.

Part IV to be completed if the Income Recipient is an Individual:

Number 19:
Please fill in the income recipient's full name.

Number 20:
Please fill in the income recipient's date of birth.

Number 21:
Please check the appropriate box. You are acting as an agent if you act as an intermediary or act for and on behalf of other party in relation with the income source in Indonesia. You are acting as a nominee if you are the legal owner of income or of assets that the income is generated and you are not the real owner of the income or assets.

Number 22:
Please fill in the income recipient's address.

Number 23:
Please check the appropriate box. If your permanent home is in Indonesia, you are considered as Indonesian resident taxpayer according to the Income Tax Law and if you receive income from Indonesia, the Double Tax Conventions shall not be applied.

Number 24:
Please fill the name of country where you ordinarily reside.

Number 25:
Please check the appropriate box. In case you have ever been resided in Indonesia, please fill the period of your stay and address where you are resided.

Number 26:
Please check the appropriate box. In case you have any offices, or other place of business in Indonesia, please fill in the address of the offices, or other place of business in Indonesia.

Part V To be Completed if the Income Recipient is non Individual:

Number 27:
Please fill in the country where the entity is registered or incorporated.

Number 28:
Please fill in the country where the entity is controlled or where its management is situated.

Number 29:
Please fill in the address of the entity's Head Office.

Number 30:
Please fill in the address of any branches, offices, or other place of business of the entity situated in Indonesia.

Number 31:
Please fill in the nature of business of the claimant.

Number 32-38:
Please check the appropriate box in accordance with the claimant's facts and circumstances.

Part VI for Income Earned from Indonesia in Respect to which relief is claimed:

Number 39:
Please fill in the type of income (e.g. dividend, interest, or royalties).

Number 40:
Please fill in the aggregate amount of Income liable to withholding tax under Indonesian Law within a period of month (Tax Period).

Number 41:
Please fill in the type of income from rendering services (including professional).

Number 42:
Please fill in the aggregate amount of Income liable to withholding tax under Indonesian Law within a period of month (Tax Period).

Number 43:
In case your income is arising from rendering service, please fill in the period when the service is provided.

Number 44:
Please fill in the other type of income.

Number 45:
Please fill in the amount of Income liable to withholding tax under Indonesian Law.

*** 인도네시아 국세청 홈페이지 www.pajak.co.id에서 다운로드 가능**

FORM **1771**

MINISTRY OF FINANC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DIRECTORATE GENERAL OF TAXES

ANNUAL INCOME TAX RETURN FOR CORPORATE

ATTENTION
- FOLLOW INSTRUCTIONS
- PRINT OR TYPE WITH CAPITAL LETTER OR BLACK INK
- MARK "X" ☐ IN THE APPROPRIATE BOX

TAXABLE YEAR 2 0 ☐ ☐

☐ ...AMENDED RETURN

IDENTITY

T I N :
TAXPAYER'S NAME :
BUSINESS CLASIFICATION : KLU :
TELEPHONE NUMBER : - FACSIMILE NO. -
ACCOUNTING PERIOD : to
FOREIGN DOMICILE OF HEAD OFFICE (Permanent Establisment only) :

FINANCIAL STATEMENT : ☐ AUDITED ☐ AUDIT OPINION ☐ UNAUDITED
NAME OF PUBLIC ACCOUNTANT FIRM :
TIN OF PUBLIC ACCOUNTANT FIRM :
NAME OF CPA :
TIN OF CPA :
NAME OF TAX CONSULTANT FIRM :
TIN OF TAX CONSULTANT FIRM :
NAME OF TAX CONSULTANT :
TIN OF TAX CONSULTANT :

*) The filling of coloumns of Rupiahs must be without decimal value (see example in Intructions page. 3)

(1)	(2)	IDR *) (3)
A. TAXABLE INCOME	1. FISCAL NET INCOME (Copy from Form 1771-1 line 8 column 3).....	1
	2. FISCAL LOSS CARRIED FORWARD (Copy from Special Attachment 2A Total of Column 8)	2
	3. TAXABLE INCOME (1 - 2)	3
B. INCOME TAX DUE	4. INCOME TAX DUE (Choose one of these Rates according to Taxpayer criteria. See Instructions) a. ☐ Tax Rate Article 17 paragraph (1) letter b X line 3 ..... b. ☐ Tax Rate Article 17 paragraph (2b) X line 3..... c. ☐ Tax Rate Article 31E paragraph (1) (see instructions)	4
	5. ADJUSTMENT FOR FOREIGN TAX CREDIT REFUNDED THAT HAD BEEN CREDITED IN THE PREVIOUS YEAR'S RETURN (Income Tax Art.24)	5
	6. TOTAL TAX DUE (4 + 5)	6
C. TAX CREDITS	7. INCOME TAX BORNED BY THE GOVERNMENT (Foreign Aid Project)	7
	8. a. DOMESTIC TAX CREDIT (Copy from Form 1771-III Total of Column 6)	8a
	b. FOREIGN TAX CREDIT (Copy from Special Attachment 7A Total of column 8)	8b
	c. TOTAL (8a + 8b)	8c
	9. a. ☐ TAX DO AFTER CREDIT b. ☐ TAX OVERLY WITHHELD (6 - 7 - 8c)...	9
	10. PREPAID TAX : a. MONTHLY INSTALLMENT TAX ARTICLE 25.....	10a
	b. NOTICE OF TAX COLLECTION (Principal only.....	10b
	c. TOTAL (10a + 10b)	10c
D. INCOME TAX UNDER/OVER PAID	11. a. ☐ UNDERPAID TAX (INCOME TAX ARTICLE 29) b. ☐ OVERPAID TAX (INCOME TAX ARTICLE 28A) (9 - 10c)	11
	12. UNDERPAID TAX ON NUMBER 11.a SETTLED ON.....	DATE ☐☐ MONTH ☐☐ YEAR ☐☐☐☐
	13. OVERPAID AMOUNT STATED IN 11.b WOULD BE : a. ☐ REFUNDED b. ☐ COMPENSATED WITH OUTSTANDING TAX PAYABLE Refund for a Taxpayer with Certain Criteria only : ☐ Preliminary Refund (Tax Law on Article 17C or 17D)	

F.1.1.32.14

(1)	(2)	IDR (3)
E. MONTHLY INSTALLMENT OF ART.25 FOR CURRENT YEAR	14. a. INCOME BASE FOR CALCULATION OF MONTHLY TAX INSTALLMENT	14a
	b. FISCALL LOSS CARRIED FORWARD : (From Special Attachment 2A Total of Column 9)	14b
	c. TAXABLE INCOME (14a - 14b)	14c
	d. TAX DUE (Tax Rate from Part B line 4 X 14c)	14d
	e. WITHOLDING TAX PAID BASED ON NUMBER 14a	14e
	f. INCOME TAX MUST BE PAID (14d - 14e)	14f
	g. INCOME TAX ARTICLE 25 : (1/12 x 14f)	14g
F.FINAL TAX AND NON-TAXABLE INCOME	15. a. FINAL TAX : (From Form 1771-IV Total Part A Column 5)	15a
	b. NON-TAXABLE INCOME : GROSS INCOME (From Form 1771-IV Total Part B of Column 3)	15b
G. STATEMENT OF TRANSACTION IN RELATED PARTIES	16. a. ☐ There is a Transaction in Related Parties and/or with Tax Haven Country Resident (Compulsory to submit Special Attachment 3A, 3A-1. and 3A-2 Manual Book of Annual Return)*	
	b. ☐ There is not a Transaction in Related Parties and/or with Tax Heaven Country Resident.	
H. ATTACHMENTS	17. OTHER THAN FORM OF 1771-I, 1771-II, 1771-III, 1771-IV, 1771-V, AND 1771-VI WITH THIS ALSO ATTACHED :	
	a. ☐ THIRD COPY OF TAX PAYMENT RECEIPT OF INCOME TAX ARTICLE 29	
	b. ☐ FINANCIAL STATEMENTS	
	c. ☐ TRANCRIPT OF CITATION OF ELEMENTS FROM FINANCIAL STATEMENT (Special Attachment 8A-1 / 8A-2 / 8A-3 / 8A-4 / 8A-5 / 8A-6 / 8A-7 / 8A-8)*	
	d. ☐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TABLES (Special Attachment 1A of the Annual Income Tax Return Manual)*	
	e. ☐ CALCULATION OF FISCAL LOSS CARRY FORWARD (Special Attachment 2A of Income Tax Return Manual)*	
	f. ☐ INVESTMENT FACILITIES PROVIDED (Special Attachment 4A of the Income Tax Return Manual)	
	g. ☐ LIST OF MAJOR BRANCHES (Special Attachment 5A of the Income Tax Return Manual)	
	h. ☐ THIRD COPY OF PAYMENT RECEIPT OF INCOME TAX ARTICLE 26 PARAGRAPH (4) (For Permanent Establishment only)	
	i. ☐ CALCULATION OF INCOME TAX ART.26 PARAGRAPH (4) (Permanent Establishment only) (Special Attachment 6A of Income Tax Return Manual)*	
	j. ☐ FOREIGN TAX CREDITS (Special Attachment 7A Income Tax Return Manual)*	
	k. ☐ POWER OF ATTORNEY (if needed)	
	l. ☐	
	m. ☐	
	n. ☐	
	* All Attachment above can be downloaded on website http://www.pajak.go.id. or take it at the nearest Tax Office.	

DECLARATION

Understanding All The Sanctions Provided by The Law and Regulations, I Hereby Declare that The Information Stated in this Return, Including All Attachments Provided, are True, Complete, Clear, and Under No Circumstances Whatsoever.

a. ☐ TAX PAYER b. ☐ AUTHORIZED REPRESENTATIVE c. _____ (place) d. ☐☐ (date) ☐☐ (month) ☐☐☐☐ (year)

SIGNATURE AND COMPANY SEAL :

FULL NAME MANAGEMENT/ REPRESENTATI VE : e.

T I N : f. ☐☐ ☐☐☐ ☐☐☐ ☐ ☐☐☐ ☐☐☐

F.1.1.32.14

FORM

1771 - I

MINISTRY OF FINANC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DIRECTORATE GENERAL OF TAXES

ATTACHMENT - I
ANNUAL INCOME TAX RETURN FOR CORPORATE

CALCULATION OF FISCAL NET INCOME

TAXABLE YEAR 20

IDENTITY

T I N :
TAXPAYER'S NAME :
ACCOUNTING PERIOD : to

NO	DESCRIPTIONS		IDR
(1)	(2)		(3)
1.	**DOMESTIC COMMERCIAL NET INCOME :**		
	a. GROSS INCOME	1a	
	b. COST OF GOOD SOLD	1b	
	c. OTHER EXPENSE	1c	
	d. NET INCOME FROM BUSINESS (1a - 1b - 1c)	1d	
	e. INCOME FROM NON BUSINESS ACTIVITIES	1e	
	f. EXPENSE FROM NON BUSINESS ACTIVITIES	1f	
	g. NET INCOME FROM NON BUSINESS ACTIVITIES (1e - 1f)	1g	
	h. TOTAL (1d + 1g)	1h	
2.	**FOREIGN COMMERCIAL NET INCOME** (From Special Attachment 7A Column 5)	2	
3.	**TOTAL OF COMMERCIAL NET INCOME** (1h + 2)	3	
4.	**INCOME SUBJECT TO FINAL TAX AND NON-TAXABLE INCOME**	4	
5.	**POSITIVE ADJUSTMENT:**		
	a. EXPENSE CHARGED OR INCURRED FOR THE PERSONAL BENEFIT OF SHAREHOLDERS, PARTNERSHIP OR MEMBERS..	5a	
	b. FORMATION OR ACCUMULATION OF ALLOWANCES	5b	
	c. CONSIDERATION OR REMUNERATION RELATED TO EMPLOYMENT OR SERVICES GIVEN IN THE FORM OF A BENEFIT IN KIND	5c	
	d. EXCESSIVE COMPENSATION PAID TO SHAREHOLDERS OR OTHER ASSOCIATED PARTIES AS A CONSIDERATION OF WORK PERFOMED	5d	
	e. GIFTS, AIDS, OR DONATION	5e	
	f. INCOME TAX	5f	
	g. SALARIES PAID TO A MEMBER OF AN ASSOCIATION, FIRMA, OR LIMITED PARTNERSHIP WHICH CAPITAL DOES NOT CONSIST OF STOCKS	5g	
	h. ADMINISTRATION PENALTIES	5h	
	i. LESS COMMERCIAL DEPRECIATION OVER FISCAL DEPRECIATION	5i	
	j. LESS COMMERCIAL AMORTIZATION OVER FISCAL AMORTIZATION	5j	
	k. DEFERRED EXPENSES	5k	
	l. OTHER POSITIVE FISCAL ADJUSTMENTS	5l	
	m. TOTAL 5a to 5l	5m	
6.	**NEGATIVE FISCAL ADJUSTMENT :**		
	a. LESS COMMERCIAL DEPRECIATION UNDER FISCAL DEPRECIATION	6a	
	b. LESS COMMERCIAL AMORTIZATION UNDER FISCAL AMORTIZATION	6b	
	c. DEFERRED INCOME	6c	
	d. OTHER NEGATIVE FISCAL ADJUSTMENTS	6d	
	e. TOTAL 6a to 6d	6e	
7.	**FACILITIES OF INVESTMENT ALLOWANCES** ..... YEAR 7a (From Special Attachment 4A line 5b)	7b	
8.	**FISCAL NET INCOME** (3 - 4 + 5m - 6e - 7b)	8	

NOTES : Copy Total of Line 8 to Form 1771 Letter A Line 1.

D.1.1.32.31

FORM

1771 - II

MINISTRY OF FINANCE
REPUBLIC OF INDONESIA
DIRECTORATE GENERAL OF TAXES

ATTACHMENT-II

ANNUAL INCOME TAX RETURN FOR CORPORATE

DETAILS OF COST OF GOOD SOLD, OTHER OPERATING EXPENSE AND COMMERCIAL NON-OPERATING EXPENSE

TAXABLE YEAR: 2 0 _ _

IDENTITY

T I N : ___ TAXPAYER'S NAME : ___

ACCOUNTING PERIOD : ___ to ___

NO	DETAILS	COST OF GOOD SOLD (IDR)	OTHER OPERATING EXPENSE (IDR)	NON-OPERATINNG EXPENSE (IDR)	TOTAL (IDR)
(1)	(2)	(3)	(4)	(5)	(6) = (3) + (4) + (5)
1.	PURCHASE OF MATERIAL/MERCHANDISE				
2.	SALARIES, WAGES, BONUSES, GRATIFICATION				
3.	TRANSPORTATION EXPENSE				
4.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EXPENSE				
5.	RENTAL EXPENSES				
6.	INTEREST EXPENSE				
7.	EXPENSE RELATED TO SERVICE				
8.	BAD DEBT EXPENSE				
9.	ROYALTIES EXPENSE				
10.	MARKETING AND PROMOTION EXPENSE				
11.	OTHER EXPENSES				
12.	BEGINNING INVENTORY				
13.	ENDING INVENTORY (-/-)				
14.	TOTAL OF LINE 1 TO 12 MINUS LINE 13				

Note :
- Number 1 for Trading Company fill with Inventory, for industry fill with purchase of material, indirect material and finished good.
- Number 7 includes management fee, technical assistance fee, and other services.
- Line 11 includes total expenses not covered in Line 1 to 10.
- Line 12 and 13 for tradingcompanies, filled with beginning/ending balances of merchandise inventory, for industrial companies, filled with beginning/ending balances of raw materials, indirect materials, work in process, and finished goods inventory.

D.1.1.32.54

FORM **1771 - III**

MINISTRY OF FINANC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DIRECTORATE GENERAL OF TAXES

ATTACHMENT - III

ANNUAL INCOME TAX RETURN FOR CORPORATE

TAX CREDIT

TAXABLE YEAR 2 0 _ _

IDENTITY

T I N : _ _ . _ _ _ . _ _ _ - _ . _ _ _

TAXPAYER'S NAME:

BOOKS OF ACCOUNT PERIOD : _ _ _ _ to _ _ _ _

NO.	WITHHOLDING AGENT		WITHHOLDING OBJECT		INCOME TAX WITHHELD (IDR)	WITHHOLDING RECEIPT/TAX PAYMENT SLIP (SSP)/SSPCP	
	NAME	TIN	TYPES OF INCOME/ TRANSACTION	(IDR)		NUMBER	DATE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etc							
	TOTAL		**TTL**				

Notes :

- Filled with calculation of each Withholding Tax Receipt.
- Copy of Total Income Tax Article 22, Income Tax Article 23 and Income Tax Article 26 column (6) to Form 1771 Letter C Line 8.a.

IF NEEDED. ADDITIONAL PAGES MAY BE ADDEED

Page- _ from _ page Attachment-III

D.1.1.32.32

FORM

1771 - IV

MINISTRY OF FINANC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DIRECTORATE GENERAL OF TAXES

ATTACHMENT - IV
ANNUAL INCOME TAX RETURN FOR CORPORATE
FINAL INCOME TAX AND NON-TAXABLE INCOME

TAXABLE YEAR 2 0 _ _

IDENTITY

T I N :
TAXPAYER'S NAME :
BOOKS OF ACCOUNT PERIOD : _ _ _ _ to _ _ _ _

PART A : FINAL INCOME TAX

NO	TYPES OF INCOME	TAX BASE (IDR)	RATE (%)	INCOME TAX PAYABLE (IDR)
(1)	(2)	(3)	(4)	(5)
1.	INTEREST INCOME ON TIME DEPOSITS/OTHER SAVINGS AND DISCOUNT OF CENTRAL BANK'S SERTIFICATE/SECURITIES STATE			
2.	INTEREST/DISCOUNT OF BOND			
3.	INCOME FROM SALES VALUES OF SHARE TRADED IN STOCK EXCHANGE			
4.	INCOME FROM SALES VALUE OF VENTURE CAPITAL SHARE			
5.	INCOME FROM DISTRIBUTOR/DEALER/AGENT OF OIL PRODUCTS			
6.	INCOME FROM TRANSFER VALUE OF RIGHT ON LAND/BUILDING			
7.	INCOME FROM LEASE/RENT VALUE OF LAND/BUILDING			
8.	CONSTRUCTION RELATED FEE :			
	a. CONTRUCTOR			
	b. DESIGNER			
	c. CONSTRUCTION SUPERVISOR			
9.	GROSS SALES OF REPRESENTATIVE OFFICE			
10.	GROSS INCOME OF FOREIGN SHIPPING/AIRLINES COMPANY			
11.	GROSS INCOME OF DOMESTIC SHIPPING COMPANY			
12.	REVALUATION OF FIXED ASSET			
13.	DERIVATIVE TRANSACTION TRADE IN CAPITAL MARKET			
14.	.....			
	TOTAL PART A		**TPA**	

Copy of Form 1771 letter F line 15 point a

PART B : NON-TAXABLE INCOME

NO	TYPES OF INCOME	GROSS INCOME (IDR)
(1)	(2)	(3)
1.	AID/DONATION	
2.	GRANT	
3.	DIVIDEND FROM INVESTMENT/OWNERSHIP OF SHARES OF THE INDONESIAN BUSINESS ENTITIES (Article 4 Paragraph (3) Item f of Income Tax Law)	
4.	CONTRIBUTION AND SPECIFIC INCOME RECEIVED BY A PENSION FUND	
5.	SHARES OF PROFIT RECEIVED BY VENTURE CAPITAL COMPANIES FROM ITS PARTNERS	
6.	EXCESS INCOME RECEIVED BY NONPROFIT AND REGISTERED EDUCATION INSTITUTION OR RESEARCH AND DEVELOPMENT ESTABLISHMENT WHICH ARE REINVESTED IN THE FORM OF FACILITIES AND IN INFRASTRUCTURE FOR EDUCATIONAL AND/OR R&D ACTIVITIES	
7. etc	.....	
	TOTAL PART B **TPB**	

Copy to Form 1771 letter F line 15 point b

IF NEEDED, ADDITIONAL PAGES MAY BE ADDEED

Page - _ from _ page Attachment-IV

D.1.1.32.34

FORM

1771 - V

MINISTRY OF FINANC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DIRECTORATE GENERAL OF TAXES

ATTACHMENT - V
ANNUAL INCOME TAX RETURN FOR CORPORATE

- LIST OF SHAREHOLDERS/CAPITAL OWNERS AND TOTAL DIVIDENDS DISTRIBUTED
- LIST OF DIRECTORS AND COMMISSIONERS

TAXABLE YEAR 2 0 ☐ ☐

IDENTITY

T I N :
TAXPAYER'S NAME :
BOOKS OF ACCOUNT PERIOD : ☐☐☐☐ to ☐☐☐☐

PART A : LIST OF SHAREHOLDERS/CAPITAL OWNERS AND TOTAL DIVIDENDS DISTRIBUTED

NO	NAME	ADDRESS	T I N	TOTAL PAID IN SHARES (IDR)	TOTAL PAID IN SHARES %	DIVIDEND (IDR)
(1)	(2)	(3)	(4)	(5)	(6)	(7)
1.						
2.						
3.						
4.						
5.						
6.						
7.						
8.						
9.						
10. etc						
	TOTAL PART A		TPA		100%	

PART B : LIST OF DIRECTORS AND COMMISSIONERS

NO	NAME	ADDRESS	T I N	POSITION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etc				

IF NEEDED, ADDITIONAL PAGES MAY BE ADDEED

Page - ☐ from ☐ page Attachment-V

D.1.1.32.35

FORM

1771 - VI

MINISTRY OF FINANC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DIRECTORATE GENERAL OF TAXES

ATTACHMENT - VI
ANNUAL INCOME TAX RETURN FOR CORPORATE

- **LIST OF CAPITAL CONTRIBUTION IN AFFILIATION COMPANIES**
- **LIST OF ACCOUNT PAYABLE FROM SHAREHOLDERS AND/OR AFFILIATION COMPANIES**
- **LIST OF ACCOUNT RECEIVABLE TO SHAREHOLDERS AND/OR AFFILIATION COMPANIES**

TAXABLE YEAR 2 0 _ _

IDENTITY

T I N :
TAXPAYER'S NAME :
BOOKS OF ACCOUNT PERIOD : to

PART A : LIST OF CAPITAL CONTRIBUTION IN AFFILIATION COMPANIES

NO	NAME	ADDRESS	T I N	AMOUNT OF CAPITAL CONTRIBUTION	
				(IDR)	%
(1)	(2)	(3)	(4)	(5)	(6)
1.					
2.					
3.					
4.					
5. etc					
	TOTAL		**TTL**		

PART B : LIST OF ACCOUNT PAYABLE FROM SHAREHOLDERS AND/OR AFFILIATION COMPANIES

NO	NAME	T I N	TOTAL LOAN (IDR)	YEAR	INTEREST/ YR %
(1)	(2)	(3)	(4)	(5)	(6)
1.					
2.					
3.					
4.					
5.					
6.					
7.					
8.					
9.					
10.					
11.					
12					
etc					

PART C : LIST OF ACCOUNT RECEIVABLE TO SHAREHOLDERS AND/OR AFFILIATION COMPANIES

NO	NAME	T I N	TOTAL LOAN (IDR)	YEAR	INTEREST/ YR %
(1)	(2)	(3)	(4)	(5)	(6)
1.					
2.					
3.					
4.					
5.					
6.					
7.					
8.					
9.					
10.					
11.					
12					
dst					

IF NEEDED, ADDITIONAL PAGES MAY BE ADDEED

Page - _ from _ page Attachment-VI

D.1.1.32.36

5 인재모 회원명부

2017년 4월 발간일 기준 인재모 회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ANZ	Jipyong	Outdoor Footwear Networks
Bank Woori Saudara	JS Jakarta	Pantos Logistics Indonesia
BC Card Asia Pacific	KEB HANA Bank	Parkland World Indonesia
Bosung Indonesia	Kepco Resources Indonesia	Patra SK
Bridge Indako	KEPID Technology	Perta Samtan Gas
BS Energy	Kideco Jaya Agung	Plasma Nutfah Marind Papua
Cheil Jedang Indonesia	Kimeko Jasa Handal	POSCO ICT
Cirebon Power Services	Kolon Ina	POSCO Indonesia Inti
CJ Logistics Indonesia	Korea Embassy	PwC Indonesia
Daesol Indonesia	Korea Investment & Securities Co., Ltd.	RC Greace & Lubricants
Deloitte Indonesia	Korindo	Samick Indonesia
Dongyang Indonesia	KOTRA	Samindo Resources, Tbk
Doosa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KPMG Indonesia	Samsung C&T Corporation
EY Indonesia	Krakatau Posco	Samsung Electronics Indonesia
Giosis	Kresi Interior Arsitektur	Samsung Engineering
GS Construction	K-Sure	Samsung Tugu
Hankook Ceramic Indonesia	LG Electronics Indonesia	Shinhan Bank Indonesia
Hankook Tire Indonesia	LG Innotek Indonesia	Sinarmas Hana Finance
Hansae Indonesia Utama	Lock&Lock Indonesia	SK E&S Nusantara
Hanwha	Lotte Mart Indonesia	Small & Medium Business Corporation
Hanwha Life Insurance	Lotte Capital Indonesia	STA Indo
Hanwha Mining	Lotte Packaging	Sung San International
Hung A Indonesia	Lotte Shopping Avenue Indonesia	TCK Textiles Indonesia
Hyosung Jakarta	Majuel	TK Industrial Indonesia
Hyundai Machinery Indonesia	Mirae Asset Sekuritas Indonesia	Toray Polytech Jakarta
HYWON Globis Provider	Mitra Transaksi Indonesia	Trisakti Purwosari Makmur (KT&G)
IBK	Miwon Indonesia	Uangel Indonesia
Indocore Perkasa	Mutiara Jawa	Wampu Electric Power
Java Seafood	NH Korindo Sekuritas Indonesia	Winners Consulting
Jico Agung	Niagamas Gemilang	YEIL Accounting Corp

인도네시아 투자법인 운영사례집
2017년 4월 인쇄
2017년 4월 발행
발행인 : 조태영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 인도네시아 재무담당자 모임
발행처 :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인도네시아 재무 담당자 모임
기획 : 최종환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국세관
원고 : 정태훈/ 오동규/ 박승찬

이 책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투자법인의 회계/세무/노무/기타 사항에 대한 사항을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편집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 책자의 사례 및 내용은 각 회사별로 적용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하며, 동 책자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참고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의 저작권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및 인재모에 있습니다.